



FTA FTA 무역리포트

TRADE REPORT

March 2020 Vol. 01(통합 29권)

발 간 등 록 번 호

11-1220000-000342-08



FTA
무역리포트

FTA TRADE REPORT

March 2020 Vol. 01(통합 29권)

FTA FOCUS

2020년도 관세청 FTA행정 운영방향 006
성태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FTA 동향 014

FTA TOON 039

FTA EXPERTS

RCEP의 주요 합의 내용과 기대효과 042
김민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전환기간에 돌입한 브렉시트,
우리기업이 준비해야할 사항은?** 055
김정균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과장

FTA ANALYSIS

**APTA vs 한-중 FTA,
더 낮은 관세를 활용하기** 064
오윤진 |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전문연구원
김설룡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신남방국가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베트남편** 078
황정훈 | 국제원산지정보원 정보분석팀 전문연구원

말레이시아의 신규 통상통관환경 및 FTA 활용 090
안소영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부연구위원
이주연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FTA 품목분류

FTA 시대의 유탄(流彈) 2 124
김성채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사무관

FTA TRADE REPORT **March 2020** Vol. 01(통합 29권)

Contents



쉬어가는 페이지	134	<p>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p> <p>FTA원산지상품의 관세품목분류 : 달걀과 천연꿀 170</p> <p>김용태 관세법인 탑스(대산지사) 관세사 / 건설팅 & 연구본부장, 법학박사</p>
<p>해외통관애로</p> <p>일본의 통상환경 및 통관제도 138</p> <p>신재형 일본 관세관</p>		<p>활용하기 쉬운 FTA-PASS</p> <p>FTA-PASS 현장지원 안내편 180</p> <p>구본현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과장</p>
<p>FTA 100% 활용하기</p> <p>FTA를 활용한 신남방지역으로의 시장 다변화 전략 146</p> <p>전상윤 어센트글로벌 대표이사</p>		<p>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p> <p>단계별 FTA 활용 전략 : 새로운 FTA에 대비하라 188</p> <p>김세희 이정 관세법인 관세사</p>
<p>FTA 지도</p> <p>우리나라 FTA 체결국 활용현황(2019년) 154</p> <p>2018년 vs 2019년 수출입 증감품목 (FTA 체결국) 156</p> <p>한눈에 보는 2018년~2019년 주요 산업별 (MTI 3단위 기준) FTA 활용 수출입 비교 158</p>		



FTA TRADE REPORT



FTA FOCUS

2020년도 관세청 FTA행정 운영방향

성태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성태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2020년도 관세청 FTA행정 운영방향

I. 들어가며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은 1월 1일 오전,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2020 뉴 이어스 로킹 이브(New Year's Rockin' Eve) 공연이 펼쳐졌다. 미국에서 가장 큰 신년 행사다. 타임스퀘어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한국어 떴창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카운트다운하는 모습에는 새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연초의 미국 경제 상황은 역대급이다. 증시는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소비가 늘며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미국과 달리 그리 좋지 않아 보인다. 얼마 전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2.3%로 사실상 정체 수준이다. 1월 말로 단행된 '브렉시트', 4월 총선과 미 대통령 선거까지 우리 경제를 뒤흔들 변수도 적지 않아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한편에서는 경기 순환 주기에 비추어 이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시점이 되었다는 희망찬 기사도 보인다. 이래저래 새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희망과 불안이 교차한다.

II. 2019년도 주요 성과 및 평가

그간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관세청은 2019년 연초부터 ‘중소 수출기업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수출기업 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모았다. 기업 입장에서 일련의 수출 과정 중 관세행정이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라는 점을 착안해 관세행정 뿐만 아니라 수출 관련 모든 업무를 One-Stop 지원하도록 기반을 구축했다. 전국 30여개의 지자체, 수출지원기관과 ‘수출기업 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약 1,800여개 기업을 지원했다.

그 결과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이 6.1% 감소한 가운데 관세청 지원 기업의 수출은 오히려 2.5% 증가했다. 미중 통상 마찰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기업의 수출이 2018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것을 고려한다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지원도 한몫했을 것이다.

지난해 원산지 검증 행정은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오류에 대한 보완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성실신고 확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기업들이 FTA 활용을 하면서도 떨칠 수 없었던 검증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으로 ‘원산지기준 불충족’ 등 보다 실질적인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여 2019년 연초 전체 검증건의 40%에 불과했던 ‘실질요건 검증 추정비율’은 연말에는 85%까지 늘어났다.

상대국 세관당국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상대국에서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와의 통상 마찰이 해소되는 등 2018년 314건에 달하던 FTA 통관애로 건수가 2019년에는 1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Ⅲ. 2020년도 FTA 관세행정 추진방향

2020년 관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FTA 이행 전반을 정비해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체결로 다가온 MEGA FTA 시대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FTA 관세행정 접목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이를 위한 2020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1. 경제 살리기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 총력 지원
2. 이행체계의 내실화로 FTA 기본질서 확립
3. MEGA FTA 등 新FTA 시대로의 전환 준비
4. 통상 리스크 증대에 대응하는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5. D.N.A.(Data, Network, AI)를 활용한 FTA 관세행정 고도화

1. 경제 살리기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 총력 지원

FTA 컨설팅 사업은 지원대상을 '최초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유망 수출기업까지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등 新성장 산업으로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기업지원 정보와 관세청 자체 정보를 상호 연계·분석하고 기업지원 DB를 구축하여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거나 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것이다. 예컨대 국내산 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유무역지역(FTZ)에 반입된 국내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FTA 관세행정 제도 전반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찾아 고쳐나가겠다.

FTA-PASS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 관세청이 개발해 무상으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 시스템이다. 그간 수출신고 정보를 활용해 자동으로 신청 양식을 채워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했다. 그 결과 <국가브랜드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관세청을 통해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비중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관세청과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전체 발급 건수 중 관세청 발급 비중은 2010년 15%에 불과했으나, 2015년 22%, 지난해에는 31%까지 늘어났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해 관세청 발급 비중이 계속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 이행체계의 내실화로 FTA 기본질서 확립

최근 한 신문 사설에서 시장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정부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 FTA 관세행정의 기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업이 FTA 특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FTA 부정특혜를 받는 기업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원산지를 속여 부당하게 FTA 특혜를 받아도 처벌받지 않으면 FTA 관세행정의 기본이 무너진다. 특히 FTA로 인한 국내 피해산업, 국민건강 관련 물품, 의도적인 우회 수입물품 등은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형식적 요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지양하고 기업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자율점검 단계에서 보정 신고 시 가산세 면제 인정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특별한 귀책사유가 수입자에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충실히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기업에게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심사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MEGA FTA 등 新FTA 시대로의 전환 준비

2019.11.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되었다. 중국과 일본, 아세안 및 대양주 등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다. 16개국에 대해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여 원산지 증명에 소요되는 거래비용 절감이 기대되며,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와 CEPA도 타결되어 철강제품(5~15%), 자동차 및 부품(5%), 합성수지(5%)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이루어냈다. 협정들이 발효되기 전까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정문을 분석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체약 상대국과 협력해 新FTA 시대에 대비해 나가겠다.

RCEP 체결은 특히 그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제외되었던 일본이 상대국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기존의 FTA와 RCEP을 연계해 對일본 FTA 활용 모델을 만들고,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분석하는 등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RCEP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화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한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 좋은 일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전체 수출은 감소했지만,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긍정적 측면이다. 對중국 수출이

2018년 26.8%에서 2019년 24.8%로 감소했고, 싱가포르, 베트남 등 新남방 지역으로의 수출이 같은 기간 19.1%에서 20.5%까지 늘어났다. RCEP이 체결되고 한-인니 CEPA가 타결되고 현재 한-말련, 한-필리핀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시의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新남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와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EODES)을 新남방국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도, 베트남과는 2020년 내 전면 시행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EODES가 구축되면 상대국 내 FTA 특혜 수입에 소요되는 물류 비용과 통관애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4. 통상 리스크 증대에 대응하는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관세법은 태생적으로 국제간의 통일 규정에 대한 국제 규정을 수용하는 국제법적 성격이 있다. 특히 FTA 관세행정은 체결 상대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만약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꼼꼼하게 심사하지 않는다면, 수입자는 FTA 특혜를 받지 못하거나 사후에 추징당할 수도 있다. 반대로 수입국 세관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엄격하게 하면 수출국은 이를 규제로 받아들여 통상 마찰로 비화되기도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중국과는 FTA가 체결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산지 검증 현지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못했다. 올해에는

중국과 현지 검증 수행 절차와 기준 등을 협의해 이를 정상화하겠다. 이 밖에도 신규 또는 기존 발효 협정 가운데 실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조항이 없는지 살피고, 세관당국 간 협의를 통해 협정 해석의 통일성을 부여해 나갈 것이다.

현재 해외에서 통관애로가 발생하면 일선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1차적으로 접수해 해결하도록 한다. 올해부터는 보다 다양한 통관애로 접수를 위해 수출입 기업이 직접 통관애로를 신고할 수 있는 공간을 FTA 포털 내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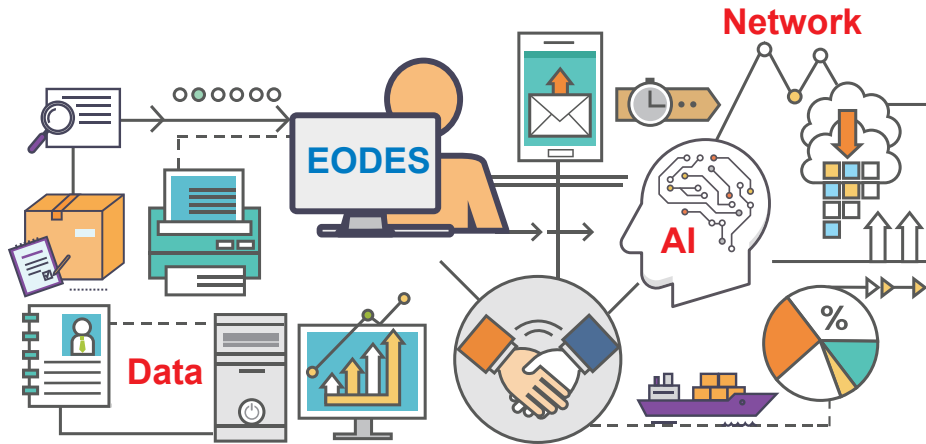
5. D.N.A.(Data, Network, AI)를 활용한 FTA 관세행정 고도화

금년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된 자재 명세서(BOM) PDF 파일 등을 D/B화 하는 등 FTA 관세행정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

이다. 이를 통해 수출 시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자동 심사,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 신청 단계부터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입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통계, 상대국 세관당국을 통해 입수한 통계정보 등을 교차 분석해 정부, 학계, 산업협회 등 통계

수요자들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FTA 활용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IV. 맺음말

2019년은 방탄소년단(BTS)의 해라고 할 만큼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이들의 성공 방정식을 ‘글로벌’과 ‘연결’로 보는 분석이 많다. 자신감, 고민, 사랑, 실연 등 전 세계 10대와 20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글로벌한 콘텐츠를 만들고 확산시켰다. 유튜브를 통해 BTS가 어디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던 각국의 BTS 팬들이 ‘연결’되어 마치 한 몸처럼 감동하고 즐길 수 있었다.

FTA 관세행정도 ‘글로벌’과 ‘연결’이 나날이 중요해져 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EODES(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다. 과거에는 서류로 발급된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특송으로 보내고, 수입자는 이를 세관당국에 제출했다. 이제는 수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시스템을 통해 수입국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수입국 세관직원이 바로 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FTA 관세행정은 더 많은 국가들과 보다 더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므로 우리 기업들도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며 관세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FTA TRADE REPORT



FTA 동향

국민과 소통하는 누리집으로 새 단장

관세청 누리집, 메뉴 단순화·통합검색 강화해 오늘부터 제공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관세행정 정보가 필요한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을 새롭게 단장하여 1월 13일(월) 개통했다. 또한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단말기나 접속프로그램(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최적화된 화면으로 제공하도록 구축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보기가 한결 편해졌다. 전면 개편된 누리집은 관세행정, 국민참여, 알림소식 등 사용자 관점으로 메뉴 체계를

단순화하고,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등 관세서비스 이용 추세를 반영하여 일반 국민과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첫 화면에 배치하여 정보접근성을 높였다.

관세청은 이번 개편이 관세행정 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을 지속해서 경청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 누리집 주요 화면]

■ 기기 최적화 화면 구성

단말기, 브라우저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

■ 단순한 메뉴 체계

대메뉴(기존 6개 → 개편 5개), 중메뉴(기존 45개 → 개편 27개)로 구성

■ 직관적 첫 화면

개인고유통관부호 발급, 수입화물 통관진행 정보 등 일반국민,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10개 메뉴 및 공지·공고·보도자료 등 알림 사항을 배치

최적화 예시



기존 모바일 화면

개편된 모바일 화면

■ PC 및 모바일 화면



관세청, FTA 해외통관애로 대응에 적극 나선다

FTA 해외통관애로 인터넷 접수 사이트 개설

베트남 관세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A중소기업에 발행해 준 원산지증명서(C/O)의 양식을 문제삼아 2016~2017년간 발행된 38건의 C/O에 대해 소급 추징(58억9천만원)을 예고하였다. A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를 거쳐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관세청은 베트남 관세당국에 서한을 송부하여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개정에 따라 새로운 양식임을 설명하여 A업체는 소급추징을 면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인 A사로서는 하마터면 거액을 소급당할 뻔했던 상황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A기업처럼 우리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관애로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관세청장 노석환)은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이하 Yes FTA) 내에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을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 FTA 통관애로 대응맵 접속방법 : 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관세청 FTA 포털’ → 참여마당(우측상단) → 통관애로 접속, 또는 ②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패밀리 사이트(우측하단) → FTA포털 → 참여마당(우측상단) → 통관애로 접속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면서 겪는 해외통관 애로는 연간 평균 130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관세 피해액은 143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 피해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 203건/200억원(2017년), 97건/181억원(2018년), 111건/47억원(2019년)

문제는 이러한 FTA 통관애로가 외국 세관당국의 특혜원산지증명서(C/O)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C/O의 사소한 기재사항 오류로 FTA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등 유사한 유형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있다.

이번에 관세청이 구축한 ‘통관애로 대응 맵(Map)’은 협정별로 발생한 통관애로 사례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최근 발생한 FTA 통관애로 발생원인과 해결과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FTA 협정문 규정이나 FTA 이행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 등

이러한 정보를 통해 민원인은 유사한 통관애로에 대한 향후 처리결과를 예측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전까지 FTA 통관애로를 접한 기업은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에 있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메일)로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 소재한 우리기업은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수출입기업은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고 간편하게 관세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 통관애로는 상대국 세관당국이 수입물품의 통관심사 과정에서 FTA 협정문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자국내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세관직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통관애로의 특성상 상대국 세관당국과의 문제는 우리나라 관세당국을 통해야 신속한 해결이

가능함에도, 문제를 겪고 있는 무역업체가 여러 경로를 돌고 난 후 관세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무역업체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적기를 놓치거나 통관지체로 인한 물류비용 부담을 우려해 FTA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무역업체 외에도 FTA를 지원하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도 관세청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 현지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통관애로 해소 위해 뚝다 관세청, 외교부·코트라 등과 협력해 해소대책 시행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과의 교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해소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월 7일부터 대중국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을 구성하고 해소과정에서 기업편의를 위해 외교부, 코트라 등 외부기관과 협력채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 진출기업이나 대중국 수출입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을

일별로 제공한다. 수출입기업은 중국해관 정상근무 여부(야간·비상시 임시개청 여부 포함),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한 공항만 정상운영 여부, 검역강화에 따른 통관지연 등 중국 현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는 물론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팝업창을 통해 해외통관지원센터 > 해외통관정보란 >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 화면으로 이동

The screenshot shows the '해외통관정보' (Overseas Customs Information) section of the website. The main heading is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 (China Regional Local Trends). Below the heading, there is a search bar and a table of news items.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6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입니다(2020-15호, 2월 24일)	최이민	2020.02.24	27
15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입니다(2020-14호, 2월 22일)	최이민	2020.02.22	98
14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입니다(2020-13호, 2월 21일)	최이민	2020.02.21	106

자료 : <http://www.customs.go.kr/foreign/na/ntt/selectNttList.do?mi=10340&bbsId=2080>

또한, 중국 현지의 더욱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거나 주중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관세관 등의 도움이 필요한 중국 현지 진출기업이나 국내 기업은 중국

지역 파견 관세관에게 연락하여 언제든지 1:1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중 관세관 연락처】

관세관	연락처
중국 북경 관세관	☎ (+86) 10-8531-0844 E-mail : smlee17@mofa.go.kr / ultrachogosu@naver.com
중국 상해 관세관	☎ (+86) 21-6295-5000 E-mail : yishin18@mofa.go.kr
중국 청도 관세관	☎ (+86) 532-8399-7732 E-mail : hbpark19@mofa.go.kr / cnpark21@korea.kr
중국 대련 관세관	☎ (+86) 411-8235-6280 E-mail : dokim17@mofa.go.kr / do8772@naver.com
홍콩 관세관	☎ (+852) 2862-1566 E-mail : sbsong19@mofa.go.kr

FTA 상대국 품목번호(HS) 이젠 미리 확인하세요!

중국 등 21개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이드북 발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해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오늘부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주요 상대국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기준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책(e-book)으로 내려받아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란 수출입자 등이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각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에 품목번호 심사를 의뢰하여 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e System : 국가 간 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목적 등으로

국제공통의 코드체계에 따라 품목(Description)과 품목번호(Code)를 정하는 것

특히, 수출입물품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원산지기준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HS)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품목분류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동일한 물품이라도 국가마다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계약상대국과 상이한 품목분류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 중 하나가 되어 왔다.

(사례) 창원 소재 A사는 ‘굴착기용 부분품’을 수출하면서 품목번호를 8412.29호로 분류하여 FTA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아 중국 수입자에게 보냈으나, 중국 관세당국은 해당 물품이 8431.49호로 분류된다고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연간 5억원 상당의 관세 추가 부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계약상대국(수입국)의 사전심사제도(Advanced Ruling)를 활용해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지식이나 인력이 부족한 개별 수출기업이 계약상대국의 제도에 대해 일일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실제 무역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FTA 교역량이 많고 품목분류 관련 통관애로 발생 빈도가 높은 중국·인도·베트남 등 주요 5개 국가를 포함하여 총 21개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왔고, 이번에 각 국가별 사전심사 신청인 및 신청기관,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처리기간, 유의사항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하여 전자책으로 제작·배포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 담당자는 ‘관세청 Yes-FTA 포털’과 관세평가분류원 및 국제원산지정보원 누리집에서 전자책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계약상대국과의 품목분류 해석 상이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거나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수출기업이 보다 많은 FTA 활용 혜택을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몰수 보건 마스크 취약계층에 무상전달 개시

관세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1차분 전달...4월 단속분까지 계속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 2월 6일 개시한 불법 반출 집중단속으로 몰수된 보건 마스크 6천장을 한국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에 18일 전달해 취약 계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전달된 것은 범칙행위가 경미하여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1차분 5건 분량이다. 관세청은 불법반출 집중단속이 4월 30일까지 계속되는 만큼 몰수되는 보건 마스크를 지속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무상전달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자료 :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수출기업과 손잡고 신남방벨트 확대

한-인니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AEO MRA 체결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6일 서울에서 ‘한-인니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인도네시아와 수출입안전 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하고 양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 관세청이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 충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세관당국이 상대국 AEO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

신남방국가란 새로운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평가되는 인도와 아세안 국가로, OECD에 따르면 2030년 신남방국가의 소비층에서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이루어진다고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반도 경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대국으로, 아세안 GDP의 36.8%를 차지하는 등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AEO MRA 체결은 우리 수출기업이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호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2018년 중국과 AEO MRA 체결이 우리 수출입기업의 통관절차상 혜택에 크게 기여한 사실을 강조*하며, 현재 AEO MRA 최다 체결국에 만족하지 않고,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확대하여 수출기업 지원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한-중 MRA를 통한 수입검사율 75% 축소, 통관소요시간 79% 단축 확인(2018.8월)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신남방·신북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는 등 이들 국가와의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스크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적극 차단

노석환 관세청장, 중국 화물·여행자 집중 인천 공항만 현장점검

관세청이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차단에 적극 나섰다.

6일 노석환 관세청장은 인천항·공항세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단속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되는 주요 조치들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노 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국가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세행정 위기대응 체계를 가동중”이라며 “전염병과 관련한 수출입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도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보건용 마스크*의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휴대반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항공사 및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 ① 200만원 이하 & 300개 이하(자가사용 인정), ② 200만원 이하 & 301~1,000개(간이신고), ③ 200만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정식수출신고)

** 300개를 초과했음에도 수출신고(간이수출신고 포함)를 하지 않은 경우 및 수출신고한 물품이 매점매석고시를 위반한 경우

해당물품을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200만원(FOB기준) 이상 대량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수출신고를 했더라도 제조확인서·구매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매점매석 고시 위반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매점매석 행위를 통한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편물류센터·특송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외배송을 앞둔 마스크, 손세정제의 밀수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전국 주요 세관에 운영함으로써, 수출 피해 및 국내 수출입기업의 원부자재

수급 차질을 해소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

통관애로 접수 방법 및 연락처

-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출입 통관애로 및 중국 공장 폐쇄 등으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수출 차질 업체
- 지원절차**

 - ① 관할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신고·접수(방문, 우편, e-mail 등)
 - ②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업체 여부 확인
 - ③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 관세조사 연기 등은 피해여부 확인 즉시 시행
 - ④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별도신청이 필요한 업무는 업체가 관련부서(수입·심사부서)에 신청 후 시행
- 구비서류**
피해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
* (예) 중국내 수출통관 애로를 기술한 자료, 중국소재 거래업체(공장) 가동 중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신종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 연락처**

세관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인천세관	032-452-3639	032-891-9203	incheonsupport@korea.kr
서울세관	02-510-1378/1389	02-548-0211	seoulsupport@korea.kr
부산세관	051-620-6954	051-620-1118	busansupport@korea.kr
대구세관	053-230-5182	053-230-5609	daegusupport@korea.kr
광주세관	062-975-8193	062-975-3113	gwangjufta@korea.kr
평택세관	031-8054-7043	031-8054-7046	fata3766@korea.kr

관세청은 수출입물품이 중국에서 신속통관될 수 있도록 중국 세관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통관애로 해소 신청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통관애로 해결팀 및 관세관을 파견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내 공장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 신속한 수입통관과 세정지원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중국내 거래처 잔여물량과 신규 대체공급선을 통해 들어오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 세납부 유예 등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세관

조사를 유예***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해주시기로 하였다.

- * 납부계획서 제출시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지원
- ** 피해기업 환급 신청건은 별도 서류징구 없이 신청당일 환급 결정·지급
- *** 조사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시 연기

또한, 해외에서 수입되는 위생·의료용품에 대해서도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출입 원부자재와 동일하게 신속 통관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속주 의심동물 5종(뱀, 박쥐류, 오소리, 너구리, 사향 고양이)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불허하고, 추가로

중국에서 반입되는 산 동물(개, 고양이, 설치류 등)에 대해서도 검역 및 수입허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면세점, 수출입창고, 공항만 입국장 등에 대해 의심환자 대응, 검역지원, 직원 안전관리 요령을 전파하였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관세행정 위기관리 대응조치들을 철저히 시행하고, 수출입업체, 면세점, 화물 보관·운송업체 등 관련업계에서도 전염병 피해 확산 방지에 다같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베트남 FTA 5년간 연평균 16.5% 교역 급증 관세청, 한·중·한-베트남 FTA 발효 5년의 교역 현황 및 성과 분석

한·베트남 FTA 발효 후 5년간 교역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과의 교역량이 급증하는 등 교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과의 수입에서 FTA를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만, 수출에서의 FTA 활용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세청은 5년간 관세동향에 대해 '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된 한·중, 한·베트남 FTA 5년간의 교역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중국·베트남은 교역규모로 지난해 각각 2,434억불·692억불을 기록,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10,456억불)의 29.9%를 차지할 만큼 주요한 교역상대국이다.

【FTA 발효 후 대중국·베트남 교역 추이】

(단위 : 억불, %)

교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대중국	2,274(△3.4)	2,114(△7.0)	2,400(13.5)	2,686(11.9)	2,434(△9.4)	1.7
대베트남	376(23.7)	451(19.9)	639(41.7)	683(6.9)	692(1.3)	16.5
전세계	9,633(△12.3)	9,015(△6.4)	10,521(16.7)	11,401(8.4)	10,456(△8.3)	2.1

*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중국은 한국의 제 1위 교역대상국으로, 2018년도 까지 대중국 교역량이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지난해 전세계 교역 감소(△8.3%) 폭보다 더 크게 줄었으며(△9.4%), 대베트남 교역은 세계 교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6.5%로 급증하였으며, FTA 발효 5년차인 지난해는 2015년에 비해 84% 증가(376억불 → 692억불) 하는 등 우리나라 교역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전년대비 수출입동향과 관련하여 2019년 대중국·베트남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16.0%·0.8% 감소, 수입은 0.8%·6.6%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290억불·272억불 흑자를 기록했다.

2019년 전세계 무역흑자가 전년대비 44.3% 감소할 때 중국은 더 큰 폭으로 감소(48.0%)하였고, 이는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등 국내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과의 무역흑자 또한 감소(5.9%)하였으나 큰 편은 아니며,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FTA 발효 후 대중국·베트남 수출입 교역 추이】

(단위 : 억불,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출	대중국	1,371	1,244	1,421	1,622	1,362
		(△5.6)	(△9.3)	(14.2)	(14.1)	(△16.0)
	대베트남	278	326	477	486	482
		(24.1)	(17.3)	(46.3)	(1.9)	(△0.8)
수입	대중국	903	870	979	1,064	1,072
		(0.2)	(△3.7)	(12.5)	(8.7)	(0.8)
	대베트남	98	125	162	197	210
		(22.5)	(27.6)	(29.6)	(21.6)	(6.6)
대중 무역수지		468	374	442	558	290
		(△15.2)	(△20.1)	(18.2)	(26.2)	(△48.0)
대베 무역수지		180	201	315	289	272
		(25.0)	(11.7)	(56.7)	(△8.3)	(△5.9)
전세계 무역수지		905	894	953	700	390
		(91.7)	(△1.2)	(6.6)	(△26.5)	(△44.3)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참고: 한국의 주요 교역국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불, %)

구분	교역			수출			수입		
	2015년	2019년	증감률	2015년	2019년	증감률	2015년	2019년	증감률
중국	2,273	2,434	7.1	1,371	1,362	△0.7	902	1,072	18.8
아세안	1,199	1,513	26.2	749	951	27.0	450	562	24.9
미국	1,138	1,352	18.8	698	733	5.0	440	619	40.7
EU	1,053	1,086	3.1	481	528	9.8	572	558	△2.4
베트남	376	692	84.0	278	482	73.4	98	210	114.3
전세계	9,633	10,456	8.5	5,269	5,423	2.9	4,364	5,033	15.3

품목별 수출입을 확인하면, 대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은 반도체·컴퓨터이며, 대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입품목은 무선통신 기기·의류이다.

수출로는 대중국·베트남 최대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와 함께 석유제품·합성수지·석유화학중간원료 등 중간재 제품이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대베트남 수출은 전자부품 관련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대베트남 상위 4대 수출품목 모두 전자부품 관련이며, 전체 수출의 49.5% 차지

【대중국·베트남 수출 상위 10대 품목(MTI3단위) 현황】

(단위: 백만불)

연번	대중국 수출금액			대베트남 수출금액		
	품목명	2015년	2019년	품목명	2015년	2019년
1	반도체	27,755	37,327	반도체	2,870	10,730
2	평판DP	15,304	9,180	평판DP	254	7,970
3	석유제품	4,419	7,589	무선통신기기	4,249	2,933
4	합성수지	6,317	7,036	전자기구부품	1,233	2,230
5	석유화학중간원료	5,789	5,848	석유제품	328	2,194
6	광학기기	2,247	3,500	합성수지	1,110	1,624
7	반도체제조용장비	1,843	3,459	플라스틱제품	740	1,210
8	기초유분	2,578	3,309	철강판	839	1,158
9	컴퓨터	3,298	3,178	편직물	977	996
10	비누치약및화장품	1,224	3,087	자동차	1,136	991
	10대품목 비중	51.6%	61.3%	10대 품목 비중	49.5%	66.5%
	전체	137,124	136,213	전체	27,771	48,178

* 2019년 기준 상위 10대 품목의 연도별 수출액 및 비중

대중국 수입은 반도체*·컴퓨터·정밀화학원료 등 중간재 비중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대베트남 수입은 무선통신기기**(핸드폰 및 그 부분품)·의류의 수입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 (2015) 113.5억 → (2016) 112.6억불 → (2017) 132.5억불 → (2018) 162.6억불 → (2019) 183.1억불
 ** (2015) 14.7억 → (2016) 31.5억불 → (2017) 39.6억불 → (2018) 48.4억불 → (2019) 56.9억불

【대중국·베트남 수입 상위 10대 품목(MTI3단위) 현황】

(단위 : 백만불)

연번	대중국 수입금액			대베트남 수입금액		
	품목명	2015년	2019년	품목명	2015년	2019년
1	반도체	11,353	18,312	무선통신기기	1,471	5,691
2	컴퓨터	5,384	6,801	의류	2,221	3,646
3	무선통신기기	8,396	6,106	신변잡화	-	1,228
4	정밀화학원료	3,133	5,455	평판 DP	124	1,197
5	산업용 전기기기	-	3,829	컴퓨터	400	679
6	의류	3,439	3,664	목재류	348	657
7	철강판	4,187	3,467	기구부품	205	512
8	평판 DP	3,001	2,555	산업용 전기기기	-	479
9	신변잡화	-	2,416	반도체	111	471
10	자동차부품	1,237	1,560	영상기기	150	356
	10대품목 비중	44.50%	50.50%	10대품목 비중	51.30%	70.80%
	전체	90,250	107,220	전체	9,804	21,071

* 2019년 기준 상위 10대 품목의 연도별 수출액 및 비중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수입에서 총 품목수(HS 10단위 기준)가 각각 127개·320개 증가하였고, 대베트남 수출·수입에서는 각각 795개·1,575개로 크게 증가하여 수출입 다양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중국·베트남 교역품목 중 생활용품과 농림수산물의 품목수가 수출입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베트남 수출·수입품목은 잡제품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용품](수출) 중국 195개·베트남 201개 증가 / (수입) 중국 272개·베트남 186개 증가
 * [농림수산물](수출) 중국 73개·베트남 162개 증가 / (수입) 중국 105개·베트남 366개 증가

2019년말 기준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57.2%, 수입활용률은 80.1%이며, 한·베 FTA 수출활용률은 46.1%, 수입활용률은 85.7%로 수출·수입간 활용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는 관세 철폐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타 협정에 비하여 FTA특혜 품목수가 적으며*, 한·베 FTA는

과세가 유보되어 FTA 활용실익이 없는 베트남 보세공장 반입 수출물품이 상당수인 점 등이 중국과 베트남의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 5년 내 관세 완전철폐 비중은 미국 92.8%, EU 99.6%, 캐나다 89.4% 등 인데 반해, 중국의 경우 40.5%로 타 협정에 비해 낮은 편 (품목수 기준)

FTA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FTA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말 기준 중국과 베트남의 통관애로가 전체 통관애로의 42.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019 통관애로 현황) 중국 25건, 베트남 22건으로 전체 통관애로(111건) 중 42.3% 차지

통관애로는 주로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불충족 등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하여 관세청은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원활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EODES는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거부 등으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인도 원산지검증 강화 예정, 관세청 지원 예정

인도 관세법 개정으로 통관애로 발생시 도움 요청 당부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4월부터 인도 관세당국이 통관과정에서 FTA 특혜신청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 수입자가 FTA 특혜적용을 신청했을 때 관세당국이 관세율 특혜의 요건이 되는 원산지기준 충족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하는 절차

관세청이 한-인도 CEPA*를 활용해 수출중인 기업들을 상대로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FTA

인도 현지에 파견된 관세청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관세법에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집행’ 조항을 신설하고 특혜신청 수입자의 의무, 공무원의 검증권한, 원산지 검증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특혜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요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보유와 제공, 그리고 합당한 주의 의무를 부여했고, 원산지 검증 공무원이 특혜신청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미제출시 특혜 대우를 중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원산지증명서에 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임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게 됐다.

[참고] 인도 ‘수입검증 강화’ 정책 개념도

수입검증		미준수에 따른 결과
원산지 검증 강화		FTA 혜택의 일시적 정지 또는 배제
수입자는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다고 신고해야 한다.	원산지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밝혀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만으로 특혜혜택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		검증기간 5년

최근 인도 재무부가 “원산지 규정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해 나갈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만큼 관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인도 관세당국의 실질적인 원산지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2년간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인도 관세당국의 검증요청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수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의 수출 물품에 대해 검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 파견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의 원산지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검증대응 비용 및 위험 증가, 세금 추징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우리 수출기업이 특히 유의할 점으로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한-인도 CEPA에서는 많은 품목에 대해 ‘조합 기준*’을 정하고 있어 다른 협정에 비해 원산지기준 충족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 조합기준 : 수출물품 가격에서 역내(한국·인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35%이상이어야 하고, 가공을 통해 역외에서 수입한 재료와 수출물품의 품목분류코드(HS) 6단위가 달라져야 함.

또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정보와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재하고 오류사항 수정 및 유효기간 등 원산지증명서 사용에도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우리 수출기업이 인도의 원산지검증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도 수출시 FTA 특혜신청 과정에서 통관애로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은 관세청 FTA 통관 애로 지원팀 또는 각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도 현지 진출기업은 인도 현지 관세청 관세관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붙임] 통관애로 발생시 도움 요청 연락처

담당 부서	연락처
관세청 FTA 통관애로·검증 지원팀	☎ 042-481-3232, 3233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31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1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1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1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1
주인도 한국대사관 관세관	☎ (91)11-4200-7064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제3차 협상 개최 서비스·투자 제도선진화로 양국간 경제협력 활성화 도모

한국과 러시아는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 (“이하” FTA) 제3차 협상을 1.15(수)~17(금) 모스크바에서 개최하였다.

우리쪽은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측은 마리아 바라노바 경제개발부 통상교섭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이번 3차 협상에서는 분과별(서비스·투자·총칙 분과)협정문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은 그간 2차례 협상* 및 회기간 협의를 통해

협정문 전체 구조, 주요 구성요소, 시장개방 자유화 방식 등에 합의하였으며, 금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면서 협상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FTA협상 개시선언 및 1차 협상(2019.6월, 모스크바), 2차 협상(2019.10월, 서울)

한-러 서비스·투자 FTA 정부대표단 전윤종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은 “우리 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한러간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서비스·투자 FTA협상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제5차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최(1.29-31, 마닐라) 금년중 타결 목표로 협상 가속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식협상이 1.29(수)~31(금)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쪽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필리핀측은 통상산업부 세페리노 로돌포 (Ceferino S. Rodolfo) 차관 및 앨런 겡티(Allan B. Gepty) 차관보를 공동수석대표로 통상산업부, 농업부, 법무부, 투자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양국은 작년 6월 한-필 FTA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네 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으며, 11월 한-필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통상장관은 한-필 FTA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를 합의하여 협상 진전을 확인한 바 있다.

* 1차 : 2019.6.4-5 / 2차 : 2019.7.15-17 / 3차 : 2019.8.12-14 / 4차 : 2019.9.10-13

이번 협상에서 상품, 원산지, 협력, 총칙 챗터의 협정문 협상과 상품 시장접근에 관한 양허 협상을 진행하였다. 필리핀과의 교역규모는 2019년 약 120억불(수출 84억불, 수입 37억불)로, 아세안 10개국 중 제5위의 교역 상대국으로서 한-필 FTA가 체결될 경우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크게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 (2.4~7)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작업반, 의약품 작업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4.(화)~7(금) 서울에서 한-EU 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한-EU FTA(2011.7.1일 발효)에 따라 양국은 장관급 무역위원회 산하에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등 15개의 이행위(또는 작업반) 운영중

이번에 개최되는 한-EU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등 3개 이행위원회에서, 한국과 EU 양측은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측간 통상현안 및 업계 애로사항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0년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2020.2.4(화)~7(금), 소공동 롯데호텔
- ◆ (참석자) (韓) 산업부 노건기 통상정책국장, 국토부, 환경부, 복지부, 식약처 등 대표단 (EU) 통상총국 아시아·남미담당국장대리, 주한EU대표부 등 대표단
- ◆ (주요내용) 한-EU FTA 이행점검, 통상현안 및 업계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 논의

이행위·작업반	주요 의제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2.4)	약가정보 공유 등을 통한 상호 협력 증진 등
자동차·부품 작업반(2.6)	중대형상용차 소량 수출시 EU의 형식승인 일부 완화 방안 등
상품무역위원회(2.7)	EU의 GDPR 적정성 결정, EU의 투자보조금 조사 및 EU 에코디자인 자원 효율성 규정 관련 우리기업 애로 해소 등

발효 8년을 경과한 한-EU FTA는 그간 관세철폐* 등으로 인해 양측간 교역확대**에 기여하였으며, 금번 이행위원회에서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양측 기업의 FTA 활용 제고 방안에 중점을 두고 협의가 진행되었다.

* 수입액 기준, EU측은 모든 對한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우리는 對EU수입 97%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완료

** 교역(억불) : (발효前 2010) 922 → (2011) 1,031 → (2014) 1,141 → (2017) 1,113 → (2018) 1,200 → (2019)1,086(2010년 대비 17.8% 증가, 전년대비 △9.5% 감소)

특히, 양측간 교역·확대를 위해 EU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과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측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기회가 양측간 시장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간 투자 및 진출을 촉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여 개별 기업 차원의 별도 조치 없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

브렉시트 현실화, 영국 EU 가입 47년 만에 떠나

브렉시트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말로, 2020년 1월 31일 단행됐다.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결정됐고, 당초 2018년 3월 브렉시트를 단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로 총 3차례 연기되면서 2020년 1월 31일로 결정됐으며, 이후 영국 내부의 법안 통과 절차와 EU 유럽의회·유럽이사회의 승인 절차까지 완료되면서 브렉시트가 단행됐다.

【향후 예상 일정】

1월 31일	3월	6월	11월	12월 31일
23시, EU 공식탈퇴	EU, 영국과의 협상시작	영-EU 27개국간 서밋 개최 30일, 이행기간 요청 데드라인	26일, 협상 마무리 데드라인* * 협상이 마무리 되어야 이행기간 종료 전 비준가능	이행기간 종료 영-EU간 무역협정 타결 시 신규 무역협정에 따른 관계 시작 무역협정 타결 없을 시 “No Trade Deal” 가능성

자료 : KOTRA 런던 무역관 작성

이행기간 협상의 쟁점 사항은 이행기간 내 영-EU 간 무역 협상 타결 여부이다. 영국은 관세 및 쿼터 면제를 확보하는 자유무역협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영국과 EU가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도달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영국

존슨 총리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며, 이 기간 내 무역협상이 가능하다고 낙관 중이다.

영국의 EU 규칙 및 표준 유지 여부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자체적으로 규칙 및 표준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게 됐으나 초반에는 EU 기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U 측은 현 EU 회원국 수준의 규칙 및 표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영국이 EU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 타 회원국 대비 공정하지 않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2020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등을 의식하여 EU의 엄격한 노동, 환경기준 등을 완화한 자체 규칙 및 표준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이 EU의 규칙 및 표준으로부터 멀어 진다면 영-EU 미래 관계 정립에 난항이 예상된다.

영국정부에서는 존슨 총리, 브렉시트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 전하며, 영국은 더 통합될 것이고 성장할 것이라 밝혔다.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영국과 EU가 서로 멀어지지 않겠지만, EU의 기업들을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시키지는 않을 것이라 강조하였다. 또한, 바르니에 EU 협상수석 대표, 이행 기간 안에 무역 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양측에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11개월이란 시간은 영국과 EU가 관계를 재정립하기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전하였다.

현지 자동차 업계에서는 영국의 우선순위는 EU 규정과의 긴밀한 통합이며, 이를 통해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 및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업계에서는 영국 정부가 소매업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브렉시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무역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 영-EU 간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산업계, 특히 식품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 전하였다. 한편, 금융계는 금융행위감독기관은 금융 기업에 12월 까지 “No trade deal”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 경고하였다.

브렉시트는 현실화됐으나 한국 기업으로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2020년 말까지는 한-EU FTA가 그대로 적용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한-영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한-영 FTA는 한-EU FTA와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해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였다. 3년간 한시적으로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역내산으로 인정되고, EU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한 경우에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였다.

영국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부진한 산업을 위해 적극 개입하고, 공공조달에서도 영국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이 자국 산업 보호 태세를 갖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영국 바이어의 동향 및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 : 영국 정부 웹사이트, 영국 의회, 현지 언론 및 KOTRA 런던무역관 자료 종합

코너속 코너 ①

관세청 FTA 지원사업 소개

FTA 지원사업은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의 FTA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우리 국민 및 기업 등이 FTA를 적기에 활용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관세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YES FTA 컨설팅과 YES FTA 전문교육 두가지이다. 본문에서는 개별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기타 세부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① YES FTA 컨설팅

YES FTA 컨설팅 사업은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역량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최초 수출·수출초보 기업, 거래선 확대 기업, 수출기업에 원재료·완제품 공급(예정) 중소·중견기업이다.

기업 FTA 활용 지원』의 경우 처음 수출하거나, 수출초보 기업 및 거래선 확대 기업의 수출통관, 외환 및 환급, 인증수출자 지정,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타기관 무역지원 정책 안내 등을 종합 지원해주고 있다. 『사후 원산지검증 대응』은 모의검증 실시, 서류보관 및 검증대응 체계 구축 등을 뒷받침한다.

컨설팅의 지원내용은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최초 수출·수출초보 기업 및 거래선 확대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최초 수출·수출초보 기업 및 거래선 확대 기업 및 수출기업에 원재료·완제품 공급(예정)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2가지 유형)	최초 수출·수출초보 기업 및 거래선 확대 기업 FTA 활용지원	사후 원산지검증 대응
	최초 수출·수출초보 기업 및 거래선 확대 기업의 수출통관, 외환 및 환급, 인증수출자 지정,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타기관 무역지원 정책 안내 등 종합 지원	모의검증 실시, 관련 서류보관 및 검증대응 체계 구축 등
지원 금액	기업당 최고 35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금액의 일정 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을 기업이 부담	
업체 부담금	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하 무료, 50억원 이하 10%, 500억원 이하 20%, 1,500억원 이하 30%, 1,500억원 초과 40% 기업부담	

② YES FTA 전문교육

YES FTA 전문교육은 중소기업 실무자, 취업 희망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FTA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동 교육은 집합과정, 온라인 과정, 수요자맞춤교육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육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장소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중심으로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사항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으며, YES FTA 교육지원센터(www.yesftaedu.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후 수강하면 된다. 인기강좌의 경우 우선 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교육일정을 확인한 후 조기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과정	세부과정명	교육시간	교육대상	
집합과정	FTA 첫걸음	7시간(1일)	중소기업 실무자	
	FTA 활용	7시간(1일)		
	FTA 인재양성	초급	14시간(2일)	특성화고생
		중급	21시간(3일)	대학생
	품목분류	4시간(1일)	중소기업 실무자	
	원산지검증	4시간(1일)		
FTA-PASS	7시간(1일)			
온라인과정	인증수출자 신청하기	1시간 내외	중소기업 실무자	
	C/O 작성하기	1시간 내외		
수요자맞춤형과정	1:1 수출컨설팅	3시간(1일)	중소기업 실무자	
	공급망관리	6시간(1일)		



코너속 코너 ②

공익관세사를 활용한 FTA 수출활용 사례¹⁾

공익관세사 제도는 2015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 관세사회와 협력하여 80여명의 공익관세사를 두고 있다. 해당제도와 관련해서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평택의 통관

지원과 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전화상담, 직접방문, 찾아가는 수출입 기업지원센터 직원과 공익관세사가 방문하는 맞춤형 상담서비스 이 세가지 방식으로 진행중이다.

〈공익관세사 제도를 활용한 1인 기업〉

요즘은 1인 기업이 늘어나는 시대이다. 특히, 1인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데 관세청 지원사업 중 공익관세사 제도를 활용한 1인기업이 있다.

서울세관 공익관세사는 지난해 5월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와 공동으로 한-호주 FTA를 활용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희망하는 1인 기업 A사를 방문했다.

A회사는 이전의 수출 경험이 없어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동 기업은 공익관세사 제도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부터 품목분류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아 첫 수출에 성공했다. A사 대표는 “벽이 높아 포기할 생각도 했지만 서울세관과 공익관세사의 컨설팅을 받은 덕분에 첫 수출이 가능했다.”며 “다른 1인 기업에 대한 세관 지원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한 B기업〉

정밀화확용 분쇄기를 칠레로 수출하던 B사는 EU(폴란드) 거래처를 신규로 확보해 수출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폴란드측의 원산지증명서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천세관에서 공익관세사와 함께 B사를 방문해 인증수출자 취득방법 등 한-EU FTA 활용에 대해 꼼꼼하게 컨설팅했다.

1) 본문의 글은 “1인 기업도 수출하도록 도와드립니다”(관세청,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와 협업하는 공익관세사 80명 배치/2020.03.02.)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함.

그 결과 이 회사는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폴란드로 83만 달러(약 10억 원)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참고로,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 증명 및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함으로써 한-EU FTA 경우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며, 기관발급의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 간소화를 통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²⁾

〈원산지관리를 통한 수출가격 경쟁력 상승〉

용접기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C사는 아세안 시장으로 해외 판로를 모색 중이었으나, 중국산의 저가 공세로 인하여 시장 진입이 어렵던 상황에 놓여있었다. C사는 부산세관 공익관세사를 통해 한-아세안 FTA

활용을 통한 시장 진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다. 컨설팅을 통해 특히, 원산지결정기준 중 부가가치 비율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아 수출 가격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주요 지역 수출입기업 지원부서 연락처】

본부세관	부서명	전화번호	주소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9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83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6	부산 중구 총장대로 20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5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5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 43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2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이와 같이 공익관세사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FTA 활용과 관련된 수출, 수입자 요청 원산지증명서 관련 상담, 해외통관애로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동 제도를 잘 활용해 FTA를 기반으로 한 수출시장 다변화와 가격경쟁력을 높여 한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인증수출자 제도는 모든 FTA 협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한-EU, 한-EFTA,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협정에 한해 적용됨.

해외통관애로, 온라인에서 가능



FTA TRADE REPORT



FTA EXPERTS

RCEP의 주요 합의 내용과 기대효과

김민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전환기간에 돌입한 브렉시트, 우리기업이 준비해야할 사항은?

김정균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과장



김민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RCEP의 주요 합의 내용과 기대효과

RCEP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참여국간의 생산 네트워크 역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RCEP의 발효에 따라 상품관세 감축 시 우리나라 경제는 0.41~0.62%의 성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소비자 후생은 42억~6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관세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외에 RCEP을 통해 원산지 규정과 증명, 통관 절차, 표준 등이 통일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특혜 관세 활용 시 어려운 점으로

‘원산지 증명을 받는 절차가 까다로움’,
‘국가별로 원산지 규정을 파악하기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어

RCEP의 타결로 기체결 FTA의 스파게티볼
효과가 제거되면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이 보다 용이해진다.



1.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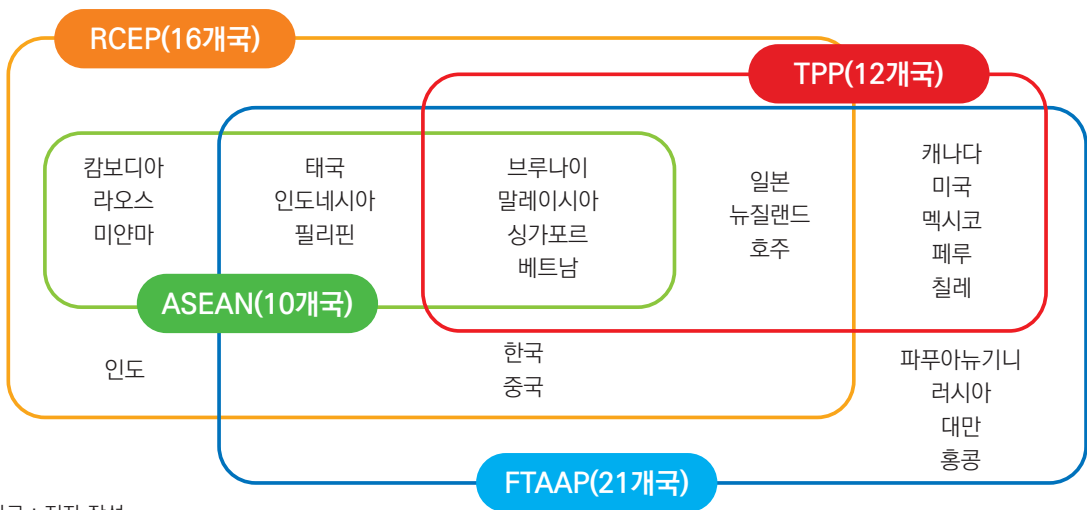
2000년대 들어 DDA 협상의 지연으로 WTO 다자무역체제에서 추가 자유화에 대한 논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대안으로 양자 FTA가 급증하였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TPP(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환태평양동반자협상),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등 다수의 협상국이 참여하는 무역자유화협정인 메가 FTA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부상하기 시작했다. 메가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먼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역내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TPP 협상을 주도하자 이에 대응으로 중국도 RCEP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정치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더불어 FTA의 비효율성,

새로운 통상 규범 제정의 필요성,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발달 등의 경제적 요인이 있다. 다수의 양자 FTA를 체결할 경우 FTA 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등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메가 FTA를 체결하게 되면 원산지 규정 및 증명, 통관절차가 통일되어 기업의 편의가 증가하고 거래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더불어 통상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환경, 중소기업 등 신규 이슈들에 대한 규범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WTO 다자협상에서 신규 무역규범 제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FTA에서 신규 규범 제정을 논의하기에 한계가 있어 차선책으로 메가 FTA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에서 제정된 신규 무역 규범은 향후 다자협상이나 다른 FTA 협상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경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인력과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생산 분업이 확대 되었으며, 이러한 생산 분업 구조는 첨단 산업일수록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하게 연결 되어 있다. 따라서 GVC 참여국 간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 네트 워크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해진 점도 메가 FTA 추진의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RCEP, TPP와 FTAAP 참여국 현황】



자료 : 저자 작성



2. 추진 경과¹⁾

중국은 2004년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을 주도하기 위해 ASEAN+3(한국, 일본, 중국)의 무역협정을 제안하였고,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06년 ASEAN+6(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무역협정을 제안하였다.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놓고 경쟁하는 사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2008년 TPP 협상참여를 선언하며 TPP 협상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2011년 11월 ASEAN 정상회담 시 ASEAN은 ASEAN+6개국으로 구성된 RCEP 작업계획(RCEP Framework)을 제안하였고,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에 대응하고자 RCEP 추진에 적극 협력하였다. 이후 각 분야별 작업반 회의를 거쳐 2012년 11월 RCEP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되었으며, 2013년 5월 제1차 공식 협상이 시작되었다. RCEP 협상은 8개의 작업반(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기술협력, 지재권, 경쟁, 법률 제도, 전자상거래)과 6개의 소작업반(상품 작업반 하의 원산지, 통관, SPS, STRACAP(TBT)과 서비스 작업반 하의 금융, 통신)으로 진행되었다.

RCEP 참여국들은 당초 2015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였으나 협상을 뚜렷하게 주도하는 국가가 없는 가운데 협상 참여국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협상 타결 시한이 거듭 연기되었다. 중국은 RCEP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협상을 주도할 만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고,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 협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ASEAN의 경우 10개국 간의 내부 합의가 쉽게 도출되지 않아 RCEP 협상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RCEP 타결을 요구한 반면 인도는 상품 분야에서는 낮은 수준의 자유화를, 서비스 분야에서는 Mode 4(자연인의 이동)를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요구하였다. 우리나라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는 물론 지재권, 경쟁 등 우리의 관심분야가 높은 규범 분야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였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6개의 비(非) ASEAN 국가(AFP, ASEAN FTA Parter)의 입장을 조율하고 논의를 촉진하는 조정자(AFP Facilitator) 역할을 맡는 등 참여국의 발전 정도를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1)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rcep/>)와 RCEP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RCEP 주요국의 참여 전략】

중국	- 중국은 RCEP을 통해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이익을 누리고,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 수립에 이용하고 자 함.
일본	-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TPP 타결에 집중해 왔으며, RCEP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ASEAN	- ASEAN 10개국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ASEAN 내부적으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AFP와 협상하는 방식을 선택함. - ASEAN 내부적으로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RCEP 전체 협상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내 경제개혁에 집중하면서 RCEP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태임.
인도	- 인도는 RCEP을 그 동안 배제되어 왔던 역내 지역무역협정의 참여 기회로 보고 있으며, 협상 초기부터 상품분야에는 소극적, 서비스 분야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고수함.
호주, 뉴질랜드	- 호주와 뉴질랜드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RCEP 타결을 지향

자료 : 라미령, 김제국(2017),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7 No.5, pp.14-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2016년 12월까지 RCEP 협상은 16차례의 공식회의, 6차례 장관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좀처럼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호 무역주의 기조아래 2017년 1월 TPP 탈퇴를 선언하고²⁾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RCEP 협상이 가속화되었다. 2017년 11월 제1차 정상회의에서 △ RCEP의 거대한 잠재력, △ 참여국간 발전 수준을 고려한 유연성, △ 2018년 타결 목표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이 채택되었다.³⁾ 2018년 11월 제2차 정상 회의에서는 7개의 장(통관, 정부조달, 경제기술협력, 중소기업, 제도규정, 위생 및 검역 조치,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의 타결 등 실질적 진전을 도출함에 따라 RCEP 협상이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2019년 연내 타결을 결의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 개방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거쳐 2019년 11월 제3차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 타결 및 대부분의 시장개방을 마무리하였음을

2) 2017년 1월 미국이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협정의 발효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으나, 일본 주도로 11개국이 포괄적·점진적 TPP를 의미하는 CPTPP(Comprehensive-progressive Trans Pacific Partnership)를 추진하여 2018년 3월에 공식 서명하였다. CPTPP는 2018년 12월에 발효되었다.

3) 이상현(2017.11.4) 「RCEP 정상회의, '아·태 메가 FTA 내년 타결' 공동성명 채택」, 『연합뉴스』

공식 선언하였다.⁴⁾ RCEP 참여국들은 향후 시장 개방 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2020년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인도는 주요 이슈에 대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참고】 인도의 RCEP 협정문 타결 미참여 배경⁵⁾

인도는 RCEP 협상에 참여하면서 국가 그룹에 따른 상이한 관세 감축의 적용, 수입 급증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ISDS)의 미포함, WTO 플러스 이상의 지재권 보호 확대 반대 등의 입장을 표명해 왔다.

지난 10년 간 인도의 무역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무역적자는 2016년 이후부터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2018년 2,95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RCEP 참여국에 대해 모두 무역적자 상태이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상당한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740억에 이른다.⁶⁾

인도는 RCEP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RCEP 참여국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국가 그룹에 따라 상이한 관세감축(a three-tiered structure)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ASEAN 국가에 대해서는 80%의 관세 감축을, 일본과 한국과 같이 기존에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62.5%의 관세 감축을,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현재 FTA를 체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42.5%의 관세 감축을 제안한 것이다. 이후 RCEP 참여국의 반대로 중국,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74%의 관세 감축을, 나머지 RCEP 참여국에 대해서는 86%까지 관세 감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RCEP 협상 참여국들은 모든 국가에 대해 관세 품목의 92%까지 감축하고, RCEP 발효 후 1/4 이상의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 철폐할 것을 인도에 요구하였다. 또한 인도는 RCEP으로 인해 중국산 물품의 수입 급증을 우려하여 회원국들과 상호 합의 하에 정해진 특정 기준치(threshold)에 도달하면 수입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자동적으로 철회(Snap Back)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제안하였다. 더불어 중국의 값싼 물건이 제3국을 통해 인도로 우회수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요구하였다. 인도는 특정 상품의 원산지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생산국에서 2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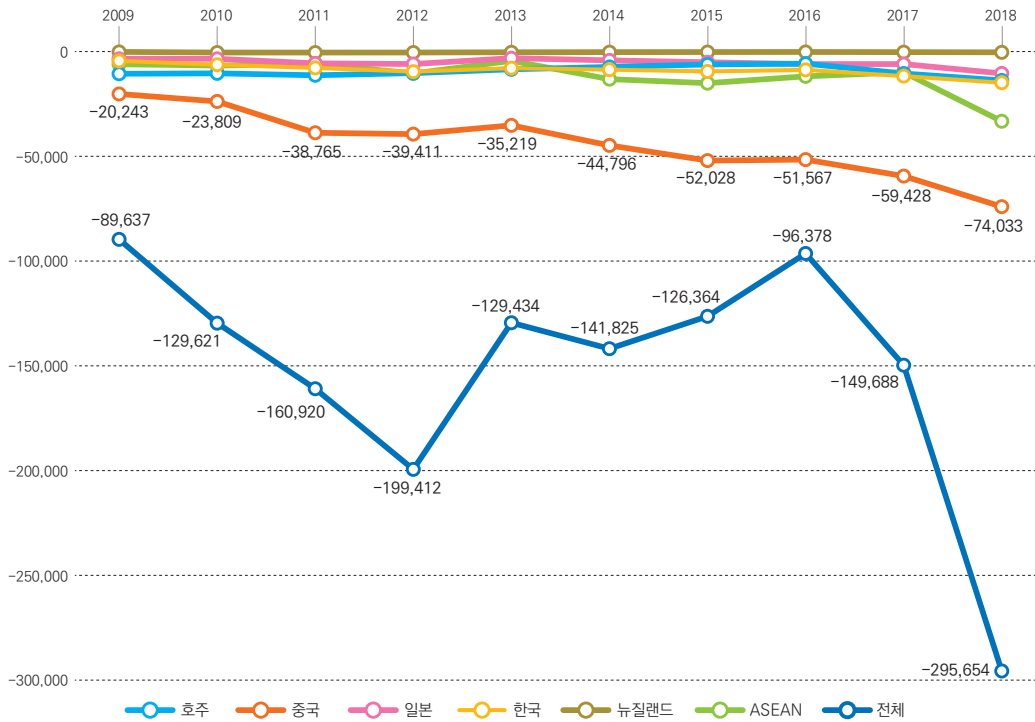
4) RCEP 협상은 협상 개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총 28차례의 공식협상, 제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가 개최된 후 타결되었다.

5) Harsh V.Pant and Nandini Sarma.(2019. 11. 19). "Modi Was Right. India Isn't Ready for Free Trade".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19/11/19/modi-pull-out-rcep-india-manufacturers-compete-china/> (검색일: 2020. 3. 4)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6) 인도는 캄보디아, 필리핀 등 ASEAN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ASEAN 전체에 대해서는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인도의 RCEP 참여국에 대한 무역수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WITS), Trade Data(검색일: 2020.3.2)를 활용하여 저자 정리

지재권 분야에 있어서도 신약의 효능을 증명하는 임상실험 데이터의 보호와 관련된 자료 독점권 요구 및 특허기간 연장과 같은 WTO 플러스 이상의 조항은 저렴한 복제 의약품의 접근성을 방해하는 등 인도의 복제의약품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더욱이 최근 인도의 경기 침체와 기체결 FTA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더해지면서 인도 정부는 자국의 낙농업 및 농산물 보호, 경쟁력이 낮은 국내 제조업(철강, 자동차 등) 보호를 위해 RCEP 협중문 타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인도 정부의 RCEP 참여 연기 결정에 대해 인도 정계 및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⁷⁾

7) KOTRA(2019), 「RCEP 협정문 타결 경과 및 회원국 반응」, Global Market Report 19-101, p. 20.

3. 주요 합의 내용⁸⁾

RCEP 협정문은 상품, 통관,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을 포함해 총 20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RCEP 협정문의 구성】

제1장 최종 조항 및 일반 정의	제11장 지식재산권
제2장 상품 무역	제12장 전자상거래
제3장 원산지 규정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부속서 포함	제13장 경쟁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 원활화	제14장 중소기업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15장 경제기술협력
제6장 표준,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16장 정부조달
제7장 무역구제	제17장 일반규정 및 예외
제8장 서비스 무역 -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및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부속서 포함	제18장 제도규정
제9장 인력이동	제19장 분쟁해결
제10장 투자	제20장 최종 조항

자료 : Joint Leaders' Statement o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상품 양허는 FTA 기체결국 간 90%이상의 자유화 수준을 목표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미체결국과 후발개도국과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양허안에 합의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⁰⁾ RCEP에서는

기체결 FTA마다 상이한 원산지 규정을 통일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개선하여 기업 편의를 제고 하였다. 또한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RCEP 참여국의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그 원재료를 최종 생산자의

8) 잔여 이슈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으로 아직 RCEP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19. 11. 4), 「역내포괄적 경제동반협정(RCEP)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 선언」을 바탕으로 New Zealand Foreign Affairs & Trade(2019), RCEP Key outcomes, <https://www.mfat.govt.nz/en/trade/free-trade-agreements/agreements-under-negotiation/regional-comprehensive-economic-partnership-rcep/key-outcomes/> (검색일: 2020. 3. 6)과 Australian Government(2019), RCEP Outcomes at a Glance, <https://www.dfat.gov.au/trade/agreements/negotiations/rcep/Pages/regional-comprehensive-economic-partnership>(검색일: 2020. 3. 7)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정리

9) 오수현, 한형민, 연원호, 이보람, 김지현(20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19 No.24, p.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재료누적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한·ASEAN FTA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챕터를 도입하여 신속한 통관 절차를 마련하였다. 예컨대 신선 어패류, 과일, 야채 등을 포함한 부패성 상품의 경우 6시간 안에 반출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TBT, SPS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협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기존 ASEAN 등과의 FTA에 비해 자유화 요소가 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금융과 통신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부속서를 채택하여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의 진출기반을 확보하였다. 더불어 전문직 서비스에 대해서도 별도의 부속서를 마련하여, 국경 간 전문직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기관이 자격증(qualifications)·면허(licences)·등록(registration)의 인정,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등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framework)을 마련하였다. 투자 분야에서도 한·ASEAN FTA 이상의 높은 투자 자유화 및 보호규범을 확보하였다.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투자원활화 관련 조항을 비롯하여 수용에 대한 보상 규정,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자본 이전 등의 핵심 투자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공중보건을 포함한 중요한 공공 복리 목적의 규제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부여하고 투자 스크리닝을 위한 국가의 권리를 인정 해주었다.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 제도는 이번 합의 사항에서는 제외되었으며 향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밖에도 RCEP은 무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정부조달 등 최신 무역 규범에 대한 챕터를 포함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에서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전반을 포괄하는 보호 규범을 마련하여 RCEP 지역 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자 상거래의 경우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허용하고, 데이터 현지화 관련 규정을 포함한 정부의 규제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무역 문서의 전자화, 전자 서명과 전자 인증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더불어 소비자 및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스팸 방지 등과 관련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중소기업 분야 역시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기존의 FTA와는 달리 별도의 챕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참여와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조달 챕터는 중앙 정부의 조달에서 RCEP 참여국들 간의 협력과 투명성 증진을 위한 내용이 포함 되었다. ASEAN 전체 및 다수의 ASEAN 개별 회원국에게 정부조달 챕터가 포함된 무역협정은 RCEP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기대효과 및 시사점

RCEP 참여국과의 교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참여국간의 생산 네트워크 역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 RCEP 수출의 경우 2019년 기준 2,841억 달러(인도 제외 시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52.4%(인도 제외 시 49.6%)를 차지하고 있다. 대 RCEP 수입의 경우 2,385억 달러(인도 제외 시 2,329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47.4%(인도 제외 시 46.3%)를 차지하고 있다. 역내 GVC를 살펴보면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국내부가가치 수출국으로 최종재 대비 중간재의

수출 비중이 높고,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및 일본과는 국제 분업 연계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우리나라와 RCEP 참여국 간의 교역 규모와 생산 분업 구조를 고려해 볼 때 RCEP의 타결로 거대 경제공동체가 완성되면 추가 자유화를 통한 역내 교역 증가 및 투자 확대,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화, 무역 규범 개선 등 기존 양자 FTA를 보완 하면서 추가적인 혜택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15개 RCEP 참여국가 중 유일하게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RCEP 참여국에 대한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명	2018년				2019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중국	162,125	26.8	106,489	19.9	136,203	25.1	107,229	21.3
ASEAN	100,113	16.6	59,626	11.1	95,086	17.5	56,186	11.2
일본	30,529	5.0	54,604	10.2	28,420	5.2	47,581	9.5
인도	15,606	2.6	5,885	1.1	15,096	2.8	5,565	1.1
호주	9,610	1.6	20,719	3.9	7,891	1.5	20,608	4.1
뉴질랜드	1,744	0.3	1,380	0.3	1,392	0.3	1,300	0.3
RCEP	319,727	52.9	248,703	46.5	284,088	52.4	238,469	47.4
RCEP(인도 제외)	304,121	50.3	242,818	45.4	268,992	49.6	232,904	46.3
총계	604,860	100.0	535,202	100.0	542,233	100.0	503,343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국내통계(검색일 : 2020. 3. 12)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정리

10) 오수현, 한형민, 연원호, 이보람, 김지현(20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19 No.24, p.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수현 외(2019)는 RCEP의 발효에 따라 상품관세 감축 시 우리나라 경제는 0.41~0.62%의 성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소비자 후생은 42억~6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인도가 참여하고 상품 양허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커진다.

【RCEP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구분	내용	성장효과(%)	소비자 후생효과(억 달러)
시나리오 1	인도 불참, 85% 관세감축	0.41	42.46
시나리오 2	인도 불참, 92% 관세감축	0.51	54.76
시나리오 3	인도 참여, 85% 관세감축	0.50	54.10
시나리오 4	인도 참여, 92% 관세감축	0.62	6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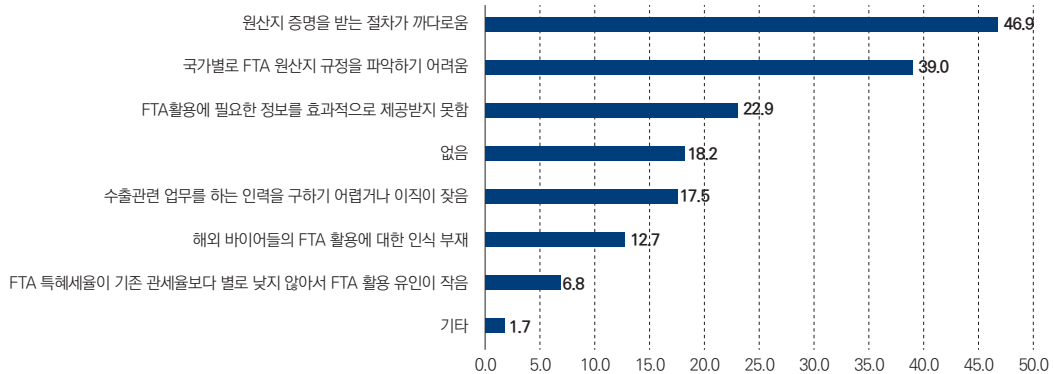
자료 : 오수현, 한형민, 연원호, 이보람, 김지현. 20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19 No.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세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외에 RCEP을 통해 원산지 규정과 증명, 통관 절차, 표준 등이 통일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최근 FTA 활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혜 관세 활용 시 어려운 점으로 ‘원산지 증명을 받는 절차가 까다로움

(46.9%)’, ‘국가별로 원산지 규정을 파악하기 어려움(39%)’을 가장 많이 응답한 사례에서 보듯이 RCEP의 타결로 기체결 FTA의 스파게티볼 효과가 제거되면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FTA 활용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이 특혜관세 활용 시 어려운 점】

(단위 : %)



주 : 2019년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로 조사대상 1,000개의 중소기업 중 FTA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92개 기업의 응답 자료 중 애로사항에 대한 복수 응답(2가지 이하)을 합산함.

자료 : 구경현, 오수현, 박혜리, 김민성, 황운중(2019),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판 예정

또한 RCEP의 원산지 누적 조항을 활용할 경우 기존의 양자 FTA에 비해 역내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누적의 범위와 대상이 넓어져 원산지 규정의 충족이 보다 용이해 진다. 더불어 역내국 간의 무역이 증가하고 기업의 중간재 조달 및 생산 설비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생산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정철 외(2017)에서는 복수국간 FTA(메가 FTA 포함)에서 원산지 누적 조항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RCEP이나 CPTPP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실질 GDP는 모두 증가하고 비회원국의 실질 GDP는 감소하거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또한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양자, 유사, 완전 누적의 순으로 크고 역내 참여국 간의 무역 및 생산 네트워크의 연계성이

높을수록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역 및 생산 네트워크의 연계성이 높은 RCEP의 경우 원산지 누적 조항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

한편 아직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RCEP의 산업별 파급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으나 RCEP이 기존 양자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양허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농업 분야의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에서 RCEP 참여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중국을 포함한 호주, 뉴질랜드는 농축산물 수출 강국이며 ASEAN도 열대 과일 등의 주력 수출농산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¹²⁾ 김영훈 외(2016)에서는

11) 정철, 박순찬, 박인원, 김민성, 곽소영, 정민철(2017),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연구보고서 17-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 서윤(2019. 11. 8), 「개도국 지위포기에 RCEP까지 타결... 한국농업 '산 넘어 산」, 『농민신문』

RCEP협상이 타결될 경우 보리, 울무, 고구마, 팥 등의 곡물류와 배추, 당근, 수박, 양파, 마늘, 고추, 생강 등의 과채·채소류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¹³⁾ 또한 동 보고서는 사과, 배, 복숭아, 감, 감귤 등의 신선과일의 경우 현재 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지만 향후 RCEP 협상 타결이 검역에 영향을 준다면 이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상품 분야 외에도 RCEP의 타결로 서비스 무역의 증대 및 투자 환경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낮은 수준에서 체결되었던 한·ASEAN FTA, 한·중 FTA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RCEP에서는 최근의 무역환경을 반영하여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등에 대해 별도의 챕터를 마련하여 한·ASEAN FTA를 비롯해 한·인도 FTA, 한·중 FTA의 규범 분야를 업그레이드 하였다.

【RCEP 및 RCEP 참여국과의 기체결 FTA의 무역규범 관련 챕터 포함 여부 비교】

구분	RCEP	한·ASEAN	한·중	한·인도	한·호주	한·뉴질랜드
지식재산권	○	X	○	○	○	○
전자상거래	○	X	○	X	○	X
경쟁	○	X	○	○	○	○
중소기업	○	X	X	X	X	X
정부조달	○	X	X	X	○	○

자료 : 각 협정문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인도의 참여를 포함하여 RCEP 협상이 최종 타결 되면 전세계 GDP의 3분의 1, 세계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다. RCEP에는 ASEAN,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교역 및 투자 국가를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RCEP은 발전 단계가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역내 분업구조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WTO로 대표되던 다자무역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RCEP은 규범을 기반으로 한 자유 무역의 가치를 수호하고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RCEP은 아직 시장 개방 등 잔여 이슈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으로 각 국의 민감 분야를 고려하면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상을 마무리하고 거대 신흥국인 인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13) 김영훈, 어명근, 이상현, 조성주, 정대희, 안수정, 오세라(2016), 「Post-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 방안」, 연구보고 R797, p. 16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55



전환기간에 돌입한 브렉시트, 우리기업이 준비해야할 사항은?



김정균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과장



전환기간에 돌입한 브렉시트, 우리기업이 준비해야할 사항은?

브렉시트 발생 시 한국은 영국과 교역에서 한-EU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지만, 전환기간 종료 전까지는 한-EU FTA에 따라, 종료 후에는 한-영 FTA에 따라 계속해서 특혜관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통관과, FTA 적용, 인증 등의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에 우리 기업은 전환기간 동안

- ① 영국의 통관절차 지연에 대비 ② 원산지 규정 및 직접운송 원칙 재확인
- ③ 전환기간 연장 여부를 주시하며, 이후 정부의 지침 변경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것을 권한다.



1. 드디어 결정된 브렉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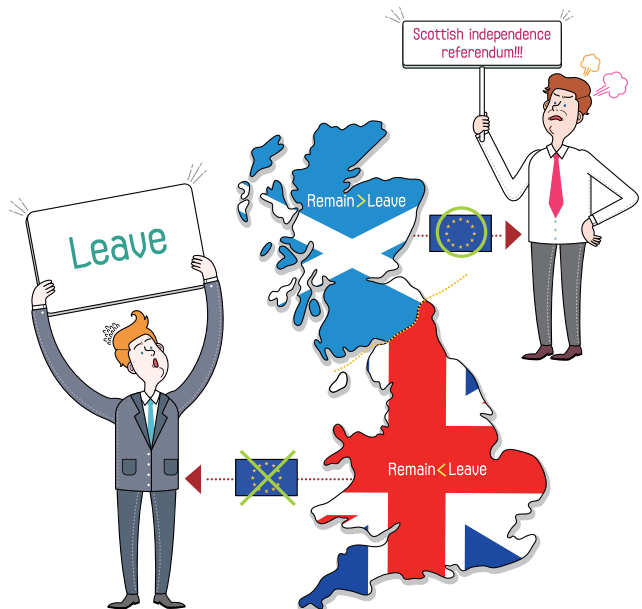
2020년 1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를 기해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가 공식화 되었다. 2016년 6월 영국이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한 이래 무려 3년 7개월 만의 일이다. 2018년 11월 14일 영국-EU 간 브렉시트 합의안(Withdrawal Agreement)이 타결되었으나 영국 하원에서의 승인 투표가 잇따라 부결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로 인해 2019년 3월 29일로 예정되었던 브렉시트 시한은 세 차례 연기되었고, 협상을 이끌던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가 사퇴하기도 하였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진통을 겪게 배경엔 2017년 6월 실시된 조기총선이 있다. 당시 집권 보수당은 하원 의석 650석 중 328석의 아슬아슬한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이 총리는 조기총선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실제 총선 결과 보수당은 과반에도 못 미치는 317석을 얻는데 그치면서 정국 혼란만 가중되었다.

여기에 보수당 내 강경파가 브렉시트 합의안의 백스톱(Backstop) 조항에 반발하면서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사이에 기존에 없던 국경 절차, 소위 “하드 보더(Hard border)”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백스톱 조항은 EU와 영국이 하드 보더 문제의 해법을 찾을 때까지 영국과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킨다는

조항이다. 문제는 전환기간 종료 후에도 해법을 찾지 못하면 영국이 계속 EU 관세동맹에 잔류해야 하므로, 보수당 강경파는 영국이 실질적으로 EU 관세동맹에 계속 종속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였다. 실제 2019년 1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첫 번째 승인투표에서 보수당의 이탈표가 무려 118표에 달하며, 역사상 최다 표차로 부결되었다.

결국 2019년 7월 24일 새롭게 취임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기존 합의안의 백스톱 조항을 수정하고, 12월 실시한 조기총선에서 전체 650석 중 365석의 안정적 과반을 확보하며 브렉시트의 교착 국면을 타개할 수 있었다.



2. 브렉시트 협상 2라운드,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

브렉시트가 공식 발효되면서 영국은 EU의 의사결정 기구인 집행위원회, 의회, 이사회 및 산하기구에서 탈퇴하였다. 대신 원활한 브렉시트의 이행을 위해 영국과 EU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이 시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 영국은 EU 단일 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고 EU 법체계를 그대로 따르게 되기 때문에, 당장 영국과 EU 간에 있어 큰 변화는 없다. 전환기간 이후 영국과 EU가 맞게 될 실질적인 변화는 영국-EU 간의 “미래 관계(The Future relationship)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전환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이 협상은 그 범위가 무역협정을 포함하여 안보, 사법, 교통, 외교 등을 총 망라한다. 안보 협력과 교통 연계 등 양측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는 분야도 있으나 무역협상과 이와 연계된 규제영역에서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환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영국과 EU 양측은 곧바로 협상준비를 개시하였다. EU는 2월 25일 협상지침을 이사회에서 확정하였고, 영국 정부도 2월 27일에 협상지침을 발표하며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현재 5차 협상까지 일정이 합의가 된 상황이며, 1차 협상은 3월 2일에서 5일까지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다만 3월 18일 개최 예정이었던 2차 협상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취소된 상황이다.

【전환기간의 주요 Timeline】

날 짜	내 용
2020.1.31.	브렉시트 발효,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 돌입
2020.3.2.~ 5.	제1차 공식협상 (브뤼셀)
2020.3.18. ~ 20.	제2차 공식협상 (런던)
2020.4.6. ~ 8.	제3차 공식협상 (브뤼셀)
2020.4.27 ~ 30.	제4차 공식협상 (런던)
2020.5.13 ~ 16	제5차 공식협상 (브뤼셀)
2020.6.30.	전환기간 연장 시한
2020.12.31.	미래관계협정 비준 시한

3. 미래관계협상의 주요 쟁점

전환기간 종료 전까지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떠나게 되는 “노딜(No-deal) 브렉시트”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양 측이 발표한 협상 초안과 1차 협상에서 드러난 양측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전환기간 내의 협상 타결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다.

가장 큰 협상 쟁점은 영국이 EU의 규제 표준을 어느 정도 따를 것인지 여부이다. 영국은 EU와의 무역관계 모델로 소위 “캐나다” 방식을 거론한다. EU가 한국, 일본, 캐나다와 체결한 FTA와 유사하게 상품시장 관세는 거의 대부분 철폐하지만 환경, 노동, 보조금 등 규제와 관련하여 EU 표준을 따르지 않고 영국의 자치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EU는 영국과 EU 간에 경제적 상호연결성과 무역량이 크고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하기 때문에, 영국이 EU 규제 표준을 따르지 않고 규제를 완화할 경우 EU 단일시장에서 영국기업이 불합리한 경쟁우위를 가지게 되어 공정경쟁체제(Level Playing Field)가 깨지게 된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EU는 영국이 상품안전 및 식품위생 기준 등에 규제완화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영국이 원하는 수준의 시장 개방은 없을 것이라 강하게 주장한다. 특히 2019년 11월 새로 출범한 EU 집행위원회는 환경과 노동규범 강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를 한국 등 주변국에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쟁점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일정과 관련해서는 전환기간 연장 여부가 문제된다. 11개월에 불과한 전환기간 내에 미래관계 협상의 모든 사안을 타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EU 이사회는 2월 3일 협상지침 초안을 발표하면서 동 협상이 “EU기능 조약(TFEU)” 제217조에 근거한 이사회 의결사항임을 밝혔다. 이는 EU 27개국 중 어느 하나라도 반대하면 협정이 비준될 수 없기 때문에, EU 국가 간 의견 조율에 상당 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타결될 협상 내용에 따라 EU 27개 회원국의 국내 비준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비준 절차만으로도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양 측이 합의하면 전환기간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문제는 영국의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 금지를 법제화했다는 점이다. 브렉시트가 되었지만 여전히 EU의 단일시장과 규제체제에 종속되어있는 현 영국의 상황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2월 27일 발표된 영국의 협상지침에서도 “미래관계 협정 초안이 6월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무역협정 대신 WTO 협정에 따른 교역관계로 전환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혀, 2020년 내 타결을 EU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COVID-19)가 유럽 전역에 확산되면서 양자 간 협상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3월 18일 개최 예정이었던 2차 협상이 연기되었고, EU 측 협상대표인 미셸 바르니에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중에 있다. 양 측은 화상회의 등의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 정책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책적 역량을 미래관계 협상에 집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4. 우리기업이 대비해야 할 사항은?

한국 입장에서 볼 때 브렉시트 발생 시 영국과 교역에서 한-EU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였다. 다행히 2019년 10월 22일 한-영 FTA의 비준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영국과의 교역에서 전환기간 종료 전까지는 한-EU FTA에 따라, 종료 후에는 한-영 FTA에 따라 계속

해서 특혜관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통관과 FTA 적용, 인증 등의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에 우리 기업이 전환기간 동안 확인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통관 - 영국의 통관절차 지연에 대비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탈퇴하게 되면 영국과 EU 사이는 역외 통관절차가 적용되게 된다. 특히 영국은 전체 수입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EU 수입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역외 절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다른 역외 국가 통관도 지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브렉시트 이후에도 수출입 절차에 따른 제약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기도 했지만,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2월 10일 현지 무역업계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온라인 통관이 완전히 정착되려면 5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은 전환기간 종료 이후 영국 수출 시 통관절차의 혼란 및 지연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FTA - 원산지 규정 및 직접운송 원칙 재확인

한-영 FTA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규정과 직접운송 원칙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일부 받지 못할 수 있다. 먼저,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한-영 FTA 발효 후 3년까지 한시적으로 EU산 부분품도 한-영 FTA 역내산으로 인정되어, 당분간 영국으로 수출하는 완제품의 원산지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EU FTA 상에서는 영국산 부분품이 더 이상 역내산이 아니기 때문에, 영국산 부품 비율이 높은 완제품은 한-EU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여 한-EU FTA 역내산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영국에서 EU로 발송하거나 EU에서 영국으로 발송하는 한국산 제품은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한-EU FTA와 한-영 FTA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브렉시트 전에는 EU와 영국이 단일시장을 이루기 때문에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웠지만, 전환기간 종료 후에는 역외 통관관세가 발생한다. 따라서 EU 내 물류기지에서 영국으로 한국산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물류 프로세스의 점검이 필요하다. 다만, 한-영 FTA는 EU를 경유하여 영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EU의 보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유 수출 일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체크해야 한다.

3) 인증 및 규제 - 제도 변화 모니터링

인증 및 규제는 미래관계 협상의 핵심쟁점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향후 양측의 합의 결과에 따라 영국의 인증 및 규제제도 변화의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우리 수출기업은 영국 정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지침 변화를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환기간에 돌입한 2020년 2월 1일에 영국 정부의 노딜 브렉시트 대비 인증 및 규제 관련 지침이 폐기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일례로 영국 정부는 노딜 이후 EU의 인증표준인 “CE 마크”를 대신할 UKCA를 발표함과 동시에 기존 제품은 한시적으로

“CE 마크”를 인정한다는 지침을 공지했지만, 전환기간에 돌입하자 폐기하였다. 새로운 지침의 발표 시점 및 내용은 전환기간의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환기간 연장 합의 기한인 6월 30일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전환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7월 이후부터 영국 정부에서 관련 지침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선은 전환기간 연장 여부를 주시하며, 이후 정부의 지침 변경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것을 권한다.

FTA TRADE REPORT



FTA ANALYSIS

APTA vs 한-중 FTA, 더 낮은 관세율 활용하기

오윤진 |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전문연구원

김설룡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신남방국가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베트남편

황정훈 | 국제원산지정보원 정보분석팀 전문연구원

말레이시아의 신규 통상통관환경 및 FTA 활용

안소영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부연구위원

이주연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한-중 FTA

APTA

**오윤진**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전문연구원**김설룡**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APTA vs 한-중 FTA, 더 낮은 관세율 활용하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이하 APTA)은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 확대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협정이다.

그 역사는 1976년 방콕에서부터 시작되었고, 2006년에 들어서 그 명칭이 APTA로 변경되었다. 회원국간 상품 관세인하 협정으로 시작하여 2009년부터는 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 협정으로 확대 진행 중에 있다. 이 협정의 주요 회원국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5개국(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이 있다.

* 몽골은 가입을 위한 국내 비준절차가 진행 중



APTA 회원국 중 중국은 우리나라 FTA 협약국(2015.12.20. 발효)으로서 2개의 특혜세율을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중국의 상위 수출입 품목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중국 APTA 세율과 FTA 협정세율의 비교를 통해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특혜세율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적으로 FTA(Free Trade Agreement)와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 Asia-Pacific Trade Agreement)는 개념적으로 체약국간의 관세철폐 또는 양허를 통한 무역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다만 FTA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적용이 되며, APTA는 「관세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對중국 상위 수출 품목의 APTA vs 한-중 FTA

중국의 ATPA 세율과 FTA 세율을 비교하기에 앞서 중국의 주요 수입관세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수입관세율은 일반세율, 최혜국(MFN) 관세율, 잠정세율, 특혜세율, 협정세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관세의 적용은 탄력관세(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 → 협정세율(FTA 관세, APTA 관세 등) → 할당관세 → 특혜세율 → 잠정세율 → 일반세율의 순으로 부과된다. 단, 잠정세율, 특혜세율 및 협정세율이 모두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낮은 세율을 선택하여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1】 중국의 주요 수입 관세율

종류	범위
협정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이나 조약을 통해 규정되는 우대 관세율로 일반적으로 최혜국세율보다 낮고 협정이나 조약의 유효기간 내 조약국 동의 없이는 세율의 자동 갱신이나 폐지가 불가능함 ○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FTA세율 및 APTA 협정에 따라 APTA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할당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Quota)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쿼터내의 수량에 대해서는 저세율을 부과하고 쿼터외의 수량에 대해서 고세율을 부과하는 탄력관세의 일종임
특혜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국가 및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특수 관세로서 최혜국원칙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혜국원칙을 근거로 특혜세율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음 ○ APTA 2개국(라오스, 방글라데시)과 아세안 4개국(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최빈국 40개국이 포함됨
잠정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기간 '임시'로 적용하는 관세율로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물품 중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 MFN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됨
최혜국(MFN) 관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FN(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최혜국조치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
일반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MFN 관세율, 협정관세율 또는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자료 : 중국해관총서, 중국 재정부 등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아래 표[1-2]는 2019년 기준 중국의 對한국 수입 금액(이하 對중 수출금액으로 기재한다) 상위 100대 품목(HS 8단위 기준) 중 APTA 협정 대상 품목을 일부 선별(29개 품목)하여 나열한 것이다. 특히 중국으로 수출할 때 중국 수입자가 AP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품목은 13개, FTA 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은 10개로 나타났으며, APTA와 FTA 적용 세율이 동일한 품목은 3개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잠정세율 적용 가능한 품목은 3개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1-2】협정별 저세율 적용 가능 품목 수

2019년 기준 對중국 수출금액 상위 100대 품목 중 APTA협정 대상 품목 ¹⁾							
APTA (13개)				FTA (10개)			
1	21069090	8	87032343	1	03061729	8	88024010
2	29025000	9	87032361	2	27111200	9	88024020
3	85076000	10	87032362	3	38249999	10	90318090
4	85371090	11	87032412	4	39011000		
5	85423119	12	87082990	5	39012000		
6	87032341	13	90012000	6	74040000		
7	87032342			7	85299042		
FTA=APTA (3개)				잠정 (3개)			
1	12019010	3	84111210	1	27101220	3	74031111*
2	71023900			2	39074000		*(잠정=FTA)

주 1 : APTA협정 적용 대상이 아닌 품목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중국 국무원관세위원회 제2019-50호 (2020년도 관세율표 개정공고)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아래 표[1-3]은 표[1-2]에서 나열된 품목 중 AP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품목 13개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해당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FTA를 적용했을 때보다 0.1%p ~ 13.5%p의 세율 차이를 보여 AP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APTA 활용 시 보다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

중국 HS코드 8단위	HS 8단위 품목명	협정별 적용 세율(%)			對중 수출금액	
		APTA	FTA	세율 차이	2019년 (천불)	전년대비 증가율(%)
85423119	기타	0.8	4	3.2	13,372,317	-14.3
87032362	크로스컨트리차량(4WD)	13.5	미양허	13.5	9,294,189	-31.5
87032341	세단(sedan)형 자동차	13.5	22.5	9	6,799,513	-12.4
87032361	세단(sedan)형 자동차	13.5	22.5	9	5,862,376	2.1
87032343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 (좌석이 9 개 이하인 것으로 한정 한다))	13.5	22.5	9	4,694,936	15.5
90012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2.6	3.2	0.6	4,364,701	1.2
87032342	크로스컨트리차량(4WD)	13.5	22.5	9	4,124,114	-6.6
87082990	기타	5.4	9	3.6	4,060,070	-3.4
85371090	기타	4	5	1	3,799,729	-0.7
85076000	리튬이온 축전지	8	9.6	1.6	3,724,489	-4.2
87032412	크로스컨트리차량(4WD)	13.5	22.5	9	3,580,117	-3.7
29025000	스티렌	1.3	1.4	0.1	3,313,156	-16.2
21069090	기타	11	18.4	7.4	3,069,112	15.0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중국 국무원관세위원회 제2019-50호 (2020년도 관세율표 개정공고)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아래 표[1-4]는 표[1-2]에서 나열된 품목 중 F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품목 10개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해당 품목을 중국부터

수출할 경우 FTA를 적용했을 때보다 0.1%p~3.5%p의 세율 차이를 보여 F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 FTA 활용 시 보다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

중국 HS코드 8단위	HS 8단위 품목명	협정별 적용 세율(%)			對중 수출금액	
		APTA	FTA	세율 차이	2019년 (천불)	전년대비 증가율(%)
88024020	자체 중량이 4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7	0	0.7	10,309,144	-22.3
3901200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6	5.9	0.1	8,276,265	-6.2
740400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8	0	0.8	7,478,911	-20.0
27111200	프로판	3.5	0	3.5	7,363,375	-6.8
85299042 ¹⁾	카메라모듈(특수목적에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5.2	4.8	0.4	6,758,095	-6.7
38249999	기타	4.2	3.9	0.3	5,668,790	-8.5
90318090 ¹⁾	기타	2.6	2	0.6	5,342,142	1.1
88024010	자체 중량이 1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45,000 킬로그램 이하인것	3.5	0	3.5	5,162,974	-62.1
3901100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6	5.9	0.1	3,488,742	-0.4
03061729	기타	2.5	0	2.5	3,479,612	262.0

주 1 : APTA 적용세율 하반기(2020.08~) 변동 품목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중국 국무원관세위원회 제2019-50호 (2020년도 관세율표 개정공고)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다만, APTA 적용 품목 중 아래 표[1-5]는 하반기 FTA 적용세율보다 낮거나 같아짐에 유의하여야
(20년 8월 이후) APTA 실행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한다.

【1-5】 APTA 적용세율 하반기(2020.08 이후) 변동품목

중국 HS코드 8단위	HS 8단위 품목명	상반기 세율(%)		하반기 세율(%)	
		APTA	FTA	APTA	FTA
85299042	카메라모듈(특수목적에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5.2	4.8	3.9	4.8
90318090	기타	2.6	2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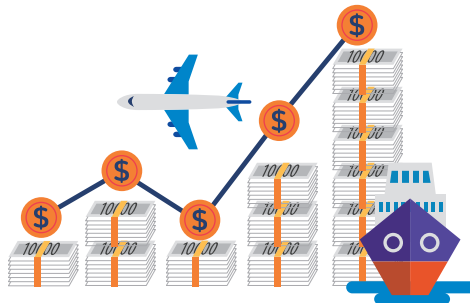
주 :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2020년 기준 우리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세율을 의미함
자료 : 중국 국무원관세위원회 제2019-50호 (2020년도 관세율표 개정공고)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아래 표[1-6]은 표[1-2]에서 나열된 품목 중 APTA와 FTA 적용 세율이 동일한 품목 3개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해당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APTA와 FTA 모두 0% 특혜 세율이 적용 가능하다.

【1-6】 APTA와 FTA세율이 동일한 품목

중국 HS코드 8단위	HS 8단위 품목명	적용 세율(%)		對중 수출금액	
		MFN	APTA=FTA	2019년 (천불)	전년대비 증가율(%)
12019010	노랑 대두	3	0	35,419,128	-7.0
71023900	기타	4	0	7,350,287	-9.1
84111210	터보팬(turbofan) 엔진	1	0	3,458,218	24.1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중국 국무원관세위원회 제2019-50호 (2020년도 관세율표 개정공고)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아래 표[1-7]는 표[1-2]에서 나열된 품목 중 잠정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3개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해당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APT나 FTA를 적용했을 때보다 0.9%p~ 5.4%p의 세율 차이를 보여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1-7】 잠정세율 활용 시 보다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

중국 HS코드 8단위	HS 8단위 품목명	적용 세율(%)			對중 수출금액	
		APT	FTA	잠정	2019년 (천불)	전년대비 증가율(%)
74031111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35 를 초과하는 것	1	0	0	18,508,784	-16.9
39074000	폴리카보네이트	6.1	3.9	3	3,873,638	-14.9
27101220	나프타	5.4	3.6	0	3,817,522	-20.5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중국 국무원관세위원회 제2019-50호 (2020년도 관세율표 개정공고)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아래 표[1-8]은 2019년 對중국 수출금액 1억 달러 이상 품목 중 전년대비 수출금액 증가율이 비교적 큰 품목으로 증가한 물품들에 대하여 APT 세율과 FTA 세율을 비교한 것이다. 해당 품목 중 APT를 활용하는

것이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품목은 HS 71131921, HS 87034043으로 확인되었으며 FTA를 활용하는 것이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품목은 HS 84213940, HS 03061729, HS 08045030으로 확인되었다.

【1-8】 2019년 對중국 수출금액 상위 품목 중 전년대비 급증 품목

중국 HS코드 8단위	HS 8단위 품목명	협정별 적용 세율(%)			對중 수출금액	
		APT	FTA	세율 차이	2019년 (천불)	전년대비 증가율(%)
84213940	배연탈황(排煙脫黃) 기기	3.3	0	3.3	505,873	1,250.1
71131921	다이아몬드가 장착된 것	6.5	미양허	6.5	655,550	279.5
03061729	기타	2.5	0	2.5	3,479,612	262
87034043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 (좌석이 9개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3.5	22.5	9	1,404,968	245.4
08045030	망고스틴(mangosteen)	7.5	6	0.5	794,532	127.4

주 :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2020년 기준 우리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세율을 의미함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중국 국무원관세위원회 제2019-50호 (2020년도 관세율표 개정공고)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아래 표[1-9]는 최근 코로나(COVID)-19 관련 주요 수출물품에 대하여 APTA와 FTA세율 등을 비교한 것이다. 이들 품목 대부분은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전년 동기(1~2월) 수출금액 대비 대부분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코로나 관련 주요 물품(23개 품목) 중 AP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품목은 3개, FTA 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은 17개로 나타났으며, MFN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품목은 3개로 확인 되었다.

【1-9】 저세율 적용 가능 코로나(COVID)-19 관련 품목

2020년 기준 對중국 COVID-19 관련 주요 수출품목									
FTA(17개)					APTA(3개)		MFN(3개)		
1	34013000	7	56031290	13	56039210	1	56031210	1	62101090
2	38089400	8	56031310	14	56039290	2	56031410	2	63079000
3	40151100	9	56031390	15	56039310	3	56039490	3	90049090
4	40151900	10	56031490	16	56039390				
5	56031110	11	56039110	17	56039410				
6	56031190	12	56039190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중국 국무원관세위원회 제2019-50호 (2020년도 관세율표 개정공고)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그 중 부직포로 만들어진 마스크 필터 원단은 HS 5603에 분류되며, 중량 및 재질 등에 따라 6단위

이하의 품목번호와 적용 세율이 상이하므로 꼼꼼한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

【1-10】 COVID-19 관련 품목 對중국 수출세율 비교

중국 HS코드 8단위	코로나-19 관련 주요 HS 10단위 품목명	적용 세율(%)			對중 수출금액	
		MFN	APTA	FTA	2020년 1~2월 (천불)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4013000	손세정제	6.5	-	4	16,018	94
38089400	손소독제	9	-	0	8,502	2,599
40151100	라텍스 장갑(고무로 만든 외과용의 것)	8	-	0	387	0
40151900	라텍스 장갑(외과용 이외의 것)	10	-	7.2	3,448	11,168

56031110	마 스 크 필 터	1㎡당 중량이 25g 이하인 것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5.2	0	651	196
56031190		1㎡당 중량이 25g 이하인 것 : 기타	8	6.8	4		
56031210		1㎡당 중량이 25g 초과 70g 이하인 것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5.2	6	1,321	130
56031290		1㎡당 중량이 25g 초과 70g 이하인 것 : 기타	8	-	0		
56031310		1㎡당 중량이 70g 초과 150g 이하인 것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5.2	0	537	6
56031390		1㎡당 중량이 70g 초과 150 g 이하인 것 : 기타	8	-	0		
56031410		1㎡당 중량이 150g을 초과 하는 것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5.2	6	784	-43
56031490		1㎡당 중량이 150g을 초과 하는 것 : 기타	8	5.2	0		
56039110		1㎡당 중량이 25g 이하인 것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5.2	4	149	-16
56039190		1㎡당 중량이 25g 이하인 것 : 기타	8	6.8	4		
56039210	1㎡당 중량이 25g 초과 70g 이하인 것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5.2	4	2,236	-1	
56039290	1㎡당 중량이 25g 초과 70g 이하인 것 : 기타	8	5.2	0			
56039310	1㎡당 중량이 70g 초과 150g 이하인 것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5.2	4	434	-1	
56039390	1㎡당 중량이 70g 초과 150g 이하인 것 : 기타	8	5.2	0			
56039410	1㎡당 중량이 150g을 초과하는 것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8	5.2	0	2,027	-18	
56039490	1㎡당 중량이 150g을 초과하는 것 : 기타	8	5.2	6			
62101090	부직포로 만든 의료용 방진복	6	-	6.4	8,984	7,613,565	
63079000	마스크필터(특정 모양으로 가공 한 것)	6	-	8.4	194,481	11,298	
90049090	의료용 고글	7	-	8	1,034	7,318	

주 :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2020년 기준 우리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세율을 의미함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중국 국무원관세위원회 제2019-50호 (2020년도 관세율표 개정공고)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2. 對중국 상위 수입 품목의 APTA vs 한-중 FTA

아래 표[2-1]은 2019년 기준 對중국 수입금액 상위 100대 품목(HSK 10단위) 중 APTA 협정 대상 품목을 일부 선별하여 나열한 것이다. 특히 22개 품목 중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우리나라 수입자가

AP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품목은 5개, FTA 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은 13개로 나타났으며, ITA(정보기술협정)으로 MFN 세율이 무관세로 나타나는 품목은 4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1】협정별 저세율 적용 가능 품목 수

APTA (5개)		FTA (13개)				MFN (4개)	
1	6402999000	1	2825902090	8	8414519000	1	8542324030
2	6404199000	2	7326909000	9	2804690000	2	8529909642
3	8504409099	3	8507609000	10	9032899090	3	8529909990
4	8421391000	4	8415900000	11	8111000000	4	8517701023
5	8708940000	5	8414301000	12	9503003919		
		6	8481801090	13	8528722020		
		7	8538909000				

주 1 : APTA협정 적용 대상이 아닌 품목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
 자료 : 관세청 FTA 포털, 수출입무역통계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아래 표[2-2]은 표[2-1]에서 나열된 품목 중 AP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품목 5개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해당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FTA를 적용했을 때보다 0.1%p ~ 3.9%p의 세율 차이를 보여 AP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APTA 활용 시 보다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

우리나라 HSK 10단위	HSK 10단위 품목명	협정별 적용 세율(%)			對중 수입금액	
		APTA	FTA	세율 차이	2019년 (천불)	전년대비 증가율(%)
6402999000	기타	9.1	13.0	3.9	266,355	-4.7
6404199000	기타	9.1	13.0	3.9	228,683	1.6

8504409099	기타	4.0	4.8	0.8	212,477	13.2
8421391000	가정형	3.1	3.2	0.1	177,717	56.2
8708940000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4.0	5.6	1.6	167,471	36.9

자료 : 관세청 FTA 포털, 수출입무역통계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아래 표[2-3]는 표[2-1]에서 나열된 품목 중 F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품목 13개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해당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APTA를 적용했을 때보다 0.2%p~5.6%p의 세율 차이를 보여 F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제2825.90-2090호는 전년대비 수입금액이 무려 107,618%나 급등한 품목으로 FTA를 활용할 경우 0.0%의 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FTA 활용 시 보다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

우리나라 HSK 10단위	HSK 10단위 품목명	협정별 적용 세율(%)			對중 수입금액	
		APTA	FTA	세율 차이	2019년 (천불)	전년대비 증가율(%)
2825902090	기타	2.8	0.0	2.8	911,389	107,618.4
7326909000	기타	5.6	0.0	5.6	645,771	6.3
8507609000	기타	5.6	0.0	5.6	438,273	-17.5
8415900000	부분품	4.0	0.0	4.0	245,718	86.5
841430100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6.4	0.0	6.4	234,061	11.7
8481801090	기타	4.0	3.2	0.8	208,751	1.8
8538909000	기타	5.6	3.2	2.4	198,590	-21.1
8414519000	기타	5.6	0.0	5.6	193,864	-5.1
2804690000	기타	2.5	2.0	0.5	189,644	-29.2
9032899090	기타	6.0	3.2	2.8	184,908	-20.4
81110000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1.0	0.8	0.2	181,950	-17.4
9503003919	기타	5.6	4.8	0.8	171,469	5.1
8528722020	디지털의 것	4.0	3.2	0.8	164,179	-22.9

자료 : 관세청 FTA 포털, 수출입무역통계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아래 표[2-4]는 표[2-1]에서 나열된 품목 중 MFN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품목 4개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해당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에는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라 APTA 또는 FTA 협정을 활용하지 않아도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다.

【2-4】 MFN 활용 시 보다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

우리나라 HSK 10단위	HSK 10단위 품목명	적용 세율(%)	對중 수입금액	
		MFN(ITA) ¹⁾	2019년 (천불)	전년대비 증가율(%)
8542324030	제851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1,812,790	20.4
8529909642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	0	1,224,061	875.6
8529909990	기타	0	653,125	202.2
8517701023	디스플레이 모듈	0	232,328	-27.2

주 1 :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른 세율 적용(0%)

자료 : 관세청 FTA 포털, 수출입무역통계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아래 표[2-5]는 2019년 對중국 수입금액 1억 달러 이상 품목 중 전년대비 수입금액 증가율이 비교적 큰 품목으로 증가한 물품들에 대하여 APTA와 FTA 세율을 비교한 것이다. 해당 품목들은 FTA를

활용하는 것이 세율 측면에서는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제8418.99-1000호의 경우 FTA를 활용할 경우 6%p의 세율차이를 나타냈다.

【2-5】 2019년 對중국 수입금액 상위 품목 중 전년대비 급증 품목

우리나라 HSK 10단위	HSK 10단위 품목명	협정별 적용 세율(%)			對중 수입금액	
		APTA	FTA	세율 차이	2019년 (천불)	전년대비 증가율(%)
8479909070	선박용·어업 기기의 것	4.0	3.2	0.8	266,355	355.7
8418101030	용량이 400리터를 초과하는 것	5.4	4.8	0.6	228,683	331.5
8529909643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방식용	4.8	3.2	1.6	212,477	223.3
8418991000	가정형 냉장고의 것	6.0	0.0	6.0	177,717	136.5
8508111000	로봇형	5.6	3.2	2.4	167,471	104.4

자료 : 관세청 FTA 포털, 수출입무역통계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아래 표[2-6]은 최근 코로나(COVID-19) 관련 주요 물품에 대하여 APTA와 FTA세율을 비교한 것이다. 이들 품목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FTA를 활용하는 것이 수입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동기(1~2월) 수입금액이 급증한 침투·도포·피복·적층한 부직포의 경우 FTA를 활용하면 세율이 3.2%로 APTA를 활용하는 것보다 낮다.



[2-6] COVID-19 관련 품목 對중국 수입세율 비교

우리나라 HSK 10단위	코로나-19 관련 주요 HS 10단위 품목명		적용 세율(%)			對중 수입금액	
			MFN	APTA ¹⁾	FTA	2020년 1~2월 (천불)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808940000	손소독제		6.5	-	0.0	252	-17.0
3401300000	손세정제		6.5	-	2.6	1,789	179.1
5603121000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부직포 ²⁾	1㎡당 중량이 25g 초과 70g 이하인 것	8	5.6	3.2	785	44.9
5603131000		1㎡당 중량이 70g 초과 150g 이하인 것	8	5.6	3.2	1,728	232.4
5603141000		1㎡당 중량이 150g을 초과하는 것	8	5.6	3.2	235	223.7
6307909000 ³⁾	방직용 섬유재료인 부직포로 만든 방진용마스크		30	0.0 (방글라데시, 라오스)	4.0	20,788	-10.4
	방직용 섬유재료인 부직포로 만든 마스크필터(특정모양으로 가공한 것)						
6210102000	의료용방진복(부직포로 만든 것)		13	0.0 (방글라데시, 라오스)	5.2	2,465	-7.3
4015110000	라텍스 장갑(고무로 만든 외과용의 것)		8	5.6	0.0	404	-9.0
4015190000	라텍스 장갑(외과용 이외의 것)		8	5.6	4.8	553	-14.5
9004909010	의료용 고글(귀금속을 사용한 것)		8	-	0.0	-	0.0
9004909090	의료용 고글		8	-	3.2	962	-4.8

주 1 : APTA 세율 적용은 ()안의 국가에만 해당. ()없으면 APTA 당사국 모두가 해당
 주 2 : 침투·도포·피복·적층한 부직포의 경우 1제곱미터당 중량에 따라 품목번호가 상이하
 주 3 : 해당 품목 중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접착성 원형 폴리싱 패드의 경우 MFN 0% 적용
 자료 : 관세청 FTA 포털, 수출입무역통계 자료를 통해 저자 재작성



황정훈

국제원산지정보원 정보분석팀
전문연구원

신남방국가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베트남*

2017년 7월 19일 우리정부의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신남방정책 추진』에 따라 기발효 협정인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 CEPA, 한-싱가포르 FTA, 한-베트남 FTA와 현재 발효 예정인 RCEP, 한-인니 CEPA, 한-필리핀 FTA 등 여러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여 신남방지역 국가와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FTA 교역량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FTA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수출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이다. 각 협정별 FTA 양허품목 및 원산지결정기준은 HS코드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정확한 품목분류는 FTA 활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동일한 물품이라도 국가마다 관습·관행에 따라 상이한 품목분류를 할 수 있어 HS코드 결정에 우리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수입국 과세당국이 품목분류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한다면 기업의 품목분류 애로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보고서에 기고한 내용은 『품목분류 애로해결을 위한 상대국의 사전심사제도 조사(국제원산지정보원, 2019)』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힘. 또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FTA포탈 및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람



2017년 2월 22일 WTO 무역원활화협정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무역절차의 간소화』의 일환으로 각 회원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무역원활화 협정이 제시한 기준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도입을 하여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국내법에 그 내용을 시행하고 있어 별도의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요구되지 않지만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운용하였던 국가들은 각국의 이행시기에 맞추어 제·개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편에서는 신남방국가 중 베트남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수출입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베트남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개요

베트남은 WTO 가입국으로서 무역원활화협정 조항 중 품목분류 사전심사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현재 베트남은 2012년 국회에 의해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사전심사 규정이 최초 도입되었으며 현재 2014년 6월 23일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현재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가 운용 되고 있다. 그 이후 시행령 및 고시에 의거 세부 절차 등이 개정되었지만 향후 WTO 무역원활화 협정 시행시기인 2022년 12월 31일 까지 변경 되거나 변경될 예정에 있어 지속적인 개정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베트남 WTO 무역원활화 협정 제1절 제3조 사전심사 조항 시행일¹⁾】

조항	주요내용	시행 시기
1항	사전심사 결정 및 서면통보	2022년 12월 31일
2항	결정거부 사유	2022년 12월 31일
2항(가)	정부기관 또는 법원에 계류	2022년 12월 31일
2항(나)	다른 항소기관에 결정이 내려진 경우	2022년 12월 31일
3항	결정은 근거되는 법 등에 변경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동안 유효	2022년 12월 31일
4항	결정을 취소, 변경 또는 무효화 하는 경우 서면통보	2022년 12월 31일
5항	결정의 효력의 범위(신청인, 해당 회원국)	2022년 12월 31일
6항	회원국의 공표사항	2022년 12월 31일
6항(가)	사전심사 형식 및 신청 요건	2022년 12월 31일
6항(나)	사전심사 결정기간	2022년 12월 31일
6항(다)	사전심사 유효기한	2022년 12월 31일
7항	사전심사 결정의 재심	2022년 12월 31일
8항	결정의 공개	2022년 12월 31일
9항	정의 및 범위	2022년 12월 31일
9항(가)	사전심사 결정 적용 대상	2022년 12월 31일
9항(가) 1)	상품의 품목분류	2022년 12월 31일
9항(가) 2)	상품의 원산지	2022년 12월 31일

1)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DATABASE

조항	주요내용	시행 시기
9항(나)	사전 심사 결정 적용 대상 확대	2022년 12월 31일
9항(나) 1)	관세평가	2022년 12월 31일
9항(나) 2)	경감 또는 면제	2022년 12월 31일
9항(나) 3)	할당 및 쿼터	2022년 12월 31일
9항(나) 4)	기타 사항	2022년 12월 31일
9항(다)	신청인의 정의	2022년 12월 31일
9항(라)	법률 대리인의 신청 가능	2022년 12월 31일

2. 베트남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법체계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는 1981년 12월 31일 관세법에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를 도입하면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한정하여 품목분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신청 대상을 확대하였다.

현재 관세법에서는 수출입자, 제조자 및 관세사 등으로 신청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신청서 미비 등의 통지, 품목분류 변경 통지 등 신청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규정을 보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개정 연혁】

198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 최초 도입 - 신청 및 제출서류, 심사, 수수료 등의 절차사항 규정 - 신청자는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로 규정 - 사전회시서의 유효기한은 1년
198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의 범위를 물품을 수출입하는 자로 확대 - 신청서 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생략이 가능하도록 개정
199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회시 결정사례 공개하도록 고시 신설
199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의 범위가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으로 확대
199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당 심사 수수료가 3만원으로 규정됨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로 명칭이 변경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의 범위는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자도 포함

2015년	-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됨
2016년	-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여부 규정 - 사전심사 심사 기간을 30일로 규정 - 품목번호 6단위 회신제도 도입(6단위만 결정) · FTA 확대 등으로 원산지 확인을 위한 품목분류 수요 증가 · 심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 10단위 품목번호 결정이 아닌 6단위로 결정

베트남은 우리나라 법구조와 유사하게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1일 사전심사 규정이 최초 도입되어 현재 2015년 1월 21일에 공포된 관세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재무부 관세총국 공무원인 「개정 세관관리법 규정에 따른 품목번호, 가격의 사전결정 및 납세 기한에 관한 지침 공문(제8356/BTC-TCHQ호)」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어 수출입 물품의 품목번호 사전확정에 대한 제출 서류, 확정 절차, 결정문서의 효력, 결정의 이의제기 등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4년 6월 23일에 공포된 관세법 제28조(54/2014/QH13)에서는 재무부 지침공문에 따라 관세법에 품목번호 뿐만 아니라, 원산지,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심사 규정을 신설 하여 2015년 1월 1일에 시행 되어 현재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1월 21일 공포된 「세관절차, 세관검사·감독·통제에 관한 관세법 세부규정 및 시행조치에 관한 의정²⁾(제08/2015/ND-CP호와 추후 개정된 제59/2018/ND-CP호)」 제23조 및 제24조와 2015년 3월 25일에 공포된 「세관절차, 세관검사·감독, 수출입

물품에 대한 수출입세 및 세금관리에 관한 통자³⁾(제38/2015/TT-BTC호)」 제7조에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 2018년 4월 20일에 최종 개정 되었다.

1) 베트남 관세법상(54/2014/QH13) 사전심사 규정

베트남 관세법(54/2014/QH13) 제28조 품목번호, 원산지, 관세가격의 사전심사에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심사의 종류(제1항), 심사결과 통보(제2항),

재심사 요청(제3항), 법적효력(제4항), 정부의 기한·절차 관련 세부규정(제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 관세법(54/2014/QH13) 제28조】

제1항	<p>[신청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은 수출입 예정인 물품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① 품목분류, ② 원산지, ③ 과세가격으로 규정 - 신청 시 물품의 정보, 관련 증서, 견본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
제2항	<p>[서면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위하여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사전심사 신청시 심사를 위한 근거 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거나 보완을 요구 하도록 규정
제3항	<p>[재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검토 요청의 권리가 있음, 이때 세관은 규정된 기간 내에 재검토하여 신청인에게 답변할 책임이 있음
제4항	<p>[결과의 법적효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심사 결정은 신청인이 제공한 물품의 정보, 관련 증서, 견본과 동일한 물품이 실제로 수출입 될 때 세관절차를 진행할 때 법적효력이 발생
제5항	<p>[세부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의 사전심사의 조건·절차·기한·사전확정결과 재검토 기한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다는 규정

2) 의정(nghị định, 議定) 이란, 정부 총리가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공포하는 시행령을 말한다.

3) 통자(thông tư, 通諮)란, 각부 장관, 부급기관장, 정부직속기관장이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공포하는 시행규칙, 시행세칙을 말한다.

2) 베트남 세관절차, 세관검사·감독·통제에 관한 관세법 세부규정 및 시행 조치에 관한 의정(08/2015/NĐ-CP, 59/2018/NĐ-CP)-시행령

2015년 1월 1일 관세법 시행일에 맞추어 세관절차, 세관검사·감독·통제에 관한 관세법 세부규정 및 시행조치에 관한 의정(08/2015/NĐ-CP)을 2015년 1월 21일 공포하였으며 2018년 4월 20일 최종 개정되었다.(59/2018/NĐ-CP)

제59/2018/NĐ-CP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으며 제23조에는 신청인의 행위, 제24조에는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24조는 사전심사의 조건(제1항), 사전심사 신청인의 책임(제2항), 관세총국의 책임(제3항), 결정문의 효력(제4항), 사전심사 결정의 이의제기(제5항), 사전심사 결과의 효력 유지(제6항), 재무부 사전심사 처리 절차 규정(제7항)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인 절차는 하위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관세법 세부규정 및 시행조치에 관한 의정 제23조】

제23조

-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의 사전심사는 신고인의 요청에 의해 진행됨

【관세법 세부규정 및 시행조치에 관한 의정 제24조】

제1항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의 사전심사의 조건] - 개인, 단체는 세관에 수출입 예정인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시 심상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 증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함
제2항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요청 신청인의 책임] - 신청물품을 수출입 하기 전 60일 내에 사전심사 요청을 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세관의 요청에 따라 신청내용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세관과 대화에 참여 하여야 함 - 신청함 품목과 관련된 변경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총국에 서면으로 내용, 사유, 변경일을 명기하여 통보하여야 함
제3항	[관세총국의 책임] - 관세총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근무일 이내 국가관리 기관에 의한 품목분류 지침서가 이미 존재하는 품목, 국가관리 기관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품목, 사전심사 조건 및 서류를 구비 못하는 경우 서면으로 사전심사를 거부함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총국의 총국장은 통상 구비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또는 필요한 경우 60일의 기한 내에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 - 사전심사 결과는 문서는 개인 또는 단체에 송부되고 세관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갱신되며 관세총국의 웹사이트상에 공개됨
제4항	<p>[법적효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결과로 인한 통보 문서는 세관 통관 절차 진행 할 때 세관 신고를 위한 근거가 됨 - 개인, 단체가 관세총국 총국당의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나 통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고가격에 따른 세금 납부를 이행하거나 통관을 진행하기 위한 보증을 이행하여야 하며 통관 후 검사를 진행함
제5항	<p>[재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는 관세총국에 서면으로 검토를 요청 - 신청인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10일 또는 필요한 경우 30일의 근무일의 기한 내에 관세총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회신
제6항	<p>[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결과의 효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결과 통보문서는 관세총국의 총국장이 공포를 위한 서명을 한 날로부터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한을 정하여 효력을 유지함 - 실제 수출입 물품 또는 서류가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 물품 또는 서류와 다른 경우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 통보문서는 적용 효력을 가지지 않음 -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한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서류의 부정확성 또는 불성실성이 발견 되는 경우 관세총국의 총 국장은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결과 통보문서를 취소하는 문서를 공포함 -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결과 통보 문서의 공포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이 개정, 보완, 교체 되는 경우 사전심사 결과 통보문서의 효력은 종료 됨
제7항	<p>[세부절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부는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사전심사 서류 및 국가관리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

3) 베트남 세관절차, 세관검사·감독, 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세 및 세금 관리에 관한 통자(제38/2015/TT-BTC호)-시행규칙

2015년 1월 21일 관세법 시행령 공포에 맞추어 2015년 3월 25일에 「세관절차, 세관검사·감독, 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세 및 세금관리에 관한 통자(제38/2015/TT-BTC호)」를 공포하고 제7조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가격 사전확정 서류」에 품목 분류 사전심사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통자라고 함은 베트남 각 부서의 장관, 부급 기관장, 정부직속 기관장이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시행규칙, 시행 세칙을 말한다.

【세관절차, 세관검사·감독, 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세 및 세금관리에 관한 통자 제 7조】

제1항	<p>[품목번호의 사전심사 서류 및 물품의 견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심사 신청 시 이 통자에 첨부된 서식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서, 물품의 기술자료(성분분석서, 물품 이미지, 카달로그) 1부, 수출입 예정 물품의 견본(있는 경우)를 제출 - 세관기관은 물품에 대한 분류 및 분석 그리고 품질검사를 위한 분석, 식품안전검사에 관한 재무부 지침에 따라 진행하는 수출입 예정인 물품의 견본을 처리함
제2항	<p>[관세총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거부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사전심사 구비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 국가관리 기관의 처리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건에 대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에 기재된 물품이 관할 국가기관의 조사, 감사, 검사 중에 해당됨을 통보하는 경우 b.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에 기재된 물품이 관세총국에 접수되어 처리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국가관리 기관의 품목분류에 관한 지침 문서가 이미 존재하는 품목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서에 기재된 물품



3. 베트남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절차

사전심사의 종류	① 품목분류, ② 원산지, ③ 과세가격
신청인	수출입 예정인 물품의 세관신고인
신청시기	수출입 예정 90일전
처리기간	일반적인 경우 30일,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60일
처리기관	관세총국(관세청)
유효기한	3년
신청 수수료	없음
신청기관	성, 도시 세관에 접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은 관세법 제28조 1항에 규정된 것처럼 수출입 예정인 물품의 세관신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1장 [일반 정의] 제4조 [용어의 정의] 제14항을 보면 물품 「세관신고인이라 물품의 소유자, 차량의 소유자, 차량의 운행자 그리고

물품의 소유자와 차량의 소유자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관세사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을 하려는 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요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사전심사와 관련 된 필요한 정보, 증서, 서류를 제공하여야하여야 하며 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01/XDTMS/2013 양식에 따라 작성된 사전심사 요청서 원본 1부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외국물품 구매계약서 사본 1부
- 구성요소, 유틸리티, 용도 등 사전심사 대상 품목의 세부사항을 기술한 기술문서 1부
- 품목분류 사전심사 대상 품목의 카다로그 또는 이미지 사본 1부
- 관세총국의 요청에 따라 물품의 샘플이 요구되는 경우 샘플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에 관한 서류 목록 원본 1부

신청시기는 세관통관 절차 진행 예정지인 성(省)⁵⁾, 도시 세관국에 늦어도 출하물품을 수출입 하기 전 90일의 기한 내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내용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완하여 세관국 또는 관세총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5) 베트남의 행정 구역은 3단계로 성(베트남어 : Tỉnh/ 省, 제1급 행정구), 현(베트남어 : huyện/ 縣, 제2급 행정구), 사(베트남어 : xã/ 社, 제3급 행정구)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심사 유효기한은 3년이며, 유효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물품의 정보, 자료, 견본 및 사전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 변경이 없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의 연장을 관세총국에 요청 할 수 있다.

【베트남 사전심사 신청양식(제01/XĐTMS/TXNK호)】

A. 품목분류를 사전심사 신청을 하는 개인, 단체

- 1. 성명
- 2. 주소
- 3. 전화번호
- 4. 팩스번호
- 5. 세무코드

B.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

- 6. 상업명칭
- 7. 구조, 용도에 따른 명칭
- 8. 물품 기호, 번호, 종류
- 9. 생산자

C.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의 세부 정보

- 10. 성분, 구조, 화학식
- 11. 운영체제, 사용방식
- 12. 중량별 함량
- 13. 기술사양
- 14. 생산과정
- 15. 설계에 따른 용도
- 16. 물품에 관한 기타 정보

a) 통자 제38/2018/TT-BTC호의 제1조 제3항제4호제b목 규정에 따라 국가관리 기관의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있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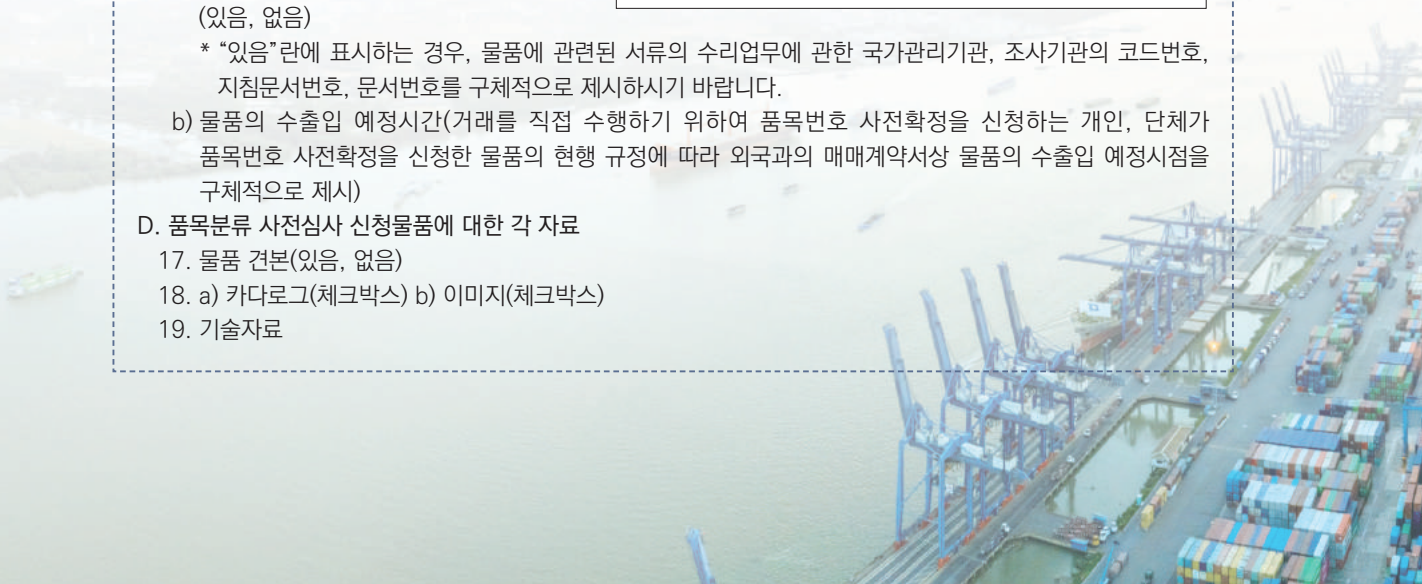
* “있음”란에 표시하는 경우, 물품에 관련된 서류의 수리업무에 관한 국가관리기관, 조사기관의 코드번호, 지침문서번호, 문서번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b) 물품의 수출입 예정시간(거래를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품목번호 사전확정을 신청하는 개인, 단체가 품목번호 사전확정을 신청한 물품의 현행 규정에 따라 외국과의 매매계약서상 물품의 수출입 예정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D.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각 자료

- 17. 물품 견본(있음, 없음)
- 18. a) 카타로그(체크박스) b) 이미지(체크박스)
- 19. 기술자료

Mẫu số 01/XĐTMS/TXNK	
TÊN TỔ CHỨC, CÁ NHÂN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Số:...../....., ngày tháng năm
ĐƠN ĐỀ NGHỊ Về việc xác định trước mã số Kính gửi:.....	
A. Tổ chức, cá nhân đề nghị xác định trước mã số	
1. Tên:	
2. Địa chỉ:	
3. Điện thoại:	4. Fax:
5. Mã số thuế:	
B. Hàng hóa đề nghị xác định trước mã số	
6. Tên thương mại:	
7. Tên gọi theo cấu tạo, công dụng:	
8. Ký, mã hiệu, chủng loại:	9. Nhà sản xuất:
C. Mô tả chi tiết hàng hóa đề nghị xác định trước mã số	
10. Thành phần, cấu tạo, công thức hóa học:	
11. Cơ chế hoạt động, cách thức sử dụng:	
12. Hàm lượng tính trên trọng lượng:	
13. Thông số kỹ thuật:	
14. Quy trình sản xuất:	
15. Công dụng theo thiết kế:	
16. Các thông tin khác về hàng hóa:	
a) Trường hợp đang chờ kết quả xử lý của cơ quan quản lý nhà nước theo quy định tại tiết b điểm 4 Khoản 3 Điều 1 Thông tư số 38/2018/TT-BTC	
Có <input type="checkbox"/> Không <input type="checkbox"/>	
Trường hợp đánh dấu vào ô "có", đề nghị nêu cụ thể mã số, số văn bản hướng dẫn, số văn bản của cơ quan quản lý nhà nước, cơ quan điều tra về việc đang thụ lý hồ sơ liên quan đến hàng hóa.	
b) Thời gian dự kiến xuất khẩu, nhập khẩu hàng hóa (nếu cụ thể thời điểm dự kiến xuất khẩu nhập khẩu hàng hóa trên hợp đồng mua bán với nước ngoài theo quy định hiện hành của hàng hóa đề nghị xác định trước mã số do tổ chức, cá nhân có đơn đề nghị xác định trước mã số trực tiếp thực hiện giao dịch)	
D. Các tài liệu có liên quan đến hàng hóa đề nghị xác định trước mã số	
17. Mẫu hàng hóa:	Có <input type="checkbox"/> Không <input type="checkbox"/>
18. a) Catalogued	b) Hình ảnh <input type="checkbox"/>



- 20. 성분, 구조, 물리·화학적 특성, 용도의 확정을 위한 기계, 기술설비의 사용이 필요한 품목번호 사전확정 신청물품의 견본에 대한 감정증서(있음, 없음)
- 21. 관련자료, 자료의 종류 명시(있는 경우에 한함), (있음, 없음)
- D. 사전심사 신청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개인, 단체의 의견
- 22. (베트남 수출입물품 목록에 따른) 신청 품목번호
- 23. 신청근거
- E. 기타의 내용(있는 경우에 한함)

4. 시사점

FTA 활용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품목 분류는 무역원활화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이 기존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협정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거나 새로 도입하는 등 관세행정의 개편을 시행 중이며, 특히 신남방국가의 경우 제도의 재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베트남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용 애로사례를 파악해본 결과 ① 최신 법령 파악, ② 국가별 품목분류 사례 열람 순으로 애로가 발생 하였다.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신남방국가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관련 법규정은 준비시기가 아닌 신청시기에 맞추어 적용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여야 하며, 서류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 양식에서 규정된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베트남의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례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어 우리 수출입 기업들은 공개된 동종 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어떠한 판단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이 되었는지 선행 학습을 통해 품목분류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소영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부연구위원



이주연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말레이시아의 신규 통상통관환경 및 FTA 활용*

말레이시아는 인도양과 태평양,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교차로에 위치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생산기지로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젊은 시장인구로 탄탄한 구매력과 빠른 경제성장률까지 갖추면서 매력적인 수출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통상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은 무역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무역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업의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한 수출동력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신(新)남방정책을 기조로 특히 신남방 핵심국가인 말레이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 불고 있는 한류바람과 한-말 FTA 및 RCEP 추진은 우리기업의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한-말 수교 60주년과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해인만큼 본문에서는 말레이시아의 무역현황과 신규 통상통관환경 및 FTA 활용 정보를 제공하여 말레이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본 보고서에 기고한 내용은 『신남방 주요 수출국의 통관·통상환경 및 FTA활용방안, 말레이시아편(국제원산지정보원, 2019)』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힘

1. 한-말레이시아 FTA 관련 현황

1) 한-아세안 개별국 간 양자 FTA 체결 현황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베트남과 개별 FTA를 추가적으로 체결 (2015)하였으며, 현재는 신남방국을 대표하는 주요

국가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과 실질 협력을 위한 양자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협정	상태	의의
한-베트남 FTA	발효	우리나라의 제5위 투자대상국 (2019년 기준)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중	
한-필리핀 FTA	협상중	

2)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 현황

한-말레이시아 FTA는 지난 2019년 3월 개최된 한-말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말 FTA 추진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하여 '19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 일정】

년 월	내 용
2019. 09	한-말레이시아 FTA 제3차 협상 개최(서울)
2019. 08	한-말레이시아 FTA 제2차 협상 개최(서울)
2019. 07	한-말레이시아 FTA 제1차 협상 개최(쿠알라룸푸르)
2019. 06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시

자료 : 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양국은 금년 내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말 FTA 체결 시 우리기업은 말레이시아로의 시장 진출 및

확대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말레이시아 무역현황

1) 말레이시아의 연도별 수출입 동향

최근 말레이시아 수출입 동향을 살펴본 결과, 말레이시아 수출입액은 2015년 이후 모두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는 상승세를 다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말레이시아 교역량의 감소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말레이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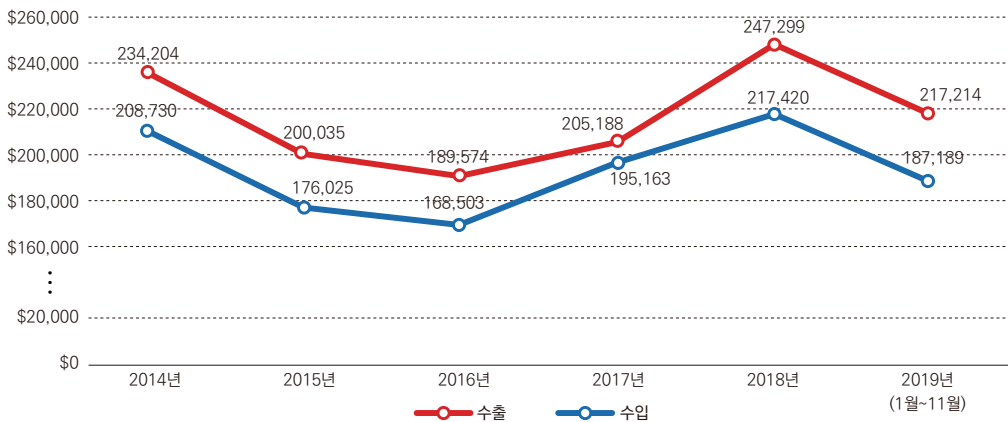
경기 침체 및 화폐(MYR)가치 절하로 인한 결과로 사료되며, 2017년 이후부터는 국제유가 상승세와 말레이시아 경기 및 화폐가치 회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의 연도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불, %)

구분	수출		수입		총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수지
2019년 11월	217,214	-4.4	187,189	-6.4	404,403	30,025
2018년	247,299	20.5	217,420	11.4	464,719	29,879
2017년	205,188	8.2	195,163	15.8	400,351	10,025
2016년	189,574	-5.2	168,503	-4.3	358,077	21,071
2015년	200,035	-14.6	176,025	-15.7	376,060	24,011
2014년	234,204	2.1	208,730	0.9	442,934	25,474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

2018년~2019년 11월 기준, 말레이시아의 총 수출액은 약 USD 4,645억불, 총 수입액은 약 USD 4,046억불로 나타났다. 이 중 말레이시아의 상위 수출국은 중국·싱가포르·미국·홍콩·일본 등이었으며, 상위 수입국은 중국·싱가포르·미국·일본·대만 등으로 말레이시아는 주로 거대 경제권이나 지리적

으로 인접한 국가와 교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對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 수출액은 약 157억불(10위), 수입액은 약 182억불(7위)로 나타나 한국은 수출입 모두에서 말레이시아의 제10대 교역국에 속하는 주요 수출입국으로 확인되었다.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불)

수 출						수 입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비중
		2018년	2019년	합계				2018년	2019년	합계	
	전체	247,299	217,214	464,513	100%		전체	217,420	187,189	404,609	100%
1	중국	34,381	30,389	64,770	14%	1	중국	43,331	38,523	81,854	20%
2	싱가포르	34,447	30,261	64,708	14%	2	싱가포르	25,489	19,870	45,359	11%
3	미국	22,527	20,942	43,469	9%	3	미국	16,085	15,185	31,270	8%
4	홍콩	18,477	14,781	33,258	7%	4	일본	15,744	13,846	29,590	7%
5	일본	17,127	14,476	31,603	7%	5	대만	15,732	12,616	28,348	7%
6	태국	14,073	12,489	26,562	6%	6	태국	12,042	9,835	21,877	5%
7	인도	9,004	8,412	17,416	4%	7	인도네시아	9,972	8,537	18,509	5%
8	대만	8,042	8,110	16,152	3%	8	한국	9,642	8,608	18,250	5%
9	베트남	8,479	7,601	16,080	3%	9	독일	6,539	5,939	12,478	3%
10	한국	8,334	7,366	15,700	3%	10	인도	6,550	5,271	11,821	3%

주 : 2019년은 1월~11월 자료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말레이시아의 품목별 수출 동향

말레이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여 동남아의 주요 산유국이자 아태지역의 주요한 LNG 공급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남방시장의

테스트베드(Test-bed)이자 중동시장의 게이트웨이(Gateway)로서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목을 확인한 결과,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시장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출품목은 주로 반도체·컴퓨터·통신기기 등과 같은 전자기기류와

원유·석유제품·식물성기름 등 천연자원 관련 제품이었으며, HS 6단위 기준으로는 HS 854231, 854239(전자집적회로), HS 271019(기타 석유·역청유와 조제품), HS 271111(천연가스), HS 270900(석유와 역청유) 등이다.

【말레이시아의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 백만불)

수출						
순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금액		2017-2018 증감률
				2017년	2018년	
전체				205,188	247,299	20.5%
1	반도체	854231	전자집적회로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17,802	26,329	47.9%
2	석유제품	271019	기타 석유와 역청유 및 조제품(원유 제외)	8,452	12,455	47.4%
3	반도체	854239	전자집적회로 - 기타(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증폭기 제외)	6,992	10,831	54.9%
4	천연가스	271111	천연가스(액화)	9,410	9,925	5.5%
5	원유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	6,177	9,434	52.7%
6	식물성물질	151190	팜유의 분획물	7,677	6,734	-12.3%
7	반도체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LED)	3,936	4,512	14.6%
8	의류	401519	고무제 장갑, 병어리 장갑(외과용 제외)	3,243	4,010	23.7%
9	컴퓨터	847180	사운드카드 등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3,078	3,944	28.1%
10	반도체	854232	전자집적회로 - 메모리	2,297	3,864	68.2%
11	석유제품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3,374	3,783	12.1%
12	컴퓨터	847170	기억장치	3,482	3,499	0.5%
13	컴퓨터	852351	반도체 매체 - 솔리드 스테이트(solid - 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2,610	3,162	21.1%
14	반도체	854290	전자집적회로 - 부분품	2,950	3,028	02.7%
15	컴퓨터	847330	제8471호(자동자료처리기계)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281	2,563	12.4%
16	유선통신기기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수신용 등 기기	2,431	2,479	2.0%

17	사무기기	844399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 등의 부분품과 부속품	2,441	2,459	0.7%
18	식물성물질	151110	팜유(조유)	1,767 1,767	1,953	10.6%
19	반도체	854233	전자집적회로 - 증폭기	337	1,707	406.3%
20	식물성물질	151620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1,887	1,655	-12.3%

주 : 2018년 수출금액 기준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TI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말레이시아의 품목별 수입 동향

2018년 수입금액 기준,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입품목은 전자기기류와 기계류·석유조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HS 6단위 기준으로는 HS 854231, 854239, 854290(전자집적회로 및 부분품), HS 271019(기타 석유·역청유와 조제품),

HS 271012(경질유와 조제품) 등이다. 이들은 주로 제조업에 사용되는 물품들로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전자 및 석유화학 관련 글로벌 제조기업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다량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말레이시아의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 백만불)

수 입						
순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금액		2017-2018 증감률
				2017년	2018년	
전 체				195,163	217,420	11.4%
1	반도체	854231	전자집적회로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12,319	12,358	0.3%
2	석유제품	271019	기타 석유와 역청유 및 조제품 (원유 제외)	9,768	11,620	19.0%
3	반도체	854239	전자집적회로 - 기타(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증폭기 제외)	6,667	10,117	51.7%
4	석유제품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6,934	8,587	23.8%
5	반도체	854290	전자집적회로 - 부분품	8,508	7,862	-7.6%
6	원유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	3,953	5,712	44.5%
7	반도체	854232	전자집적회로 - 메모리	3,423	4,189	22.4%

8	석탄	270119	그 밖의 석탄	2,464	2,936	19.2%
9	무선통신기기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355	2,666	13.2%
10	항공기 및 부품	880240	자체중량 15,000kg 초과와 비행기와 기타 항공기	1,820	2,247	23.4%
11	컴퓨터	847330	제8471호(자동자료처리기계)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975	2,246	13.8%
12	기구부품	853400	인쇄회로	1,944	2,216	14.0%
13	동제품	740311	정제한 구리 - 음극과 음극의 형재	2,131	2,022	-5.1%
14	금은 및 백금	710812	가공하지 않은 모양의 금	2,063	1,882	-8.8%
15	항공기 및 부품	880330	비행기·헬리콥터의 기타 부분품	1,459	1,601	9.7%
16	자동차	870323	승용자동차	1,128	1,473	30.6%
17	컴퓨터	847170	기억장치	1,144	1,345	17.5%
18	알루미늄	7601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809	1,296	60.2%
19	반도체	854190	반도체 디바이스의 부분품	1,410	1,240	-12.0%
20	농약 및 의약품	300490	기타 의약품	925	1,111	20.1%

주 : 2018년 수입금액 기준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TI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교역 현황

1)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수출입 동향

최근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교역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 수출입 모두에서 최고액을 달성하며 한-말 최대 교역액(약 192억불)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8년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수출은 전년대비 11.8% 증가한 89억불 정도인 반면, 수입은 전년대비 17.1% 증가한 102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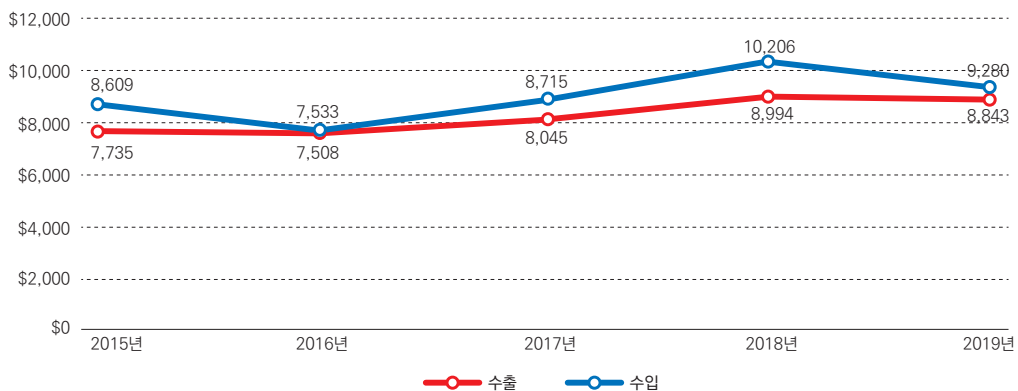
가량으로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아 무역수지는 약 12억불 가량 적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한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신흥시장 진출 및 글로벌 생산거점 구축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진출을 활발히 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불, %)

구분	수출		수입		총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수지
2019년	8,843	-1.7	9,280	-9.1	18,123	-437
2018년	8,994	11.8	10,206	17.1	19,200	-1,212
2017년	8,045	6.8	8,715	16.1	16,760	-670
2016년	7,533	-2.6	7,508	-12.8	15,041	25
2015년	7,735	2.0	8,609	-22.4	16,344	-874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출 동향

2018년 수출금액 기준,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수출 상위 품목은 석유제품·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반도체 제품·건설광산기계류 등으로 나타났다. HS 6단위 기준으로는 HS 271012(경질석유와 조제품), HS 271019(기타 석유·역청유와 조제품), HS 890610(군함), HS 854232(메모리), HS

842952(채굴용·굴착용·다지기용 기계) 등이다. 이 중 특히 HS 271012(경질석유와 조제품)와 HS 854231(프로세서와 컨트롤러)의 경우, 수출량이 전년대비 각각 155%, 131%씩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 백만불)

순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수출 금액		2017-2018 증감률
				2017년	2018년	
전체				8,404	8,833	5%
1	석유제품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304	776	155%
2	석유제품	271019	기타 석유와 역청유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원유 제외)	638	529	-17%
3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890610	군함	727	342	-53%
4	반도체	854232	메모리	115	227	97%
5	건설광산기계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채굴용·굴착용·다지기용 기계	89	143	61%
6	편직물	60041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144	131	-9%
7	합성고무	400219	기타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152	117	-23%
8	무선통신기기	852990	기타 전기기기 부분품	118	117	-1%
9	합성수지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89	110	24%
10	합성고무	400220	부타디엔 고무(BR)	135	106	-21%
11	반도체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45	104	131%
12	기타석유 화학제품	292910	이소시아네이트	96	103	7%
13	아연제품	790111	합금하지 않은 아연(아연 99.99%이상)	95	92	-3%

14	철강판	72083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cm 이상, 코일모양, 열간압연, 두께 3mm 미만)	168	91	-46%
15	편직물	600622	면으로 만든 기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염색한 것)	100	87	-13%
16	합성수지	3903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67	85	27%
17	정밀화학원료	280300	탄소(카본블랙 및 탄소 물품 포함)	57	77	35%
18	편직물	600632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염색한 것)	89	73	-18%
19	합성수지	390769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54	66	22%
20	철강판	720917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cm 이상, 코일모양, 냉간압연, 두께 0.5~1mm)	101	66	-35%

주 : 2018년 수출금액 기준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TI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입 동향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수입 상위 품목은 광물이나 식물성 기름과 같은 천연자원류 등으로 나타났다. HS 6단위 기준으로는 HS 270112(유연탄), HS 271111(액화천연가스), HS 260300(구리광과 그 정광), HS 270900(석유와

역청유), HS 270119(기타 석탄) 등이다. 이 중 HS 711299(기타 귀금속 및 귀금속 화합물)와 HS 260300(구리광과 그 정광)의 경우 전년대비 수입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 백만불)

수 입						
순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금액		2017-2018 증감률
				2017년	2018년	
전 체				9,571	11,161	17%
1	석탄	270112	유연탄	2,116	2,254	7%
2	천연가스	271111	천연가스(액화)	1,253	1,498	20%
3	동광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356	699	96%

4	원유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	448	563	26%
5	석탄	270119	그 밖의 석탄(무연탄, 유연탄 제외)	444	332	-25%
6	임산부산물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344	285	-17%
7	강반제품 및 기타철강제품	720712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탄소 0.25/100 미만, 횡단면 직사각형인 것)	145	262	81%
8	주석제품	800110	합금하지 않은 주석	210	241	15%
9	목재류	441231	열대산 목재의 합판(대나무 제외)	175	241	38%
10	제지원료	470329	활엽수 화학목재펠프	204	228	12%
11	식물성물질	151190	팜유와 그 분획물(조유 제외)	163	222	36%
12	석유제품	271019	경질유와 조제품을 제외한 기타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144	177	23%
13	합금철 선철 및 고철	720260	페로니켈(ferro-nickel)	65	174	168%
14	기타금속광물	711299	금·백금을 제외한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한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150	4,900%
15	신변잡화	640399	기타 신발류	105	127	21%
16	철강판	721913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cm 이상, 두께 3~ 4.75mm)	0	115	-
17	기타정밀 화학제품	382319	기타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	76	83	9%
1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901380	그 밖의 액정 디바이스 및 광학기기	49	78	59%
19	식물성물질	151319	야자(코프라)유와 그 분획물(조유 제외)	81	73	-10%
20	의류	620193	인조섬유제의 남성용 또는 소년용 방한용 외투	50	73	46%

주 : 2018년 수입금액 기준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TI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FTA 활용 수출 현황

1) 우리나라의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률(2018)

(단위 : 백만불)

수출상대국 ¹⁾	전체수출금액	특혜대상금액	특혜적용금액	FTA활용률 ²⁾
한-아세안 FTA	38,345	13,036	6,795	52.1%
말레이시아	8,989	1,769	1,022	57.8%
태국	8,503	4,008	2,124	53.0%
인도네시아	8,834	4,739	2,431	51.3%
필리핀	12,019	2,520	1,218	48.3%

1) 한-아세안 FTA는 베트남을 제외한 수치이며, 표기되지 않은 개별 국가는 2018년 수출실적 없음

2) FTA활용률=특혜적용금액/특혜대상금액×100

2018년 수출금액 기준, 우리나라의 한-아세안(말레이시아) FTA 활용률은 약 57.8%로 한-아세안 전체 FTA 활용률(52.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있는 아세안 개별국가(4개국) FTA 활용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말레이시아는 전체수출금액(약 89억불)에서도 필리핀 다음으로 높은 금액을 기록한 반면, 특혜대상금액(약 17억불)은 2018년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있는 아세안 개별국 가운데 최저금액을 기록하였으며 따라서 특혜적용금액(약 10억불)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전체수출금액 중 한-아세안 FTA 특혜대상품목(FTA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에 해당하는 비중이 약 19.7% 정도에 불과한 탓이다. 그러나 아세안국 중 우리나라와 양자 FTA를 既추진한 베트남(2015. 12.20 발효) 및 인도네시아(2019.11.25 타결)의 경우 양자 FTA에서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에서도 상품시장 추가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한-말 FTA 체결시 특혜대상품목의 확대와 함께 우리기업의 對말레이시아 수출 및 FTA 활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우리나라 對말레이시아 산업별 FTA 수출활용률(2018)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한-아세안 FTA 활용 수출 - 산업별】

(단위 : 백만불)

순위 ¹⁾	산업분류 (MTI 1단위)	전체수출금액 ²⁾	특혜대상금액 ²⁾	특혜적용금액 ²⁾	FTA 활용률 ³⁾
	전 체	8,989	1,769	1,022	57.8%
1	화학공업제품	1,891	269	180	66.9%
2	철강금속제품	1,379	682	453	66.4%
3	전자전기제품	2,053	168	99	58.9%
4	농림수산물	116	44	25	56.8%
5	기계류	1,477	360	201	55.8%
6	생활용품	90	27	14	51.9%
7	섬유류	91	29	11	37.9%
8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227	191	40	20.9%
9	광산물	1,636	-	-	-
10	잡제품	29	-	-	-

1) FTA 활용률 순

2) 각 금액은 2018년 수출금액 기준이며, 백만불 단위로 기입하여 실제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FTA 활용률=특혜적용금액/특혜대상금액×100

2018년 수출금액 기준, 우리나라의 말레이시아 수출에서 한-아세안 FTA 활용률이 높은 산업은 화학공업제품·철강금속제품·전자전기제품(MTI 1단위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FTA 활용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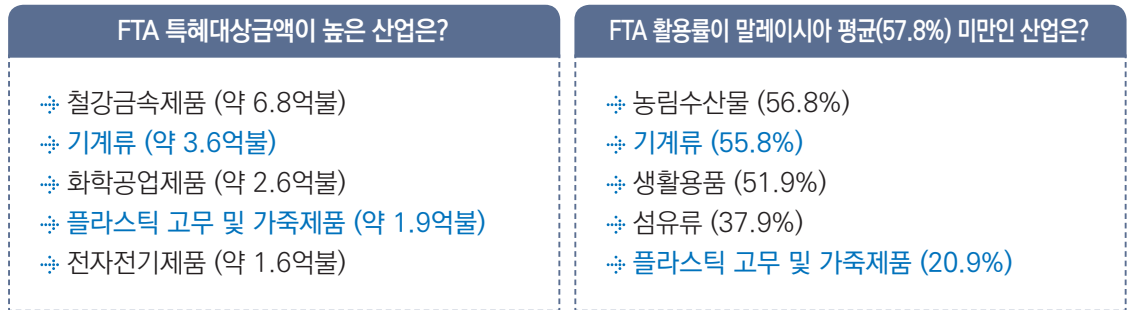
모두 2018년 對말레이시아 전체 FTA 활용률(57.8%)을 상회하며, 각 산업별 주요 FTA 적용 품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한-아세안 FTA 활용 주력 수출 산업】

산업	주요 FTA 적용 품목
화학공업제품	합성수지, 합성고무, 유리제품, 도로 및 잉크, 기타정밀화학제품 등
철강금속제품	형강, 선재 봉강 및 철근, 철강판 등
전자전기제품	영상기기, 무선통신기기, 가정용회전(rotary electric)기기, 건전지 및 축전지 등

반면, 기계류와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MTI 1단위 기준)의 경우 특혜대상금액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금액은 낮아 FTA 활용률이 전체 평균인 57.8%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한-아세안(말레이시아) FTA 적용 방법

1) 한-아세안(말레이시아) FTA 활용 순서 및 단계별 유의사항



■ 단계별 유의사항

①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품목분류는 물품에 HS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양허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FTA 활용의 첫 단계로서 이를 잘못 수행하면 이후 원산지 판단 및 FTA 업무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국(말레이시아) 기준의 HS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투입 원재료의 HS코드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양허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발효된 협정상 해당 물품이 양허대상인지 또는 어느 정도 관세가 경감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관세 인하율이 미미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양허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양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적용될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FTA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크게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특정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으로 나뉜다. 품목별 기준은 협정별 또는 물품별(HS코드 6단위 기준)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과 물품별로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원산지 증빙서류의 준비
원산지 증빙서류란 ‘원산지상품’으로 판정받기 위한 근거서류이며, 일반적으로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조원가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⑤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은 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투입원재료 내역, 원재료의 HS코드, 원재료 및 상품의 가격,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 제조공정 등)를 바탕으로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⑥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원산지 판단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 물품은 각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가 발급되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한다.
⑦ 관련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원산지 판정 자료 및 증명서 발급관련 자료를 증명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⑧ 원산지 검증 대응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검증자는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보관하였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한-아세안(말레이시아) FTA 원산지증명서(C/O) 작성 시 유의사항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2020년 1월 1일부로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를 2017 기준으로 완전이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form AK) 발급 시, HS 품목번호 기재방법에 유의하여야 한다.

* 본래 한-아세안 FTA 이행위는 2019년 9월 1일부로 원산지 증명서 품목번호의 HS 2017 기준 적용을 결정하였으나,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국가들이 있어, 미완료국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도기간을 허용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예외없이 완전이행하는 것으로 합의함

- 따라서 2019. 9. 1 기준으로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국내절차가 미완료된 6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경우 과도기간이 적용되어 2019. 12. 31까지는 기존과 같이 원산지증명서에 HS 2012 품번을 기재할 수 있었음

- 그러나 2020. 1. 1부로 과도기간이 종료되고 완전이행되므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모든 수출자(생산자)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form AK) 발급 시 품목번호를 HS 2017 버전으로 기재해야 함

이처럼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form AK)의 품목번호 기준이 HS 2017로 변경됨에 따라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기업은 수출물품의 HS 2017 코드와 이에 해당하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및 충족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FTA특례법 시행규칙 별표4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표」에서 확인 가능

3) 말레이시아의 특혜 원산지 제도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물품이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가 체결한 각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 직접운송요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 ▶ (원산지결정기준) 말레이시아가 체결한 아세안-중국, 아세안-한국, 아세안-인도, 아세안-호주-

뉴질랜드, 아세안-일본 협정에서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개별기준인 PSR(품목별기준, Product Specific Rules)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처럼 별도의 PSR이 규정되지 않은 물품은 일반기준*이 적용된다.

* 완전생산물품이 아닌 물품 중 개별 품목별 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물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2019. 12월 기준

구분	일반기준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	RC(BU) 40% or MC 60%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	RC(BD/BU) 40% or CTH
말레이시아-칠레 자유무역협정(MCFTA)	-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AIFTA)	RC(BU) 35% + CTH or MC 65% + CTSH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	RC(BD/BU) 40% or CTH
말레이시아-인도 자유무역협정(MICECA)	-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JCEP)	RC(BD) 40% or CTH

주) RC : 역내부가가치비율(Regional Contents), BD : 간접법(Build-Down), BU: 직접법(Build-Up), MC: 비원산지재료비율 (Imported Contents), CTH : 4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Subheading)

자료 : 말레이시아 통상부

- ▶ (직접운송요건) 물품이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뿐만 아니라 직접운송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직접운송이란 특혜 대상 물품이 수출국을 출발하여 비당사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지리·운송상 정당한 경우에 한하여 제3국을 경유·환적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접운송요건은 대부분의 협정에서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3국의 비원산지 물품이 협정 당사국 물품으로 둔갑 또는 위조되어 특혜 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거나, 이로 인한 협정 당사국 물품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협정별로 직접운송을 인정하는 경우는 조금씩 상이하므로 특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출입자는 반드시

적용 협정의 직접운송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아세안 FTA에서도 직접운송원칙을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에서 직접운송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9조 직접운송

- 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또한 한-아세안 FTA에서는 위 부속서 3 원산지 규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록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서 절차적 사항을 담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록 제19조에서는 물품 운송이 수출입 당사국이 아닌 제3의 중간국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수입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원본,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분, 그 밖의 부속서 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등과 같이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9조

-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 제9조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 나. 원산지증명서 원본
 - 다.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분
 - 라. 그 밖의 부속서 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하지만 해당 서류들이 한-아세안 FTA의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서류라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위 규정(제19조)은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9조인 직접운송규정을 원활히 실시·집행하기 위한데 그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제19조 가호에 제시된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같은 조 라호에 의거 다른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ex. 제3국 세관발행 비가공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입증하고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제19조 가호의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다른 증명서류에 의해 직접운송 간주의 실제적 요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 ◇ 1.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협정관세 사후신청의 수리가 비과세의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소극)◇
- ☞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을 거쳐 수입된 잠수복 등 물품의 수입신고 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아세안 FTA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 부과한 사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규정의 부록인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서류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심으로서도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다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직접운송간주의 실제적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심리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감액경정 등만으로는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7두6372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자료 : 대한민국법원(<https://www.scourt.go.kr/>) '대법원 2017두63276' 판례

단, FTA 협정에서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입증하는 증명서류의 인정 여부는 각 관세당국 판단에 근거한다. 따라서 제3국을 단순 경유 또는 환적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 충족을 입증하고 특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수입세관 당국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원산지결정기준 및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한 물품은 각 협정별로 규정된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FTA 특혜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FTA 적용 필수서류인 C/O를 적용 협정에 규정된

서식으로 발급해야 한다. 만약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자가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해당 원산지증명서(C/O)는

반드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인 AK 서식(form AK)으로 발급되어야 한다.

2019. 12월 기준

구분	양식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	Form E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	Form AK
말레이시아-칠레 자유무역협정(MCFTA)	CMFTA FORM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AIFTA)	Form AI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	Form AANZ
말레이시아-인도 자유무역협정(MICECA)	Form MICECA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JCEP)	Form AJ

자료 : 말레이시아 통상부

또한 원산지증명서(C/O)는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발급방식과 자율발급방식으로 구분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협정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이루어 지는데, 여기서 발급주체가 원산지국의 관세당국 또는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일 경우 이를 기관발급이라 하고, 수출자일 경우를 자율발급이라 한다.

한-아세안(말레이시아) FTA에서 원산지증명서(C/O)의 발급은 기관발급 형태이며, 각 국가별로 정부가 발급권한을 위임한 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관은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 Industry)이다.

원산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브루나이	브루나이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캄보디아	캄보디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통상부(Ministry of Trade)
라오스	라오스 상공회의소(Lao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 Industry)

원산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미얀마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필리핀	필리핀 세관(Bureau of Customs)
싱가포르	싱가포르 세관(Singapore Customs)
태국	태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베트남	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대한민국	세관,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등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외)/ 단, 개성공단 물품의 경우 세관으로 한정

자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한-아세안(말레이시아) FTA 원산지증명서(form AK) 발급 시 유의사항

- (인쇄 관련) 아세안 국가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인쇄 상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흑백 인쇄, 뒷면(Overleaf Note)의 미인쇄 또는 별지인쇄 등이 해당하며, 이 경우 정당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따라서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form AK 발급 시 아래의 인쇄 원칙을 준수하여 인쇄할 필요가 있다.

✓ form AK 인쇄 원칙 : 1. 컬러 인쇄 / 2. 상방향 인쇄 / 3. 양면 인쇄

- (소급발행 문구 기재 관련) 한-아세안 FTA에서 C/O(form AK)가 출항일 이후 3일이 지나고 발급되는 경우, 소급적용이 이루어지며 한-아세안 FTA 협정문에서는 소급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7조의 일부(제4항)

4.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할 수 있다.

☞ 따라서 한-아세안 FTA 소급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상 소급적용 문구인 ‘ISSUED RETROACTIVELY’가 명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해당 문구가 기재되어야 하며, 후신청의 적용 및 신청요건은 아세안 국가별로 각기 상이하므로 신청 시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한-아세안 FTA 말레이시아 협정관세 사후신청 관련 규정

(신청기간) 수입 후 1년 이내

(신청요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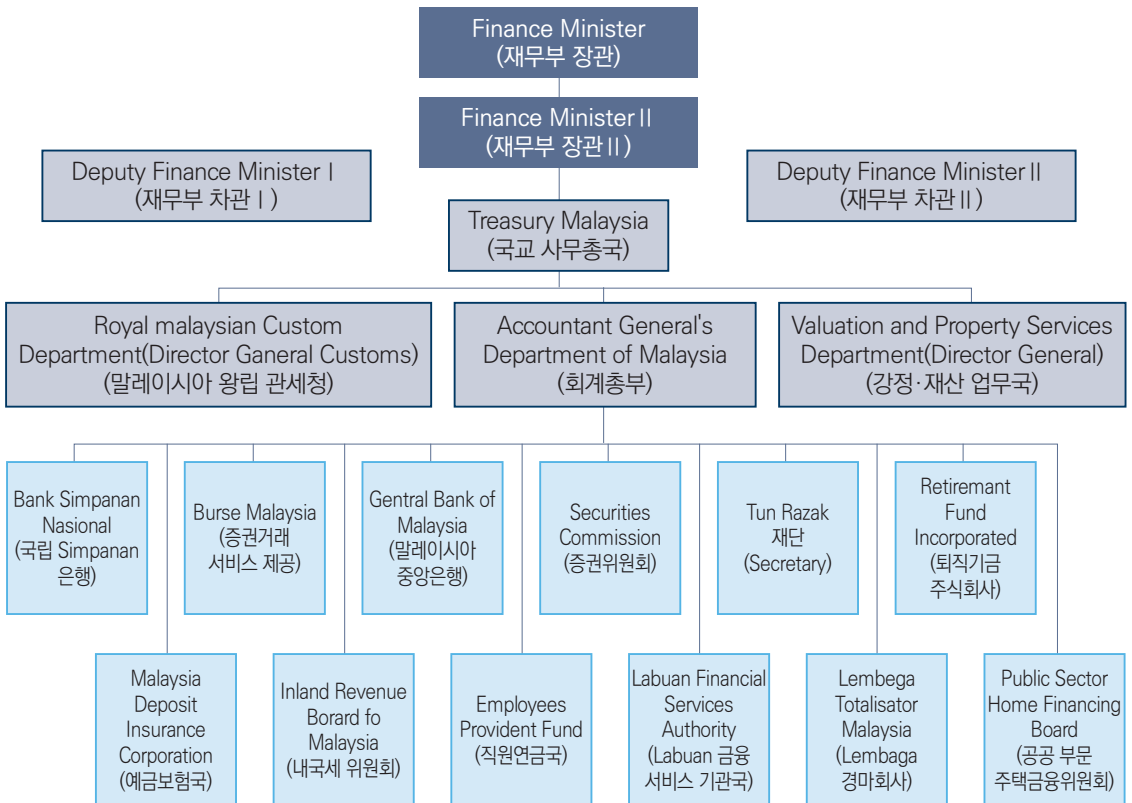
6. 말레이시아 통상·통관환경

1) 말레이시아 통관 조직 및 관련 법

말레이시아의 통관 관련 업무는 주로 재무부와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먼저 말레이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말레이시아의 세제·경제·예산 및 주택대출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주요 업무는

재정·화폐의 정부조달, 관리감독 정책 수립 및 시행, 외부자원 획득·분배관리, 연방정부 내국채 집행 등이다. 하위기관으로는 관세청, 회계국 및 감정·재산 업무국 등을 두고 있다.

【말레이시아 재무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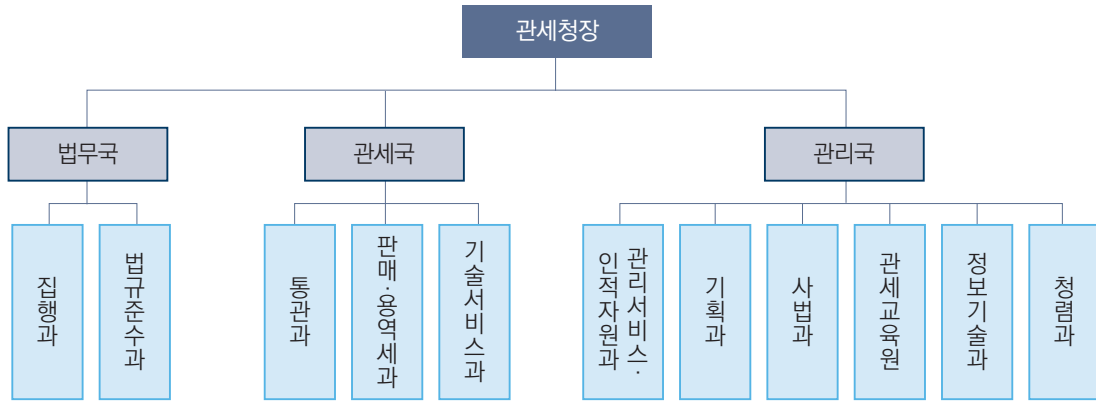


자료 : 말레이시아 재무부

이 중 관세청에서 통관 관련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말레이시아 관세청(Royal Malaysia Customs Department)은 아래와 같이 크게 11개의 부서(과)로 나뉘어져 있으며, 주요 부서(과)는 집행과, 법규 준수과, 통관과, 판매·용역세과, 기술서비스과 등이

있다. 이 중 집행과는 관세관련 업무의 집행을 관장하는 부서로 마약·밀수 단속이나 몰수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통관과는 16개의 지역세관과 1개의 싱가포르 세관을 운영하며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관세청 주요 조직도】



자료 : 말레이시아 재무부 홈페이지

따라서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서 예외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관세, 판매세 및 소비세가 모두 부과된다. 관세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하여 35% 이상의 고관세 대상물품은 극히 소수에 해당한다. 기계류의 경우 거의 무관세이며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에는 기본적으로 5% 관세율이 적용되나, 무관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부품의 수입이나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설비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관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단, 사치품 또는 섬유류·플라스틱 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고관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판매세 및 소비세의 경우에도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자국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의 일환으로 특히 자동차 등에 준관세 성격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2) 말레이시아 통관 관련 신규 개정사항

(1) 말레이시아, 개정 관세법 '관세법 2019 (Custom Act 2019)' 도입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 1월 1일부로 개정 관세법인 '관세법 2019(Customs Act 2019)'의 도입·시행을 발표했다. 금번 개정된 관세법에는 기존 '관세법 1967(Customs Act 1967)'의 96개 조항이 개정되고, 61개 조항이 추가 및 신설되었다. 이처럼 관세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기존 말레이시아

수출입 절차 및 관행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수출입을 진행하는 우리기업은 관세법 개정 내용 및 적용 관련 최신사항을 숙지하여 변화된 통관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 관세법 2019 주요 개정사항】

Custom Act 2019	
1	관세 추징 청구기간 연장
●	납부되지 않은 관세를 추징(Demand)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됨
-	그러나 6년으로 연장된 기간에 사기 혹은 불이행(Default)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나, 불이행에 해당하는 범주가 개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후 법적 논란이 예상됨
-	또한 관세추징 청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세에 대한 감사범위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됨
2	관세법 적용 가이드라인 제시 근거 마련
●	관세청장이 관세법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Public Ruling를 발행할 수 있게 됨
-	이로 관세법 적용 및 해석의 투명성과 예측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3	공무원의 법 집행권한 강화
●	관세청 공무원은 말레이시아 검사(Public Prosecutor)의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통신에 대한 감시 실시가 가능해짐
-	(감시대상 통신형식) 우편물,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메시지·대화내용을 모두 포함
4	원산지 규칙 및 특혜·비특혜관세 관련 규정 신설
●	원산지증명을 발행하는 담당 관청의 지정
●	원산지 신고(declaration of origin) 발행을 위한 등록
●	특혜관세 청구 요건
●	원산지증명의 신청
●	수입자·생산자·수출자의 책임
●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 및 정보의 확인 등

5 관세법 위반 관련 조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위반시 적용되는 처벌조항을 제·개정하여 이전보다 강화함 ●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 	
개정 전	개정 후
Section 133 - 거짓자료에 기반한 신고 오류에 대한 처벌	
50만 링깃 그리고/또는 5년 이하의 징역	50만 링깃 그리고/또는 7년 이하의 징역
Section 135 - 밀수, 관세포탈, 사기 등에 대한 처벌	
담배(tobacco)를 포함한 결련 및 알코올이 든 음료를 제외하는 과세물건을 포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위반시 벌금(관세액 20배 이하 또는 10만 링깃 중 큰 금액) 그리고/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2회 이상 위반시 벌금(관세액 40배 이하 또는 50만 링깃 중 큰 금액) 그리고/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위반시 벌금(관세액 20배 이하 또는 50만 링깃 중 큰 금액) 그리고/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2회 이상 위반시 벌금(관세액 40배 이하 또는 100만 링깃 중 큰 금액) 그리고/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담배(tobacco)를 포함한 결련 및 알코올이 든 음료를 제외하는 금지품목을 포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위반시 벌금(물품가치의 20배 이하 또는 10만 링깃 중 큰 금액) 그리고/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2회 이상 위반시 벌금(물품가치의 40배 이하 또는 50만 링깃 중 큰 금액) 그리고/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위반시 벌금(물품가치의 20배 이하 또는 50만 링깃 중 큰 금액) 그리고/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2회 이상 위반시 벌금(물품가치의 40배 이하 또는 100만 링깃 중 큰 금액) 그리고/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Section 137 - 뇌물 공여 또는 수수죄	
10만 링깃의 벌금 그리고/또는 5년 이하의 징역	50만 링깃의 벌금 그리고/또는 5년 이하의 징역
Section 138 - 기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20만 링깃의 벌금 그리고/또는 5년 이하의 징역	50만 링깃의 벌금 그리고/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신설) 관세법 위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조작 및 삭제 - 재수출에 대한 관세 환급(drawback) 및 관세 환급의 불법 청구 - 부정확한 원산지 증명 등 	

6	의무 기록 보관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관련 기록의 보관기간이 기존 6년에서 7년으로 연장됨 - (해당 기록물 범위) 회계·관리·재무·판매·유통 관련 기록, 로열티 계약서 등
7	관세 자유지역(free zones) 관련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자유지역(free zones)은 관세영역 밖의 지역(outside a principal customs area)로 간주되며, 말레이시아 역외(outside Malaysia)와는 다른 것이라고 규정함 - 이로 관세 자유지역에서의 통관처리 등 이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이 생길 수도 있으나 아직 불명확함
8	환송(Transit) 및 환적(Transshipment) 관련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송(Transit) 및 환적(Transshipment)의 정의 규정 - (환송) 물품이 완전히 다른 국가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내의 2개 이상 관할세관 간의 물품의 이동 또는 외국의 관할세관에서 말레이시아의 관할세관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 (환적) 말레이시아 밖으로 선적하기 위해 선박(비행기)에서 다른 선박(비행기)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 또는 선박(비행기)에서 물품을 하역해 통관하거나 허가된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것 ● 환송 및 환적에 대한 상세 절차 도입 - 이 중 일부는 환송·환적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항, 환송·환적 물품의 소유자 또는 에이전트가 환송·환적 절차를 방해한 경우 관세 납부 및 벌금을 납부할 책무가 부과됨
9	허가된 보세창고 관련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된 제조 보세창고(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 내 관세대상 물품의 결손량 미증빙시 책임 부과 - 허가된 제조 보세창고의 관세대상 물품 수량에 결손이 발생했을 때 결손량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허가 소지자는 불법적으로 물품을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손 물량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해야함 ● 허가 소지자 의무 제공 조항 규정 - 허가 소지자는 자비로 관할세관과 시설을 허가된 보세창고에 의무적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함
10	관세 환급 관련 규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납한 관세의 환급 청구 기간 규정(기존 관세법 16조 개정) - 원산지증명 확인, 관세불복소 등으로 인해 선납한 관세의 환급청구시, 환급신청서는 원산지증명 확인에 대한 판단일, 관세불복소의 판단이 청구인에게 고지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 수입물품 수출시 관세환급 기한 단축 - 말레이시아에 수입된 이후 수출된 물품의 관세환급 기한이 기존 관세납부일로부터 12개월에서 관세납부일로부터 3개월로 단축됨 ● 관세환급 신청 최소금액 한도 인상 -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기존 50링깃에서 120링깃으로 인상됨

(2) GST 제도 폐지 및 SST 제도의 부활

최근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정부는 2018. 9. 1일부로 GST 제도를 폐지하고 SST 제도를 본격 시행하였다. GST는 'Goods and Service Tax'의 약자로 우리 말로는 재화용역세로 해석할 수 있으며, SST는 'Sales and Service Tax'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판매용역세로 해석할 수 있다. GST와 SST는 거의 모든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말레이시아의 주요 세제 정책에 해당한다.

현재 폐지된 GST는 당초 SST를 대체하여 도입된 세율이다. 그러나 SST는 5~10% 세율로 생산→판매 시 특정단계에서 한 번만 부과되는 Single Tax인 반면 GST는 6%의 세율로 생산→판매 시 매

단계마다 부과되는 Multi Stage Tax로, GST 도입 이후 말레이시아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불만은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입장에서 GST는 세수의 증가와 모니터링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나, 소비자·기업 입장에서는 체세 부담을 가중하여 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경기침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에 마하티르 정부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세금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SST 제도를 재도입 하였으며, 이로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제조되는 과세대상 물품의 경우 새로 도입된 'Sale Tax Act 2018'에 의거 5~10%에 해당하는 판매세 및 용역세가 부과된다.

【GST 및 SST 제도 비교】

구분	GST(Goods and Service Tax, 재화용역세)	SST(Sales and Service Tax, 판매용역세)
적용대상	거의 모든 재화·서비스	
부과 요율	대부분 6% 동률로 부과	5%, 6%, 10% 및 특정세율로 세분화
부과단계	생산→판매로 이어지는 매 단계마다 부과	일반적으로 생산/수입/서비스제공 등 특정 단계에서 한 번만 부과
주요 장점	(정부측면) 세수의 증가 및 탈세 감시·모니터링 용이, 국가신용도 및 투명성 제고	(기업측면) 민간소비 증가 및 내수촉진 유도를 통한 매출 상승, GST 신고비용 감소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3) 말레이시아 통상 정책 동향

(1) 정권교체를 통한 61년만의 신정부 출범

말레이시아는 지난 2018년 5월 총선에서 마하티르의 희망연대(PH)가 승리하면서 1957년 영국 독립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신정부의 출범은 최근 말레이시아의 경제·통상 체제에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마하티르 정부는 공공부채감축·민생부담경감·제도개혁·실용주의에 입각한 대외 경제정책 추진 등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그리고 특히 대외경제와 관련해서는 “동방정책”을 부활하여 韓·日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對中 경제 의존도 축소 등을 구체적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은 마하티르 총리가 지난 1983년부터 추진한 정책으로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등 제조업 강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최근 마하티르 총리의 정계 복귀로 동방정책이 다시 재조명 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정부에서 현재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는 “신(新) 남방정책”과도 기초를 같이 하여 더욱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과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이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될 경우, 추후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한-말, 할랄협력 등 4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지난 2019년 3월, 한-말 정부는 양국의 협력증진을 위해 산업·교통·스마트시티·할랄산업 등 4개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MOU 체결은 양국 간 협력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말 MOU 체결 분야 및 주요 내용】

협력 분야	주요 내용 및 목적
① 산업	제조업 4.0 대응을 위한 전기차, 스마트제조, 의료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공동연구 추진 및 한-말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독려
② 교통	육상·해상·항공 등 교통 전 분야에서 화물·여객 수송, 안전·보안, 친환경 교통,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협력 증진
③ 스마트시티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관련 협력 사업 추진 및 양국 스마트시티 관련 경험 공유
④ 할랄산업	할랄인증 및 표준개발, 할랄제품개발, 할랄 공급망 확대 등 협력을 통한 할랄시장 저변 확대 및 제3국 할랄시장 공동진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 공동언론 발표문(2019.03.13)

(3) 말레이시아,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최근(2020. 1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베트남 4개국에 대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를 발표했다. 철강제품은 말레이시아 수입규제 관련 제소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로,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에는 금번 조치를 포함하여 총 3건의 반덤핑 조치가 부과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에 적용되는 말레이시아 반덤핑 관세 조치 내용】

적용 품목	HS CODE	주요 내용	적용 기간
두께 0.3~6.5mm, 너비 1,600mm 이상의 iron 또는 non-alloy steel 냉연코일(CRC)	7219.31.0000 7219.32.0000 7219.33.0000 7219.34.0000 7219.35.0000 7220.20.1000 7220.20.9000	제소기업: Bahru Stainless Sdn Bhd 대상국가 : 한국, 중국, 대만, 태국 한국 적용관세 : 현대BNG스틸 0%, 현대제철 0%, 포스코 4.44%, 기타 7.27%	2018. 2. 8~ 2023. 2. 7 (5년)
두께 0.2~2.6mm, 너비 700~1300mm 이상의 iron 또는 non-alloy steel 냉연코일(CRC)	7209.15.0000 7209.16.1000 7209.16.9000 7209.17.1000 7209.17.9000 7209.18.9900 7225.50.1000 7225.50.9000	제소기업 : CSC Steel Sdn Bhd 대상국가 : 한국, 중국, 베트남 한국 적용관세 : 포스코 0%, 현대제철 11.55%, 기타 21.64%	2019. 5. 8~ 2021. 5. 23
너비 1,300mm 이상의 iron 또는 non-alloy steel 냉연코일(CRC)	7209.15.0000 7209.16.9000 7209.17.9000 7209.18.9900 7225.50.9000	제소기업 : Mycron Steel CRC Sdn Bhd 대상국가 :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한국 적용관세 : 포스코 0%, 기타 3.84%	2019.12.26~ 2024.12.24

자료 :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Federal Government Gazette, KOTRA

근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주요국의 대한(對韓) 수입규제조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철강제품은 전체 수입규제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수입규제 품목이다. 최근 우리 철강제품에 부과된 말레이시아 반덤핑 조치의 경우, 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부과되어 당장은 베트남이나 중국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향후

말레이시아 정부의 철강 관련 수입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계속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 및 말레이시아 철강 수출 관련 기업은 말레이시아 반덤핑 관련 조사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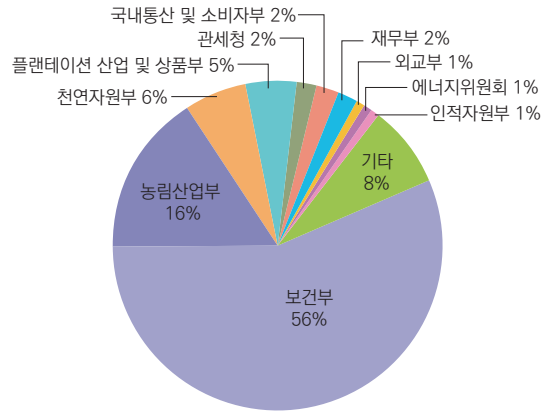
4) 말레이시아의 비관세조치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추구하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일부 비관세조치를 시행 및 강화하고 있다. 이는 특히 자동차나 화학 및 식품관련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소비자 건강, 안전 및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당 산업에 강력한 보호와 비관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레이시아의 비관세조치는 보건부, 농림산업부, 천연자원부, 관세청, 재무부, 외교부 등 총 19개의 정부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의 비관세조치는 보건부·농림산업부·천연자원부 3개 기관에서 시행된다(약 78%).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시행되는 비관세조치 유형은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무역기술장벽

【말레이시아 비관세조치 기관별 시행 비율(2018)】



(TBT), 수량제한조치 등이다. 유형별 세부조치 내용은 SPS의 경우 식품·사료 내 특정물질의 제한적 사용이나 라벨링, 인증, 포장요건 등이고 TBT는 제품 품질·안전성·성능요건이나 라벨링, 제품 특이 요구사항 등이며, 수량제한조치는 비자동 라이선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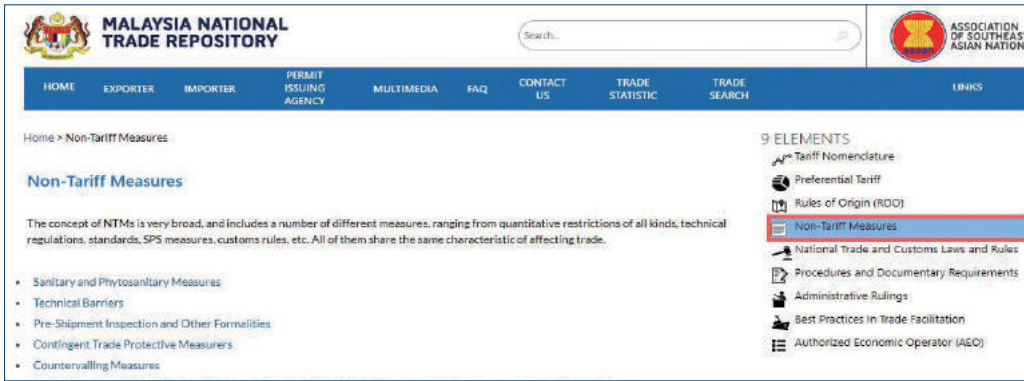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비관세조치(NTM) 관련 정보 확인 가능 사이트

① 말레이시아 무역 관련 정보 단일플랫폼(MNTR)

☞ <http://mytraderepository.customs.gov.my/>

- 말레이시아 비관세조치(NTM) 개관 및 시행 목록 확인 가능



② WTO 비관세장벽 포털(I-ITP)

☞ <https://i-tip.wto.org/>

- WTO 협정 및 통보문 기반 비관세조치(NTM) 종합 데이터베이스로 연도별 추이 및 관련 세부정보(제소 및 조치 상태, 양자간 비관세자료, 제소건 정보 등) 파악 가능



③ UNCTAD 비관세장벽 포털(TRAINS)

☞ <https://trains.unctad.org>

- 자체 국내 법령 및 규제 조사 기반 비관세장벽(NTM) 종합 데이터베이스로 국가별/산업별 비교 및 세부 조치별 파악 가능

The screenshot displays the TRAINS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it says "TRAINS The global database on Non-Tariff Measures". Below this are logos for various organizations including UNCTAD, ALADI, ERIA, International Trade Centre, GRIPS, The World Bank, WTO OMC, and UNECA/UNECE/UNESCAP. The navigation menu includes "Home", "TABLES by PRODUCTS", "TABLES by MEASURE", "TABLES by COUNTRIES" (highlighted), "DETAILED QUERY", "ANALYSIS", and "About".

The "Selected search criteria" section shows the following filters:

- Measures: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A],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B], Pre-shipment inspection [INSP] [C], Contingent trade protective measures [CTPM] [D], Quantity control measures [QC] [E], Price control measures [PC] [F], Other measures [OTH] [G,H,I,J,K,L,M,N,O], Export-related measures [EXP] [P]
- Country(ies) imposing: Malaysia
- Partner(s) affected: Any [Include the category "All partners"]
- Date(s): 21/02/2020 [in force]
- Product(s): Any

The "Search result" section shows a table with the following data:

		EXP	INSP	PC	QC	SPS	TBT
Asia	Malaysia	140	6	29	49	324	372
Asia Total		140	6	29	49	324	372
Grand Total		140	6	29	49	324	372

④ WTO 해외기술규제 통보문 정보 시스템(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https://www.knowtbt.kr/>

- WTO 회원국 TBT 통보문 및 TBT 관련 현황 확인 가능

⑤ 우리나라(한국) SPS 정보관리시스템

☞ www.koreasps.kr/

- 서비스 제공 대상 국가별 SPS 및 TBT 통보문을 제품·국가·관련품목·HS코드 등 사용자가 원하는 키워드를 지정하여 국문 및 영문으로 확인 가능(단, SPS 통보문 한글 번역본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며, 법적효력 및 관련 내용 최종 확인 시에는 반드시 SPS 통보문 영어(원문) 확인 필요), SPS 통보문 관련 통계데이터 확인 가능

⑥ 우리나라(한국) 국가기술표준원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KNOWTBT)

☞ <https://www.knowtbt.kr/>

- WTO 회원국 TBT 통보문 검색 및 관련 내용(원문/한글) 확인 가능

FTA TRADE REPORT



FTA 품목분류

FTA 시대의 유탄(流彈) 2

김성채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사무관

**김성채**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사무관

FTA 시대의 유탄(流彈) 2

FTA 환경이 우리 수출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해진 규범과 약속 내에서 그 기회를 활용한다면 기업에게 여러 가지 혜택으로 돌아오겠지만, 그러한 기회 활용은 온전히 기업 스스로의 설계, 결정, 판단에 근거하는 만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FTA 환경에서 실제 업체가 겪게 되는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위험요소는 업체 스스로 판단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당국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다.

1.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모델의 위험성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농산물(특히 곡물)에 대해 높은 관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FTA 환경에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어서 쌀을 비롯한 핵심 농산물은 양허제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쿼터 적용을 통하여 수입을 제한해 오고 있다. 제10류 곡물의 경우 대부분 800.3%의 어마어마한 관세가 적용되며, 이러한 곡물을 1차 가공품(제11류의 곡분 등)도 대체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유무역 협정 하에서는 특정 국가 원산의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모든 종류의 곡물 가공품에 대하여 손쉽게 양허관세를 적용받도록 만들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한 접근으로는 영허관세를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퀴노아(quinoa)는 남미 원산의 식물로서 세계 식량농업기구(FAO)에서 2013년을 퀴노아의 해로 선포하였고, 세계 10대 슈퍼푸드에도 여러 차례 선정되기도 하면서 국내에도 어느 정도 친숙해진 식재료이다. WCO는 FAO의 제안에 따라 2012년 HS 개정시 제1008호(기타의 곡물)의 6단위 소호에 퀴노아를 특개하였다.(제1008.50호)¹⁾

퀴노아는 HS 품목분류상으로는 제1008호에 포함되는 곡물이기 때문에 관세율표에서는 (미추천시) 관세 800.3%를 부여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퀴노아에 대하여 0%의 특혜관세(연간 575톤 이하)를 부여²⁾하고 있지만 퀴노아는 남미 원산으로 미국에서는 거의 재배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퀴노아가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몇몇 업체는 퀴노아 가공품을 수입하기 위해 매우 혁신적인 FTA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10류의 곡물(쌀 제외)의 껍질을 벗기거나 도정하게 되면 이 물품은 보통 제11류에 분류된다. 그리고 한-미 FTA에서 제110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관세 0%가 적용되며, 이들 물품의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은 2단위 세번변경 기준(CC, Change chapters)이다. 즉, 이론적으로는 제10류의 곡물을 수입해서 가공한 후 제1104호의 물품을 생산하면 한-미 FTA에 의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0%의 관세혜택을 받게 된다. (연간 196톤 이하)

1) 과학적인 관점에서 퀴노아는 곡물이 아닌 유사곡물이라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HS 품목분류표에서는 2012년 HS 개정 이전부터 퀴노아를 기타의 곡물로 보아 제1008호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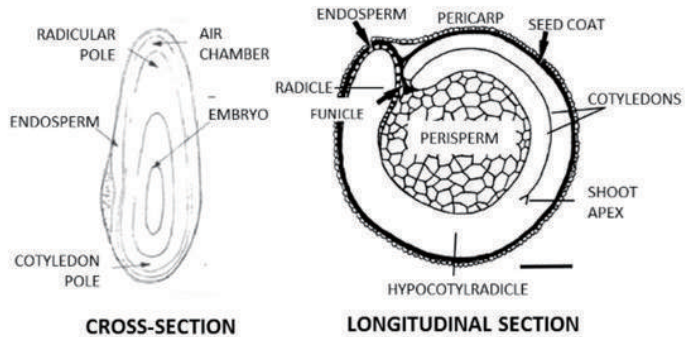
2) 한미 FTA를 제외한 기타 FTA에서는 퀴노아에 350~80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양허 대상임

퀴노아는 수확한 상태에서는 곡물이라기보다는 씨앗에 가까우며 밀이나 보리처럼 껍질이 곡물을 감싸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사포닌 층이 얇은 막 형태로 코팅되어 있는 형태이다. 사포닌은

태양광선이나 조류로부터 씨앗을 보호하기 위한 독성성분으로 사포닌층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퀴노아를 그대로 먹는 것은 위험하며 보통 세척 후에 식용으로 사용한다.



〈퀴노아〉



〈퀴노아의 단면도〉

우리나라의 한 업체(A 업체)는 퀴노아를 세척하여 사포닌 층을 제거하는 것이 밀이나 보리 등의 껍질을 벗기는 것과 그 기능적인 관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세척으로 사포닌 층을 제거한 퀴노아를 제1104호에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럴 경우 페루에서 생산한 퀴노아(제1008호)를 미국으로 수입한 후 미국에서 세척하여 사포닌층을 제거하면 제1104호의 물품이 되므로 이 물품은 한-미 FTA에 의하여 미국산으로 인정받게 되며 그에 따라 0%의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A 업체의 FTA 비즈니스 모델】



페루산 퀴노아 (제100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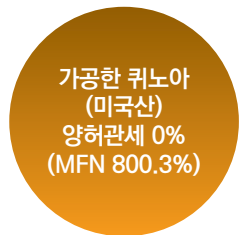
미국 수출



퀴노아 세척 (제1104호)



한국 수출



가공한 퀴노아 (미국산)
양허관세 0% (MFN 800.3%)

이에 따라 업체는 위 모델대로 페루산 퀴노아를 미국에서 세척 후 퀴노아 가공품(HS 제1104호, 미국원산)으로서 수입신고하면서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다.

반면, 또 다른 업체는 퀴노아는 세척 여부와는 관계 없이 제1008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고 세척상태의

퀴노아를 미국으로 수입하여 미국에서 발아시킨 후 이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 경우 페루에서 생산 및 세척한 퀴노아(제1008호)를 미국으로 수입하여 미국에서 싹을 틔우면 제1104호의 물품이 되므로 이 물품은 한-미 FTA에 의하여 미국산으로 인정받게 되며 그에 따라 0%의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B 업체의 FTA 비즈니스 모델】



A와 B 두 업체는 세척한 퀴노아에 대해 서로 다른 품목분류를 전제로 각기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것이다. 세척한 퀴노아가 제1008호에 분류된다면 B 업체의 수입물품(발아시킨 퀴노아)은 한-미 FTA상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며 미국산으로 인정되는 반면, A업체의 수입물품(세척한 퀴노아)는 한-미 FTA상 요건을 충족받지 못하여 미국산으로 인정되지 못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세척한 퀴노아가 제1104호에 분류되는 경우 A업체의 수입물품은 미국산으로 인정되는 반면 B업체의 수입물품은 미국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 즉, 세척한 퀴노아의 품목분류가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두 업체 중의 하나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세척한 퀴노아의 품목분류 문제는 WCO HS 위원회까지 상정되어 최종적으로 제1008호에 결정되었다. 수입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앞뒤 재보지 않고 추진하기 보다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을 통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한 상태에서 거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 통칙 2가 적용의 희비

앞서 퀴노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FTA 협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은 세번변경 기준(CTC,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이다. 수출입물품이 역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되지 못하고 역외산 재료를 일부 사용했다라도 최종 산출물과 투입된 역외산 재료의 HS 품목분류가 달라질 정도의 가공이 있었다면 역내에서 실질적으로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역내산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중 하나가 HS 품목 분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의 문제이다. 통칙 제2호 가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통칙 제2호 가목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이지만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성된 물품과 동일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불완전 미완성 물품을 수입하여 역내에서 추가가공 후 완성품을 만들 경우 최초 수입한 미완성 물품에

통칙 제2호가 적용되어 완성품과 동일하게 품목분류 된다면 역내에서 HS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수치화하여 제시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전체 제조공정이나 부가가치의 80~90% 이상인 경우거나 완성품의 본질적이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대략 50% 이상의 공정만 완료했어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통칙 해설서는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미완성 물품의 하나로 반가공품(blank) 개념을 예시하고 있다.

통칙 제2호 해설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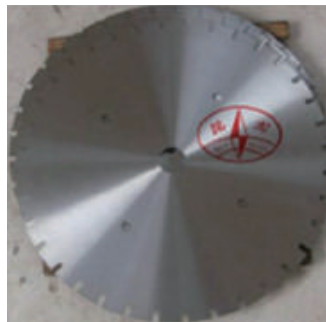
(II)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예: 플라스틱(plastic)으로 만든 관 형태를 가진 병 제조용 중간성형품으로서 한쪽은 막혀있고 다른 쪽은 뚫려있다. 뚫린 쪽은 뚜껑을 돌려 닫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홈이 파져 있는 밑 부분을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시킨 후 사용한다].

반가공품이란 i) 그 상태로는 직접 사용할 수 없고, ii) 완성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고, iii)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중간제품을 의미한다. 통칙 해설서는 아래와 같은 플라스틱 병 제조용 blank를 예시하고 있다. 즉, 병 제조용 blank 또한 완성된 병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하고 완성품과 동일하게 분류한다는 의미이다.

이 밖에도 HS 해설서는 몇몇 호에서 blank에 해당하는 물품을 예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나사산을 가공하지 않은 볼트(제7318호), 톱날의 블랭크(제8202호), 거칠게 주조된 열쇠 블랭크(제8301호) 등도 완성품과 동일하게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다.



〈플라스틱병 블랭크(왼쪽)와 완성된 플라스틱 병(제3923호)〉



〈왼쪽부터 철강제의 볼트 블랭크(제7318호), 톱날 블랭크(제8202호), 열쇠블랭크(제8301호)〉



〈철강제의 단조품(크랭크용 블랭크) - 제26차 WCO HS위원회〉

블랭크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완성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난이도나 부가가치가 높은 추가공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블랭크는 비금속제의 주조품이나 단조품 형상일 경우가 많다. WCO(세계관세기구)의 제26차 HS 위원회(2000.11월)에서는 선박용 디젤엔진에 사용되는 크랭크축을 제조하기 위한 철강제의 단조품(좌측 사진)에 대한 품목분류를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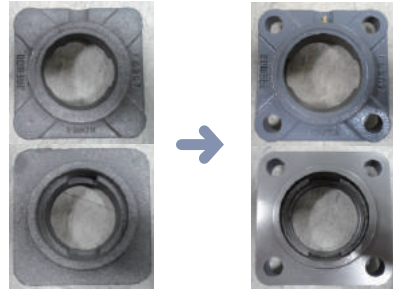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단조품은 크기나 외형 등으로 보아 대형 선박엔진용 크랭크를 만들기 위한 중간제품인 것은 명확하다. 이 정도 형상을 갖춘 중간제품을 만든 상태에서 이 중간제품을 크랭크가 아닌 다른 물품을 만들기 위해 변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완성품인 크랭크의 대략적인 형상과 윤곽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완성품인 크랭크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절삭, 치수가공, 연마, 표면처리 등 수많은 공정이 남아 있고 전체 공정의 부가가치로 본다면 남아있는 공정의 비중이 더 클 수도 있다.



〈완성된 선박용의 디젤엔진의 크랭크(예시)〉

그러나 HS 위원회는 이 물품에 대하여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투표결과 31대 1)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크랭크축(제8483호)으로 분류하였다. 이 결정은 각국 관세당국의 실무적 레벨에서 통칙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블랭크로 인정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HS 제8483호의 베어링 하우징을 제조하는 우리나라의 한 업체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중국에서 베어링 하우징의 중간제품(주조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성가공(치수가공, 니플 부착, 표면처리 등)을 거쳐 해외로 수출하는 모델을 설계하였다.



〈베어링 하우징용 주물제품〉

〈완성된 베어링 하우징(제8483호)〉

업체는 중국에서 철강제 주물제품(HS 제7325호)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베어링하우징(HS 제8483호)으로 완성할 경우 4단위 HS 변경이 이루어져 한국산으로 인정되고 FTA 체결국가로 이를 수출할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문제는 품목분류 과정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주물제품이 완성된 베어링 하우징의 형상과 윤곽을 갖춘 것으로 통칙 제2호 가목에 의한 blank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수입되는 물품 또한 제8483호에 분류되게 되므로 국내에서 완성가공을 하더라도 HS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이 업체는 예상과 다른 품목분류로 인하여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었다.

경우는 다르지만 또 다른 업체에서는 항공기용의 랜딩기어 허브 중간제품(단조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성가공을 거쳐 항공기 부분품을 완성하였다.



〈랜딩기어용 단조품〉



〈완성된 랜딩기어 허브(제88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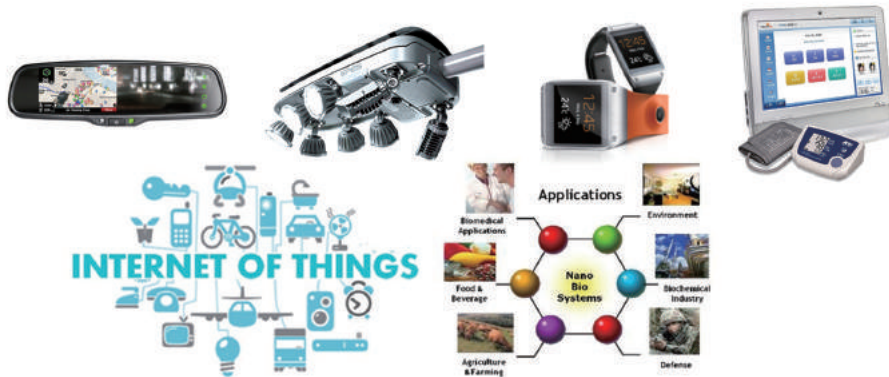
물품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랜딩기어용 단조품의 품목분류상 쟁점 또한 앞의 베어링 하우징용 중간제품과 마찬가지로 통칙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앞의 물품과 동일한 접근으로 우리나라의 관세당국은 이 물품을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완성된 항공기용 부분품과 동일하게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품목분류로 인하여 낮은 관세(0%)가 적용됨에 따라 업체에게 유리한 결과로 작용하였다.

무역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무역패턴도 다양해짐에 따라 동일한 품목분류 결정이 어떤 경우는 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 함으로써 통관과정에서의 예측 불가능성을 제거하는 일이다.

3. 융복합물품과 FTA

FTA 시대의 또 하나의 위험요소는 융복합 물품의 품목분류이다. 융복합은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미 존재하는 두 가지 이상의 기술과 용도를 하나의 제품에 구현하거나 한 가지 핵심 기술이 여러 분야에 응용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물품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거래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의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기보다는 다양한 단계의 부분품이나 중간제품을 수출입하면서 완제품을 생산해 나간다는 것이다. 즉, 중간제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수출하거나 중간제품을 수출한 후 완성된 최종제품을 수입하는 여러 형태의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최종 완제품이 융복합 물품인 경우 그 품목분류에 따라 원산지가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FTA 시대의 품목분류 위험요소(융복합 물품)〉

용복합 물품의 대부분은 그 주기능이나 주용도에 따라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주기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위험을 줄이는 차원에서

업계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용복합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 여러 기능 중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최대한 국내 생산기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FTA와 HSK 리스크

우리나라는 국제공통의 HS 6단위를 세분류하여 10단위 분류체계로 운영하며 이를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HSK, Harmonize System Korea, 기획재정부 고시)로 고시하고 있다. FTA 환경에서의 다차원적 관세구조에서는 HSK의 일관성이나 명확성도 매우 중요하다. FTA 이전에는 HS 6단위

이하에서는 대부분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HSK 10단위 품목분류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FTA 환경에서는 동일한 6단위 내에서도 10단위 HSK별로 세율이 다르며 그 체계 또한 FTA별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다음의 경우가 있다.

HSK		품명	FTA별 관세율 (2019년)
8481	80	그 밖의 기기	
	10	- 그 밖의 밸브	
	1010	-- 전기작동식	한중 4%, 한미 1.6%, 한호주 1.1%
	1020	-- 액압작동식	한중 0%, 한미 1.6%, 한호주 1.1%
	1030	-- 그 밖의 자동제어식	한중 0%, 한미 1.6%, 한호주 1.1%
	1090	-- 기타	한중 4%, 한미 0%, 한호주 0%

제8481호에는 밸브가 분류되며, 제8481.90-10호에는 기타의 밸브가, 그리고 그 이하의 10단위 코드에서는 4가지 종류의 밸브(전기식, 액압식, 그 밖의 자동제어식,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물품의 관세율은 FTA별로 제각각이며 일관성도 없다. (한미 FTA와 한호주 FTA에서는 기타 물품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한중 FTA는

반대로 기타 물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각 10단위 용어해석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제8181.80-1030호의 “그 밖의 자동제어식”이란 무엇이며, 제8481.80-1090호의 기타가 “수동식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실제로 있었다.)

여기에 매 5년마다 HS 품목분류표의 개정을 수용하거나 ITA 확대협상 등 새로운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율을 반영하기 위하여 HSK가 개정되는 경우 세율 체계는 한결 더 복잡해진다. 2017년 HS 개정에 따라 제4011호와 제6907호·제6908호 구조는 매우 간단해졌지만 HSK 레벨에서는 2017년 HS 개정 이전의 구조를 그대로 연계하면서 10단위 코드를 다시 bar(-)로 세분류하면서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또한 2017년 HS 개정시 MCO IC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 제8542호의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제8542호 내의 HS 6단위 분류체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HSK에서는 2017년 HSK 개정시 MCO IC의 용도나 이전 HS에서의 분류 기준에 따라 세분류하면서 수십 개의 10단위 코드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 10단위 코드가 FTA 협정과 연계되면서 사실상 수백 개의 코드가 새로 생겨난 셈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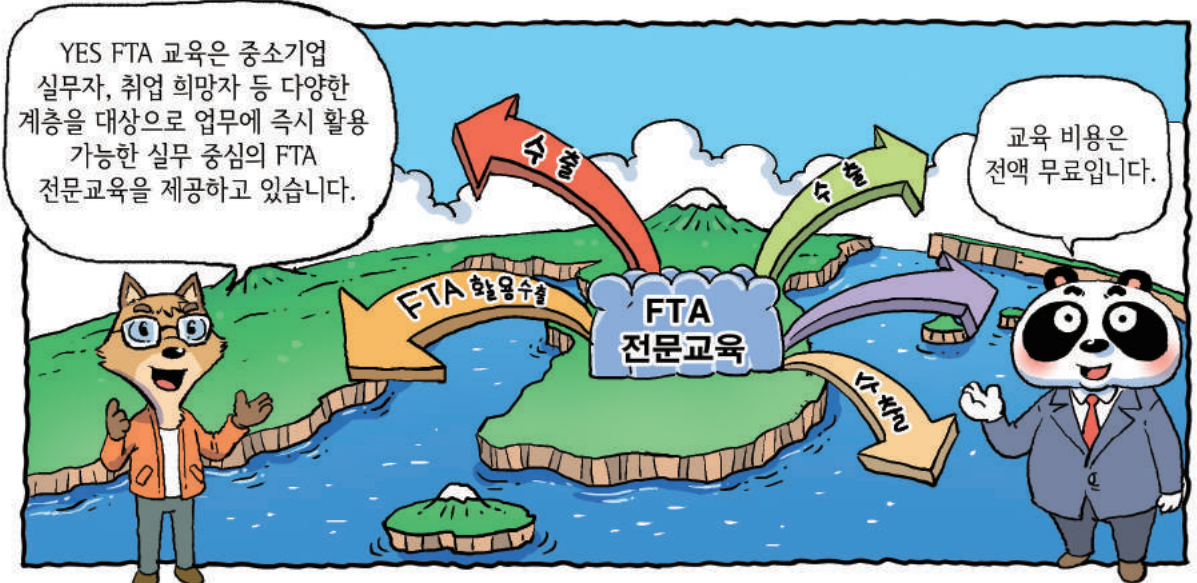
이는 국제적인 6단위 기준에서는 전혀 쟁점이 없는 물품에 대해 국내 10단위 코드를 부여하면서 굳이 다시금 불필요하고 어려운 분류를 통하여 10단위 코드를 확정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HS 품목 분류표 개정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사용자(수출입자, 정부기관, 통계학자 등)에게 명확하고 간편한 분류체계를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HSK는 오히려 개정될 때마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분류체계를 만들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입 업자는 물론, 이 HSK를 토대로 품목번호를 부여해야 하는 관세당국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향후 HSK를 개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FTA 협상을 하면서 연도별 관세철폐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좀 더 간결하면서 쉽고 명확한 분류체계와 세율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관련 기관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FTA 환경에서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운 세율체계로 업계와 정부당국 스스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다.



YES-FTA 교육 소개





FTA TRADE REPORT



해외통관애로

일본의 통상환경 및 통관제도

신재형 | 일본 관세관



신재형
일본 관세관

일본의 통상환경 및 통관제도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은 나라이다. 특히, 세관 용어, 절차 등은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하리만큼 비슷하지만, 실제 통관절차에서 생각과 달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 따라서 사전에 일본의 제도를 충실하게 파악하고 충실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놓아야 통관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세청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주일본 대사관 또는 KOTRA, aT 등 다양한 기관과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란다.



I. 들어가며

일본은 세계적인 거대 소비시장이며, 우리 나라와 바로 이웃하고 있는 나라로 중국과 더불어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역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양국 간 정치외교적 사안에 따라 교역량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2018년 무역통계를 기준으로 일본은 한국의 5대 수출국이자 3대 수입 국으로 일본은 중요한 교역대상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신뢰제일주의라는 특성은 진출 초기에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지만, 진출에 성공하게 되면 다른 나라 시장 개척의 보증수표가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보이지 않는 통관장벽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 세관의 자의적인 법규정 해석은 거의 없는 편이나 정확한 정보가 수출입기업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일본 진출을 위해서 수출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신속한 통관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일본 수입통관 제도의 개요 및 여러 가지 제도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수입물품은 국내에 반입하려고 할 때 원칙적으로 ① 화물이 보세구역에 도착한 때 ②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관서에 ③ 수입(납세)신고를 행하여 세관에서 심사를 하고, 세관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검사를 마친 후에 관세, 내국세 및 지방소비세 납부 등 ④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 비로소 수입 허가를 받고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⑤ 관세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에 의해 수입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만 한다.

이 일련의 절차를 행함에 있어서 세관은 수출입 금지품목을 수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수입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고사항 이외의 물품이 반입되었는지 등 여러 가지 착안사항에 이루어져 심사 및 검사를 행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각 단계별로 통관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 및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예비심사제도

예비심사제도란, 수입하려는 물품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 또는 수입 관련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수입 신고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의 심사 또는 검사 여부를 사전에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①번 요건의 완화)

동 제도는 신선물품, 거래처 납기가 촉박한 물품, 크리스마스·명절용품 등 판매 기회가 한정된 물품, 타 법령에 의한 절차가 필요한 물품, 수입신고된 물품의 종류가 많은 경우 등 서류 심사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에 활용하면 유용하다. 예비심사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물품의 도착 전에 서류 심사를 행할 수 있고, 타 법령에 의한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세관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검사 여부가 수입신고 이전에 판명되므로 화물 인수 일정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단, 검사 여부를 사전에 통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내용이 변경될 수는 있다.)

예비심사 제도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을 위해서는 예비신고서(수입신고서), 인보이스, 기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물품의 장치가 예정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는 수입신고 예정일의 관세환율이 공시되는 날 또는 예비신고 대상 물품의 선하증권(항공의 경우 AWB)이 발행되는 날 중 늦은 날이다.

2. 수출입신고관서 자유화 제도

수출입신고관서 자유화 제도는 AEO 사업자(수출자, 수입자, 통관업자)가 수입물품이 장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관서 이외의 관서에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번 요건의 완화) 즉, 수출입자 또는 통관업자 중 한 쪽이 AEO 사업자인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수출자 또는 일본의 수입자가 AEO인 경우, 혹은 수입신고를 대행해 주는 통관업자가 AEO인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동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NAACS(일본의 수출입 및 항만 관련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면 제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 제도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3. 사전교시제도

사전교시제도는 수출입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야인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감면세의 4개 분야에 대해 세관이 사전에 조회신청을 받아 회답해주는 제도이다. (③번 요건 관련)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전에 과세가격의 확실성을 기할 수 있고, 수입통관 시 보다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사전교시제도는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해 조회를 요청하고, 세관으로부터 문서 형태로 회답을 받도록 하고 있다. 동 회답서를 수입통관 시 제출하게 되면



법령 등에 개정이 있지 않은 이상 회답내용을 존중하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답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세관은 조회신청이 있는 후 원칙적으로 30일(관세평가는 9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회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 수입허가 전 화물반출제도

수입허가 전 화물반출제도는 수입허가를 받기까지 장시간 소요될 경우 판매기회를 잃어버리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허가를 받기 전에 물품을 먼저 반출할 수 있는 제도(BP ; Before Permit)이다. (④번 요건의 완화) 다른 제도와 구별되는 점은, 동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세상당액의 담보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동 제도는 귀중품·위험물품, 변질·손상 우려가 있어 빠른 반출이 필요한 물품, 전시회 등 출품을 위한 것으로서 시간적 제약이 있는 물품, FTA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수출입금지품, 타법령 허가·승인 등 필요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등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없다.

5. 세관에서 확인하는 수입관계 타법령 개요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경제, 보건위생 또는 풍속을 저해하는 등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법령에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어떤 나라든 이러한 사항은 동일하겠지만, 일본 역시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타법령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실제 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의 상당수는 타법령의 허가·승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숙지하여 통관 절차 시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⑤번 요건 관련)

특히, 일부 법령에서는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

【일본 관세법 제70조, 관세법 기본통달 70-3-1】 (주요사항 발췌)

법령명	주요 품목	주관부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수입무역관리령	수입할당품목(청어 등) 수입제한품목(고래 등) 사전확인품목(백신 등)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관리과
조수보호, 관리 및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조류 및 그 가공품, 짐승 및 그 가공품, 조류의 알	환경성 자연환경국 야생생물과 조수보호관리실
독극물단속법	독극물	후생노동성 의약생활위생국 의약품심사관리과
의약품, 의약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지정약물, 동물용의약품 등	후생노동성 의약생활위생국 감시지도·마약대책과
수산자원보호법	잉어, 금붕어 기타 붕어류, 장어 등	농림수산업성 소비안전국 축수산안전관리과 수산안전실
비료단속법	비료	농림수산업성 소비안전국 농산안전관리과
농약단속법	농약	
설탕 및 전분의 가격조정에 관한 법률	설탕, 전분	농림수산업성 정책총괄관 지역작물과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	버터, 탈지분유, 연유 등	농림수산업성 생산국 축산부 우유유제품과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화학물질관리과
식품위생법	모든 음식물, 첨가물, 식기, 포장용기, 장난감 등	후생노동성 의약생활위생국 생활위생·식품안전기획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우제류, 말, 닭, 토끼, 소세지, 햄 등	농림수산업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노동안전위생법	유해물질(석면 등)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안전위생부 화학물질대책과

Ⅲ. 맺음말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은 나라이다. 특히, 세관 용어, 절차 등은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하리만큼 비슷하지만, 실제 통관절차에서 생각과 달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 특히 서류 심사, 검사 대상으로 자주 지정되는 경우 수출기업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지체되어 거래선으로부터 클레임을 받거나 관계가 단절되는 등 교역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전에 일본의 제도를 충실하게 파악하고 수출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특히 가공식품, 식재료 등은 세관 측에서 생산공정, 원재료 등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실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놓아야 통관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주일본 대사관 또는 KOTRA, aT 등 다양한 기관과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란다.



FTA TRADE REPORT



FTA 100% 활용하기

FTA를 활용한 신남방지역으로의 시장 다변화 전략

전상윤 | 어센트글로벌 대표이사



전상윤

어센트글로벌 대표이사

FTA를 활용한 신남방지역으로의 시장 다변화 전략

1. 신남방정책이란?

신남방정책이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아세안(ASEAN)+3’ 및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문시 천명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의 구상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대외 정책 중 하나이다.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포함한 11개 국가를 신남방지역으로 정의하고 해당 국가들과의 상호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여 경제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것이 본 정책의 골자다.

또한, 본 정책을 통해 그동안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에 집중되어 왔던 대외 관계를 신남방 지역으로 확장함으로써 특정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정치, 경제, 외교적 관계의 다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천명과 함께 기존 중화학,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서비스, 소비재 분야로의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 신남방지역 내 국내 기업 동향

정부의 공식적인 신남방정책 공표 이전부터 일부 국내 민간 기업들은 신남방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현재 신남방지역은 총 인구가 약 20억 명(아세안 10개국 약 6.5억 명, 인도 약 13억 명)에 이르고, 한국과의 교역 비중에 있어서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비중이 높은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여기서는 최근 신남방지역에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S사의 사례를 통해 신남방 시장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 짧게 엿보고자 한다.

최근 B제품으로 해외에서 더 잘 알려져 있는 S사는 1961년에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라면을 생산한 대표적인 국내 식품기업 중 하나로, 1972년 유럽 및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미화 250만불의 수출을

달성하고 1980년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전후 한국 경제의 발전사와 함께 한 기업 중 하나이다. 다만, 1980년대 후반 우지 파동과 1997년 IMF를 겪으면서 결국 화의 절차에 들어가고, 2005년에야 화의 절차가 종결되어 경영 정상화에 나서게 된다. 그 후, 약화된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한 신제품 개발에 주력한 결과 2012년 매운 맛을 표방하는 B제품을 출시하게 된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B제품 출시 이후 S사의 실적은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출의 경우 2015년 300억 원 초반에서 2017년 2,000억 원을 넘어섰고, 금년에는 총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기업 재무정보(2015-2018)】

(단위 : 억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매출	2,909	3,593	4,585	4,694
영업이익	71	253	433	552
수출액	307	931	2,052	2,001
수출 비중	10.6%	25.9%	44.8%	42.6%

(출처 : 금융감독원 Dart, 회사 사업보고서)

이러한 비약적인 수출 증가에 대한 S사의 성공 비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한 제품 개발 및 기획, 둘째, 신남방지역인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발굴, 셋째, 무슬림 시장을 겨냥한 선제적인 할랄 인증, 마지막으로 한-아세안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들 수 있다.

첫째, S사는 신제품 개발 시 제품 기획 초기부터 성장이 정체된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제품의 효율적인 현지화를 꾀하였다.

둘째, 동남아 국가의 시장 발굴과 관련하여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K-Food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유통망을 확보한 거래선을 발굴함으로써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셋째, S사는 동남아시아 무슬림 시장을 겨냥하여 B제품의 할랄인증을 진행하고 인증 제품군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할랄(HALAL)이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할랄 인증이 주로

요구되는 분야는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산업이 이에 해당된다. 신남방지역 내 이슬람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이나, 인도와 태국의 경우도 총인구의 각각 약 14%와 5%가 이슬람 교도로 알려져 있어 신남방지역 내 할랄 시장의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S사는 2012년 B제품 최초 출시 이후 2014년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에서 교차 인증이 가능한 한국이슬람 중앙회(KMF)의 할랄인증을 받은 바 있고, 2018년 가을에는 국내 라면 생산업체 최초로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기관인 MUI로부터 할랄인증을 받았다. 할랄인증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의 적극적인 현지 유통이 가능해졌고, 신남방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무슬림 고객들도 같이 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S사는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등 신남방국가와 체결된 FTA를 활용하여 직, 간접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FTA가 체결한 국가들에 수출을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 후 현지 통관 시 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고 이러한 관세 혜택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3. 신남방국가들과의 FTA 현황 및 활용전략

(1) 한-아세안 FTA 현황

한-아세안 FTA의 경우, 2004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2007년 6월 상품 협정, 2009년 서비스 협정 및 투자 협정이 순차적으로 발효된 바 있다.

현재 아세안 10개국의 모든 국가에서 발효되어 있는 협정은 상품 협정 뿐이며, 국가별 및 협정별로 발효 연도가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아세안 FTA 분야별 협정 현황】

국가	상품 협정	서비스 협정	투자 협정	상품 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
말레이시아	2007년 6월	2009년 5월		2016년 7월
싱가포르	2007년 6월	2009년 5월	2009년 9월	2016년 4월
인도네시아	2007년 6월			2018년 12월
미얀마	2007년 6월	2009년 5월		2016년 2월
베트남	2007년 6월	2009년 5월	2009년 9월	
필리핀	2008년 1월	2009년 5월		2016년 7월
브루나이	2008년 7월	2009년 5월		2017년 8월
라오스	2008년 10월			2016년 6월
캄보디아	2008년 11월			2017년 8월
태국	2010년 1월	2010년 1월	2009년 9월	2016년 1월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www.fta.go.kr)

(2) 개별 FTA 체결 현황

현재 한국 정부는 기존 한-아세안 FTA와 별도로 신남방지역의 국가들과 개별적인 FTA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아세안 FTA에서 개별 국가들과 협의되지 못한 사안들을 개별 FTA에서 구체화함으로써 교역상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은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개별 FTA 국가별 협정 현황】

국가	경제협정	현재 상황
싱가포르	FTA	2004년 11월 타결, 2006년 3월 발효
인도	CEPA	2008년 9월 타결, 2010년 1월 발효
베트남	FTA	2014년 12월 타결, 2015년 12월 발효
인도네시아	CEPA	2019년 11월 타결
필리핀	FTA	2019년 4월 FTA 추진 합의, 2020년 1월 제5차 협상 개최
말레이시아	FTA	2019년 6월 FTA 개시 선언, 2019년 9월 제3차 협상 개최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www.fta.go.kr)

(3) 기업별 활용전략

신남방지역의 국가들과 수출입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가 한-아세안 FTA 및 개별 국가와 체결된 FTA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관세법이나 관세청 관세상담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관세청 외에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의 등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아세안 FTA와 개별 FTA가 동시에 체결된 국가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유리한 FTA를 적용하면 된다.

상품의 경우, 거래를 고려하는 상품의 세번부호(HS Code)와 해당 세번부호의 FTA 상 관세율을 우선 확인해 봐야한다.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 민감도를 고려하여 상품 협정 상 일반품목,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세번부호와 관세율이 확인되면 적용되는 FTA에서 요구되는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한다.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방법에 있어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의 방식이 있으나, 신남방지역 국가별과 체결된 FTA의 경우 기관발급만을 허용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 관세청 및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세부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보통은 일반기준을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서 품목별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품목별기준은 보통 농수산물에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과 공산품에 적용되는 실질적변형기준으로 구분된다.

실무상으로는 실질적변형기준 중 원재료의 가공을 통해 완제품의 세번이 변경되는 세번변경기준은 쉽게 적용하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개별 매입 원재료의 가격 등을 확인하여 실제 부가가치 비율을 산정해야 하는 만큼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관세 혜택을 통한 장기적인 가격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4. 결론

신남방지역의 국가들은 인구, 성장률 등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척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다만, 언어, 문화 및 종교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개별 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며, 이에 따라 단기간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신남방지역으로의 시장 다변화를 기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이미 신남방지역으로의 진출하여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존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함께 한-아세안 FTA를 포함하여 신남방지역 국가들과 체결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장기적인 거래 기반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정부도 이와 관련된 홍보 및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움직임에 발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FTA TRADE REPORT



FTA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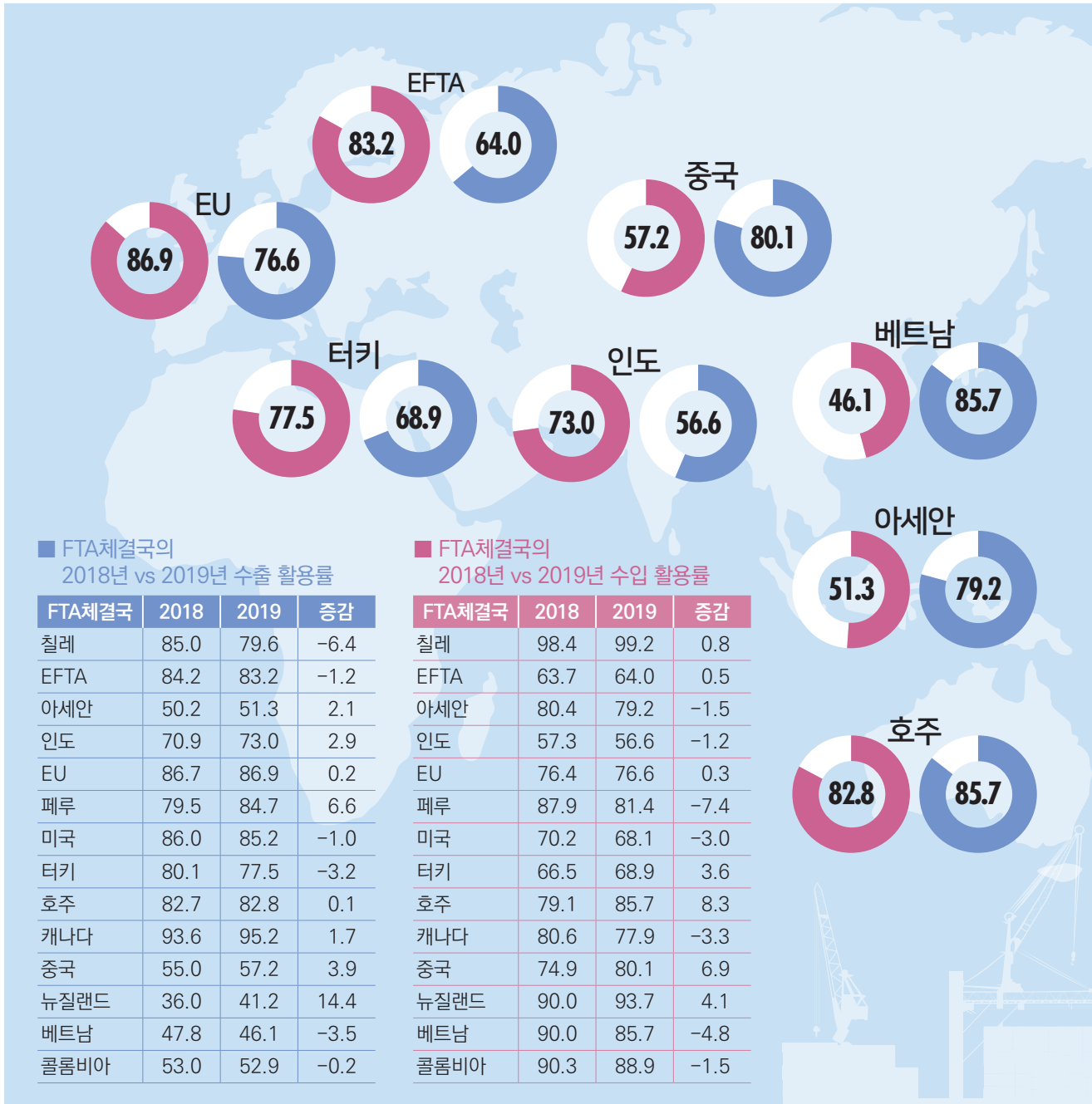
우리나라 FTA 체결국 활용현황(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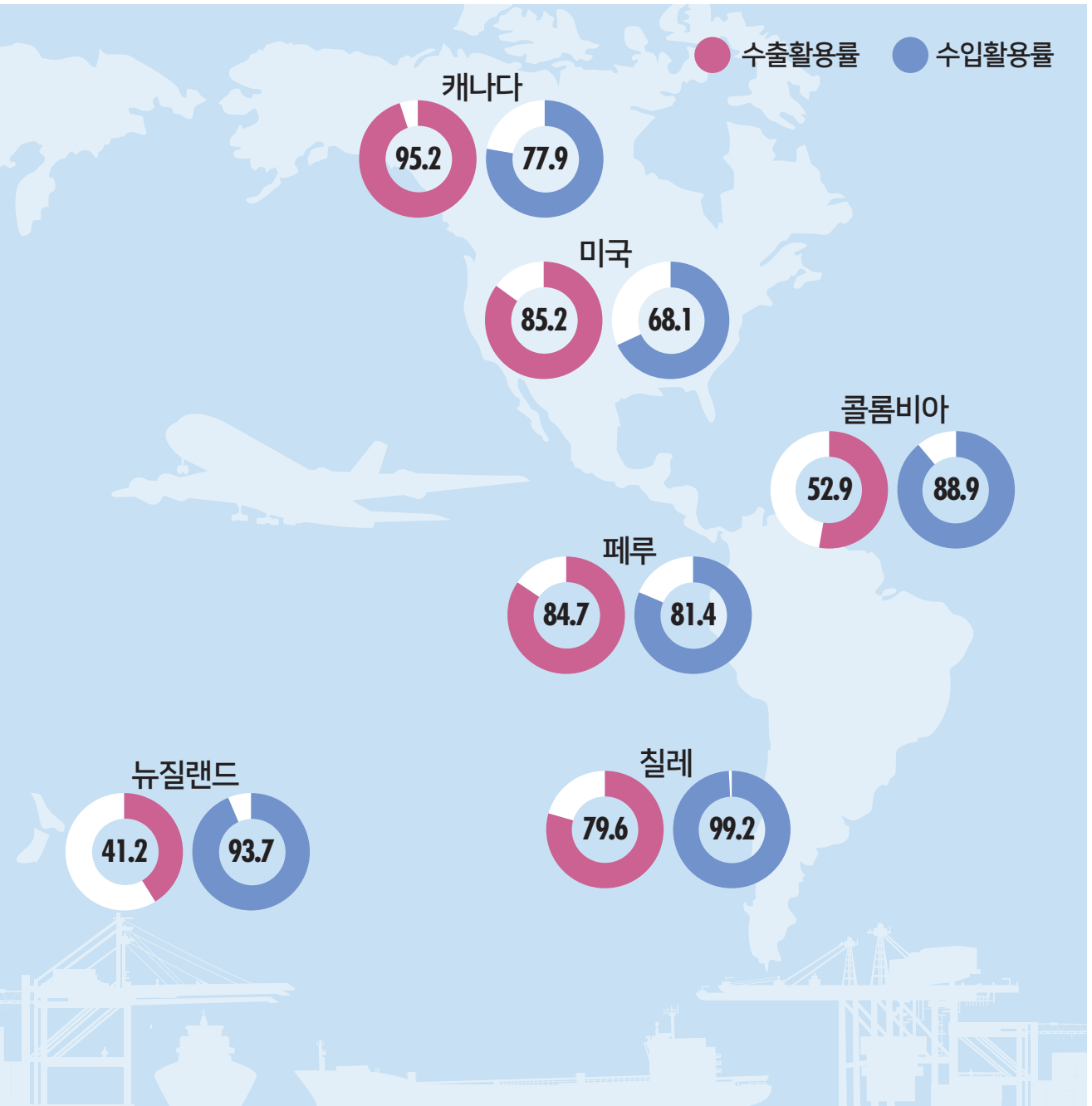
2018년 vs 2019년 수출입 증감품목(FTA 체결국)

한눈에 보는 2018년-2019년

주요 산업별(MTI 3단위 기준) FTA 활용 수출입 비교

우리나라 FTA 체결국 활용현황(2019년)





2018년 vs 2019년 수출입 증감품목(FTA 체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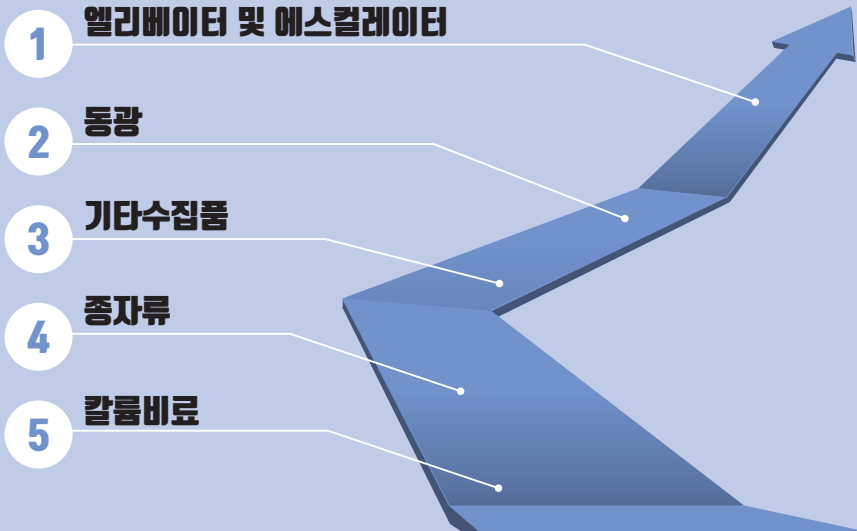
FTA체결국 중 2018년 대비 2019년 가장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FTA체결국 중 2018년 대비 2019년 가장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FTA체결국 중 2018년 대비 2019년 가장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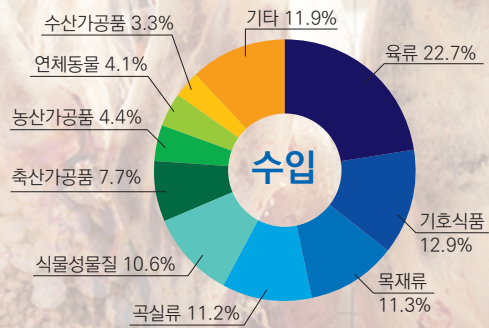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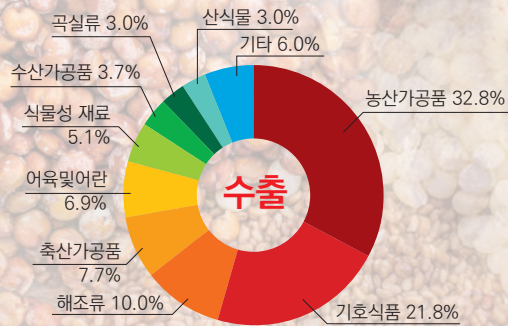
FTA체결국 중 2018년 대비 2019년 가장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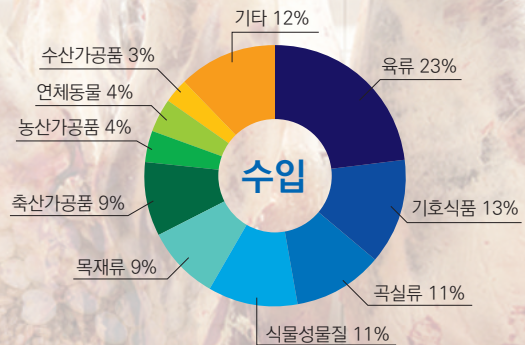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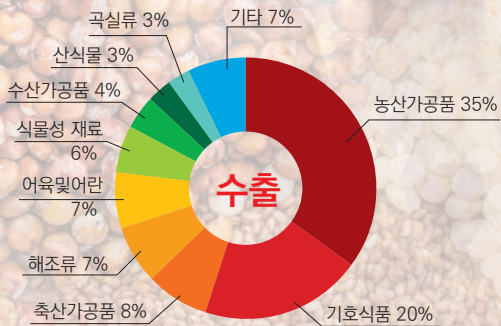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2018년-2019년 주요 산업별(MTI 3단위 기준) FTA 활용 수출입 비교

농림수산물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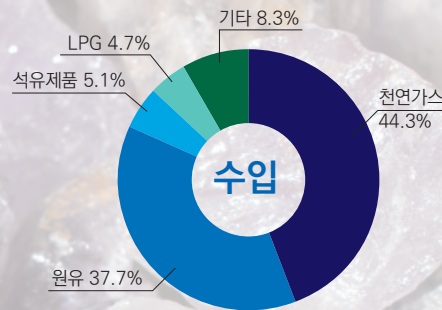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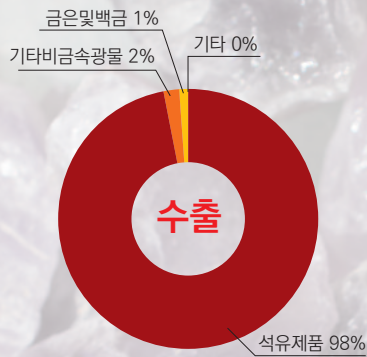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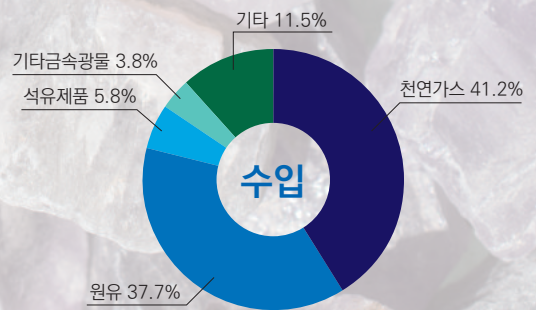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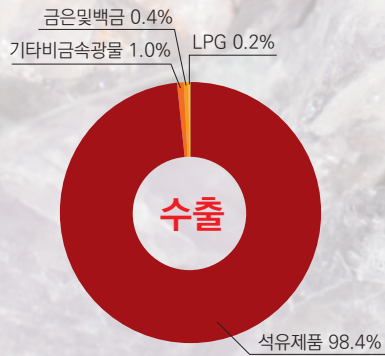


광산물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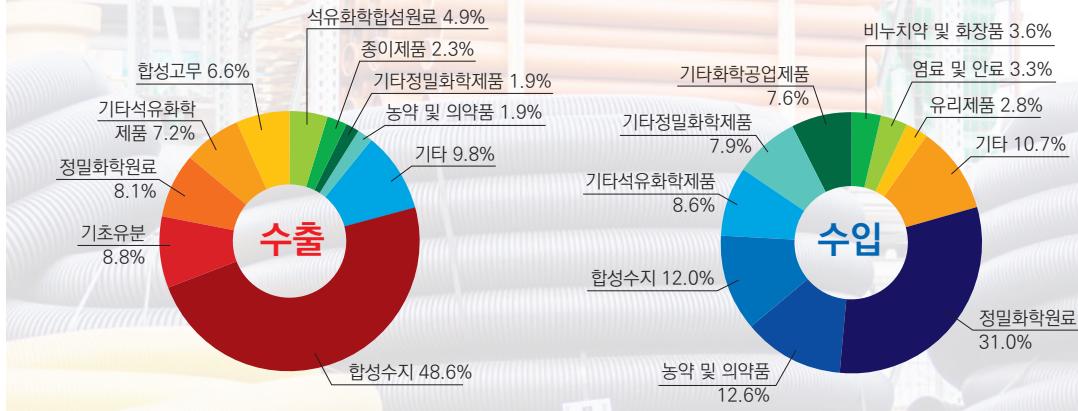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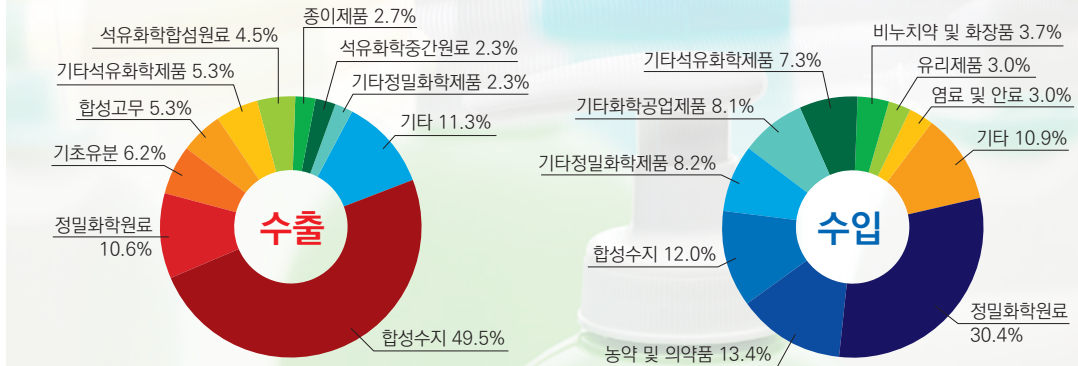


화학공업제품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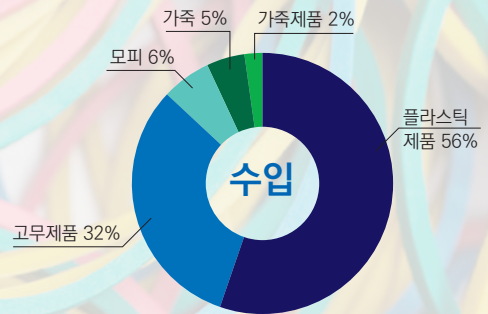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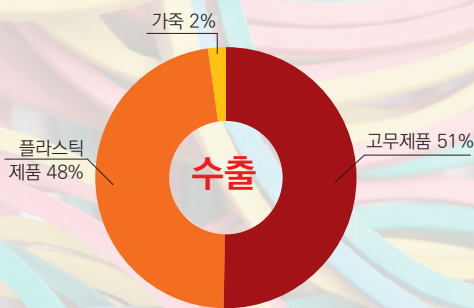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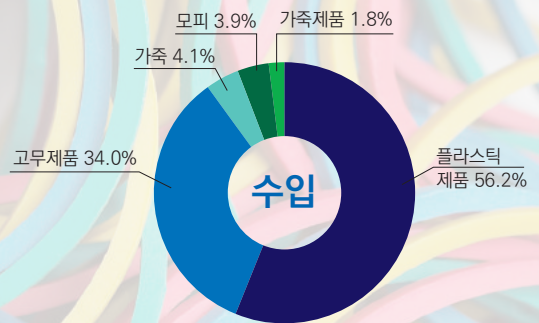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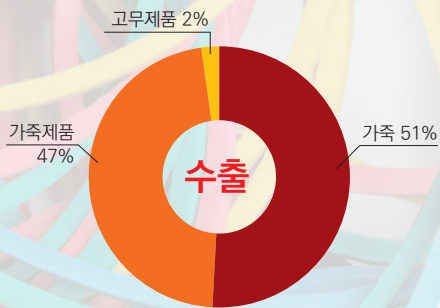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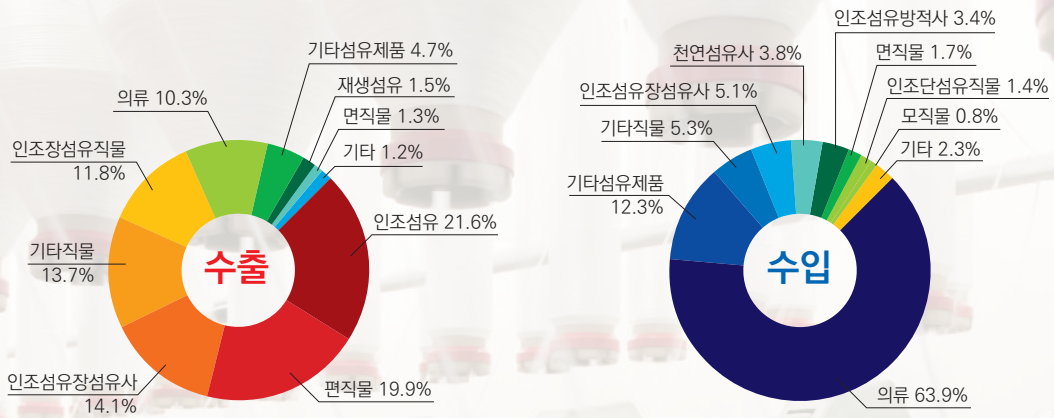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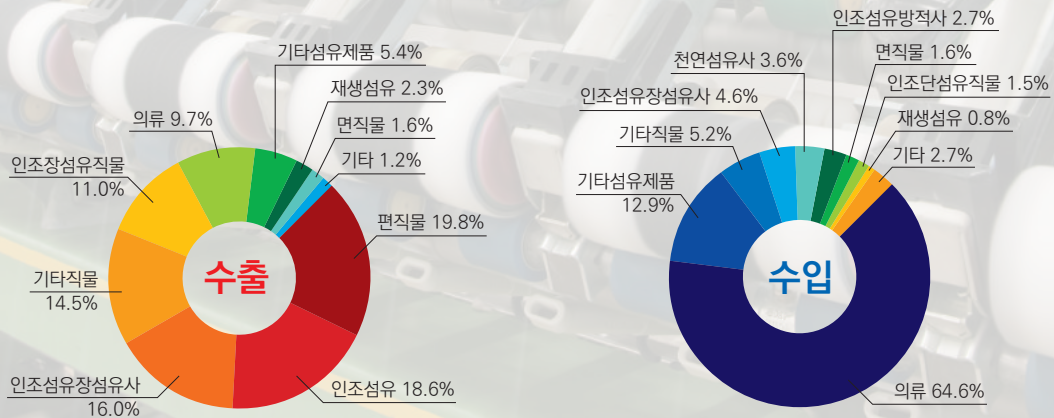


섬유류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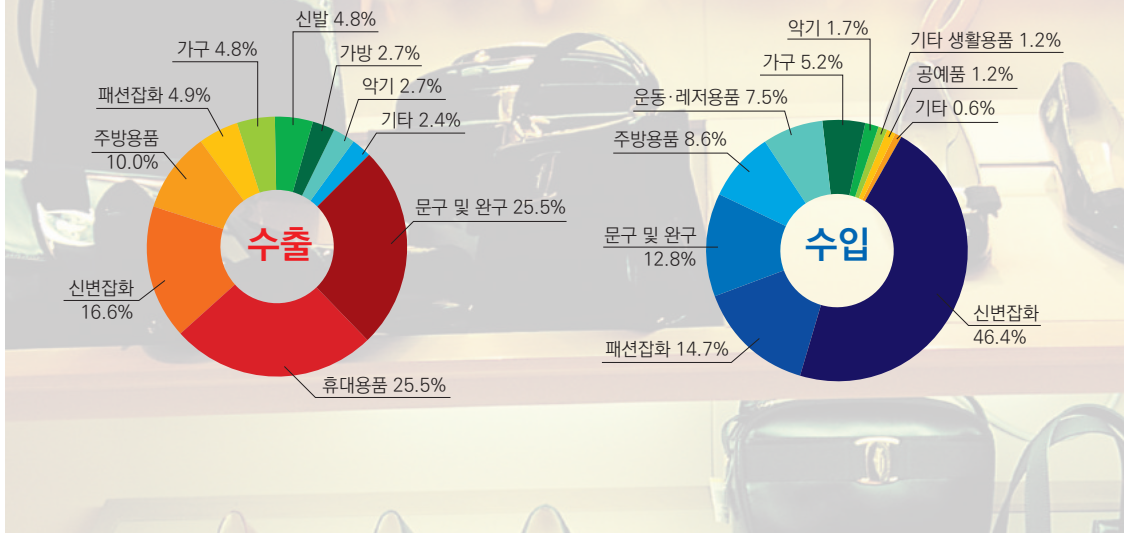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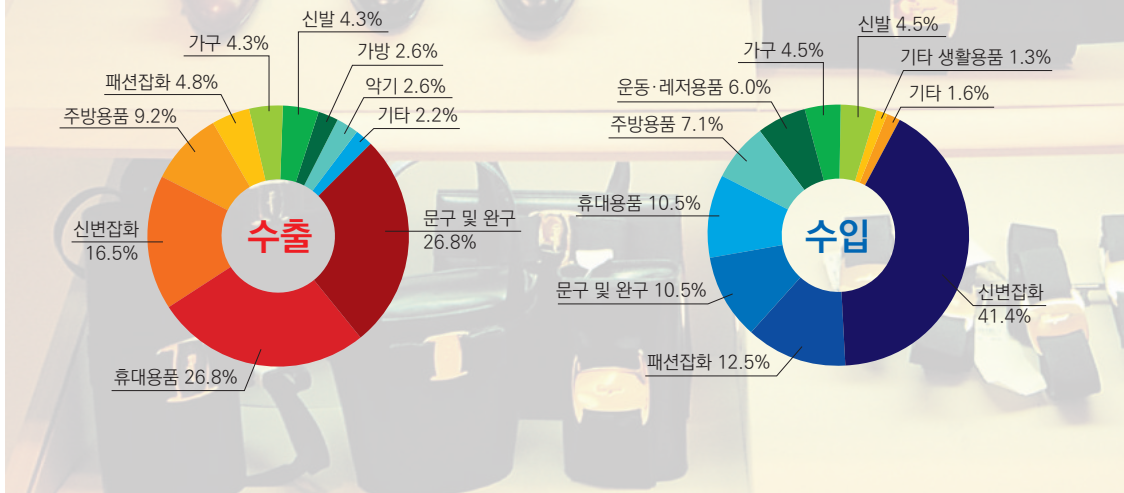


생활용품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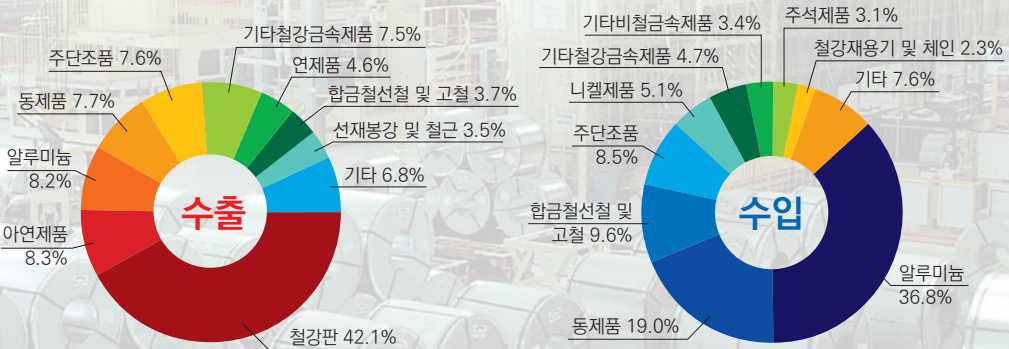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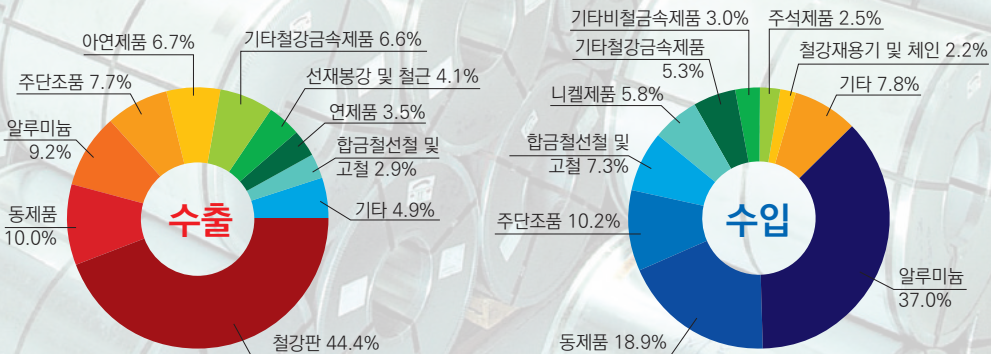


철강금속제품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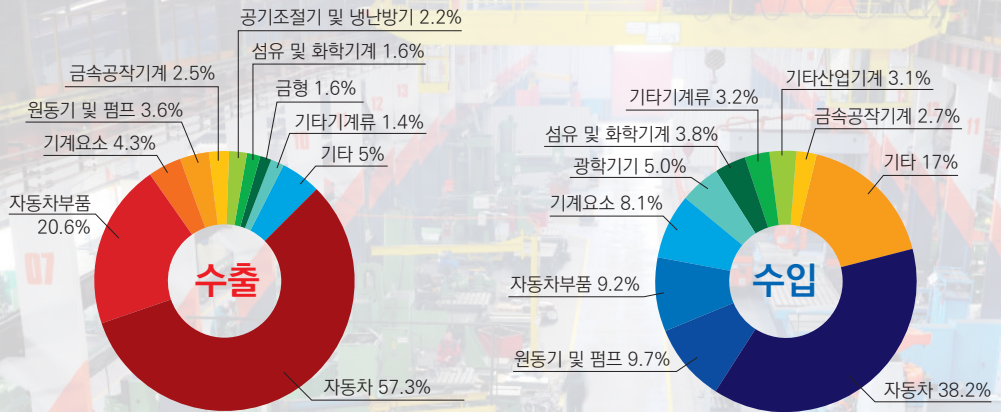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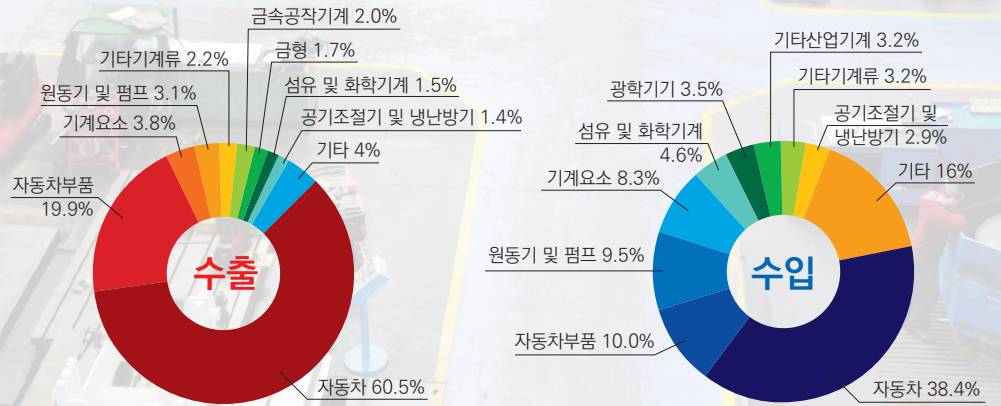


기계류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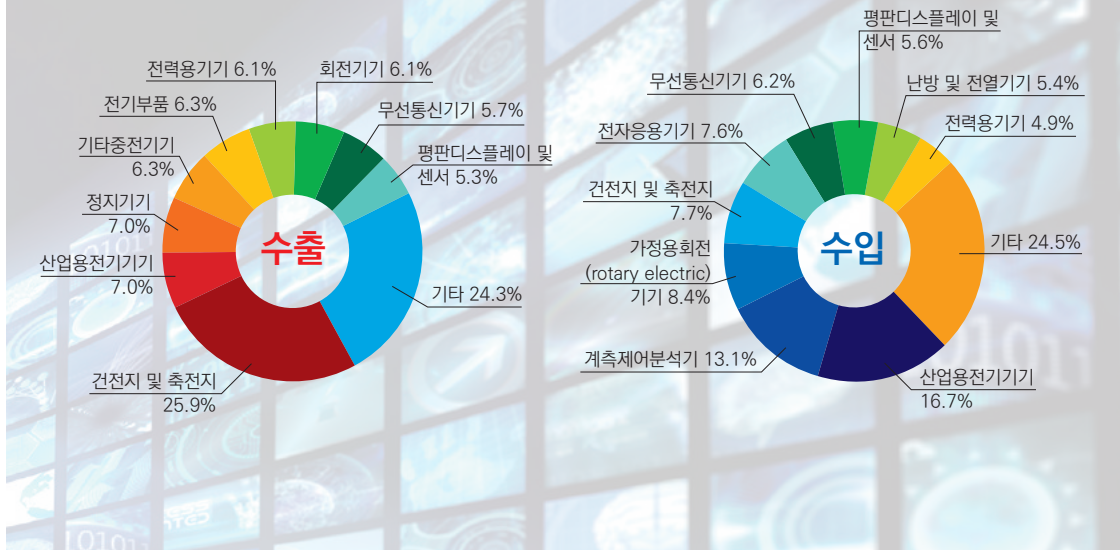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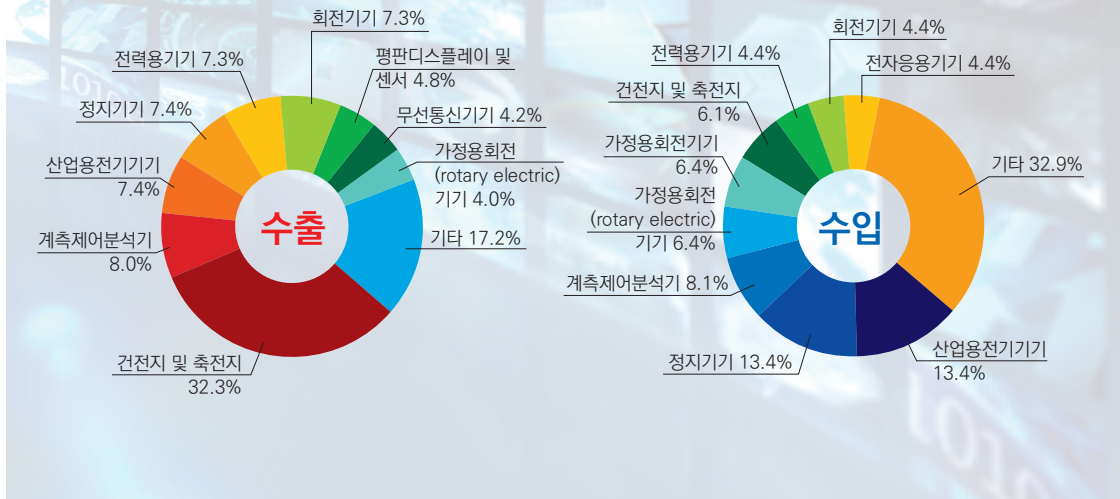


전자전기제품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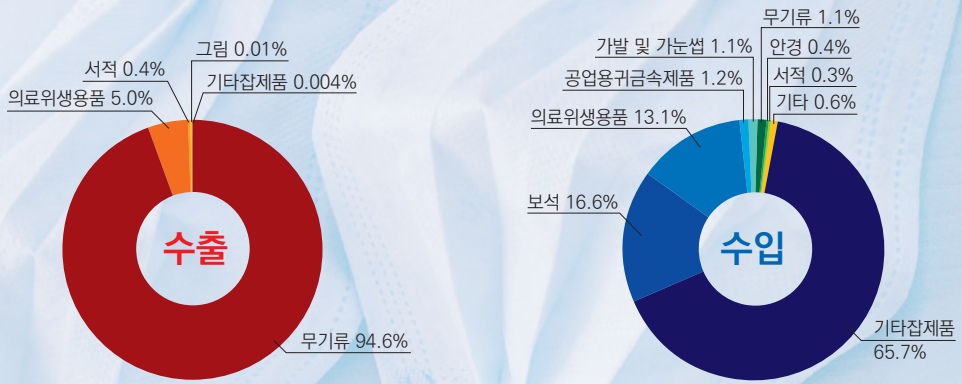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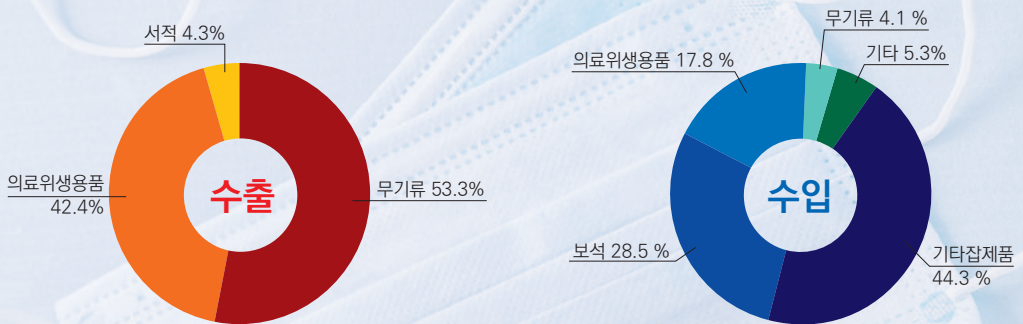


잡제품

2018



2019



FTA TRADE REPORT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FTA원산지상품의 관세품목분류 : 달걀과 천연꿀

김용태 | 관세법인 탐스(대산지사) 관세사 /
컨설팅 & 연구본부장, 법학박사

FTA원산지상품의 관세품목분류 : 달걀과 천연꿀



김용태

관세법인 탐스(대산지사) 관세사 /
컨설팅 & 연구본부장, 법학박사



계란이라고도 하는 달걀은 그 겉이 단단한 껍데기(난각)에 싸여 있고, 그 안에는 2층의 속껍질이 있다.¹⁾ 겉껍데기에는 작은 구멍이 많아서 그 구멍을 통하여 호흡을 한다. 또 시간이 지나면 이 구멍을 통하여 이산화탄소와 수분이 증발하고, 미생물이 침투하여 내용물이 빨리 썩게 된다. 2층으로 된 속껍질 사이의 한쪽에는 공기집이 있는데, 이 공기집은 갓 낳은 달걀일 때는 작았다가 시간이 지나 수분과 이산화탄소가 증발하면 차차 커진다.

달걀은 영양을 고루 갖춘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단백질의 아미노산 조성은 영양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 흰자는 단백질이 주성분이고, 노른자는 지방과 단백질이 주성분이다. 근래에는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하여 먹기를 꺼리지만 노른자에는 비타민 A·D·E·B2와 철분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건강한 성인은 하루 한 개 정도는 먹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한다. 단지 무기질 중에 인이 칼슘보다 많이 들어 있는 강한 산성 식품이고 비타민 C가 없는 것이 영양상 부족한 점이라고 한다.



꿀에는 벌꿀(천연꿀)과 당밀(인조꿀)²⁾이 있다. 벌꿀은 오랜 옛날에 자연에서 얻은 인류 최초의 식품으로 그리스 제신(諸神)들의 식량이었다고 하며, 로마인은 꿀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여겼다고 한다. 그 후 인류사회에서 꿀을 약용으로 하는 한편 사체(死體)의 방부제, 미라 제작, 과실의 보존 등에 사용하여 왔다.³⁾

달걀과 천연꿀은 관세율표상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의 분류체계에 속하는 제04류(세번 제0401호부터 제0410호까지)에서 분류된다. 관세율표 제4류(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에서 달걀과 천연꿀이 분류되는 해당 품목번호는 아래의 표와 같다.

품목번호	품명(Description)	분류조건·범위
0407	새의 알	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8	새의 알	껍질이 붙지 않은 것
	알의 노른자위	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찢은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9	천연꿀	
041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1) 속껍질 안에는 흰자위(난백)이 있고 겉껍데기와 노른자위(난황) 주위에는 묽은 흰자위가 있으며 그 중간에는 된 흰자위가 있다. 노른자위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양쪽 끝이 알끈으로 고정되어 있다. 각 구성 물질의 비율은 껍데기 11%, 흰자위 58%, 노른자위 31%이다. 달걀은 평균 중량은 48~60g 정도이며, 중량에 따라 소란(43g 이하)·중란(44~51g)·대란(52~59g)·특란(60~67g)·왕란(68g 이상)으로 나뉜다.

2) 당밀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사당을 제조할 때 생기는 정제당밀(精製糖蜜)과 얼음사당을 제조할 때 생기는 얼음당밀이 있다. 이 당밀은 담황색의 투명한 점조액(粘稠液)이며 보통 수분 20~30%, 당분 60~70%, 회분(灰分) 5~10%, 유기 비당분 2~3%의 비율로 함유되어 있다. 이 당액은 알코올·과자·잼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3)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옛날부터 벌꿀을 채집하여 귀한 약품 및 식품으로 사용하여 왔다. 최근에는 야생벌의 수효가 격감됨에 따라 꿀이 매우 귀해진 반면에 인공적으로 벌을 길러 꿀을 채집하는 양봉업이 발달되어 이른봄~늦가을까지, 남쪽은 제주도에서 북쪽은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벌통을 차에 싣고 꽃을 찾아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꿀을 생산하는데, 이 꿀은 야생벌의 꿀보다 당분과 질이 떨어진다.

1. 달걀

1) FTA 원산지상품의 인정요건

한-미 FTA에서 달걀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완전생산기준(WO)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그 상품은 원칙적으로 제4류가 아닌 다른 류(Chapter)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물품을 이용하여 한국이나 미국의 영역에서 가공되거나 획득되어야 한다. 즉,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CC기준인 품목번호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한-미 FTA PSR은 달걀의 생산에 이용한 비원산지 물품이 소호 제1901.90호⁴⁾와 제2106.90호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제4류가 아닌 다른 류(Chapter)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달걀과 같은 낙농품이 조제식품으로 변경하여 쿼터를 회피하려는 우회무역의 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비원산지 달걀을 수입하여 한국이나 미국의 영역에서 깨뜨려 획득된 흰자나 노른자 또는 이를 삶거나 말려서 가공된 계란제품도 품목번호 2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결정적으로 달걀은 닭이 알을 낳아 생산되기 때문에 제4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부터 달걀을 생산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한-미 FTA에서 달걀은 사실상 완전생산기준(WO)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아세안 FTA에서 달걀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한국이나 아세안 각 회원국(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PSR은 달걀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WO)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달걀만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세안 회원국에서 완전생산된 달걀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산국이 아닌 다른 아세안 회원국에서 수출된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터키 FTA에서도 달걀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달걀에 사용된 모든 재료가 한국이나 터키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이어야

4) 관세율표상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세번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된다.

5) 관세율표상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된다.

한다. 그러므로 한-터키 FTA PSR은 한-아세안 FTA와 마찬가지로 달걀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WO)을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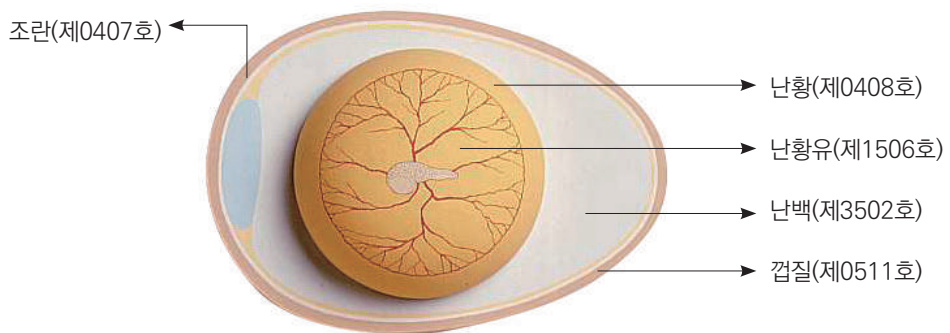
2) 관세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제0407호와 제0408호에는 조란(새의 알)이 분류될 수 있는데, 세번 제0407호에는 그 형체가 껍질이 붙은 것에 한하여 분류될 수 있고, 그 저장상태가 신선하지 않거나 보존처리 또는 조리한 상태를 벗어난 조란은 분류될 수 없다.

껍질이 붙지 아니한 조란(새의 알)과 바로 앞에서 설명한 세번 제0407호에 분류될 수 없는 저장

상태의 조란(새의 알)은 세번 제040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세번 제0408호에는 난황도 분류될 수 있는데, 난황의 저장상태가 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보존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난황은 세번 제0408호의 분류범위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난황의 저장상태에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 여부는 세번 제0408호의 분류 범위에서 배제되는 조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 난황(egg yolks)은 알의 노른자위로서 알의 세포질 안에 있는 영양물질로 단백질, 지질, 당류, 비타민, 무기 염류 따위를 함유하고 있다. 조란의 구성성분별 관세율표상 품목번호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조란의 구성성분별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한편, 오리알(Duck Egg, cooked)을 껍질이 있는 체로 삶아 간장에 넣어 맛을 낸 후 진흙에 싸는 것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에서 관세당국은 분류대상

물품을 조리한 오리알로 보아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7호를 근거로 HSK 제0407.00-9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⁶⁾

6) 관세청 감정22701-1608, 1989.05.31.

2. 천연꿀

1) FTA 원산지상품의 인정요건

한-미 FTA에서 천연꿀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완전생산기준(WO)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그 상품은 원칙적으로 제4류가 아닌 다른 류(Chapter)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물품을 이용하여 한국이나 미국의 영역에서 가공되거나 획득되어야 한다. 즉,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CC기준인 품목번호 2단위 변경기준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한-미 FTA PSR은 천연꿀의 생산에 이용한 비원산지 물품이 소호 제1901.90호와 제2106.9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제4류가 아닌 다른 류(Chapter)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달걀의 원산지결정기준과 마찬가지로 낙농품이 조제식품으로 변경하여 쿼터를 회피하려는 우회무역의 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천연꿀은 꿀벌이 꽃에서 빨아들여 벌집 속에 모아 두는 달콤하고 끈끈한 액체를 채취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제4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부터 천연꿀을 생산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한-미 FTA에서 천연꿀은 사실상 완전생산기준(WO)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호주 FTA에서 천연꿀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완전생산 기준(WO)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그 상품은 원칙적으로 제4류가 아닌 다른 류(Chapter)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물품을 이용하여 한국이나 호주의 영역에서 가공되거나 획득되어야 한다. 다만, 한-호주 FTA PSR은 제4류가 아닌 다른 류(Chapter)의 적용범위에서 한-미 FTA PSR과 같이 소호 제1901.90호의 것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호주 FTA에서 천연꿀은 역시 완전 생산기준(WO)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캐나다 FTA에서 천연꿀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한-미 FTA 및 한-호주 FTA와 마찬가지로 완전생산기준(WO)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그 상품은 원칙적으로 제4류가 아닌 다른 류(Chapter)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물품을 이용하여 한국이나 캐나다의 영역에서 가공되거나 획득되어야 한다. 비록 한-캐나다 FTA PSR에는 제4류가 아닌 다른 류(Chapter)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는 소호가 없지만 한-캐나다 FTA에서도 천연꿀은 역시 완전생산기준(WO)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관세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될 수 있다. 천연꿀에 인조꿀을 섞어 혼합한 꿀은 이미 천연꿀의 개념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세번 제1702호의 용어에서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 세번 제0410호에서도 분류될 수 없으며, 천연꿀을 가공한 ‘꿀 조제품’도 조제식품의 특정세번인 제2106호에 분류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번 제0410호의 분류범위에서 배제된다.

한편, 제04류의 맨 마지막에 설정된 세번 제0410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이 포괄적으로 분류되어 “식용에 적합한 동물성 생산품”의 잔여호(residual heading)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연꿀 상품의 관세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만일 천연꿀과 녹용추출물 분말을 혼합한 조제품(Blend of honey and deer velvet powder)인 경우 그 물품을 천연꿀로 보아 HSK 제0409.0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벌꿀 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2106.90-9091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된다.⁷⁾

이와 같은 쟁점이 제기된 품목분류 사례⁸⁾에서 쟁점물품을 천연꿀로 보아 HSK 제0409.0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 찬반 논거는 이렇다.

쟁점물품은 천연꿀에 녹용추출물(Deer velvet powder)이 첨가되어 맛과 냄새 및 색깔 등이 천연꿀과는 다른 꿀 조제품으로서 천연꿀의 특성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능 및 용도면에서도 천연꿀과는 상이한 물품이다.

또한 쟁점물품의 가격을 살펴보면, 천연꿀은 1Kg당 US \$2.95이나, 쟁점물품은 1Kg당 US \$15.13로서 천연꿀보다 약 7배나 고가이고, 첨가물인 녹용추출물(Deer velvet powder) 1kg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건조녹용 15.42Kg이 소요되며, 성분별 가격비가 녹용추출물이 66.1%, 천연꿀이 19.3%이나 통관지세관장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을 잘못 해석하여 꿀 조제품에 대한 분류기준을 천연꿀의 중량이 2% 이상인 경우에는 HS 제2106호에 분류하고, 천연꿀의 함량이 2% 미만인 경우에는 HS 제0409호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용도·구성성분·가격비 등을 감안할 때, 녹용분말 2%를 첨가한 꿀 조제품 보다 천연꿀의

7) 유사한 사례로 관세청 심사정책과-100002(2004.05.10.)호가 있다.

8) 이 사례의 불복개요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11349-○○○호(2003.07.22)의 1건으로 Blend of honey and deer velvet powder(천연꿀과 녹용추출물 분말을 혼합한 조제품)를 HSK 제2106.90-9091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통관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하여 쟁점물품을 HSK 제0409.00-0000호(관세율 245.7%)의 천연꿀로 분류하여 2003.08.28. 차액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3.10.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06.26.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2004.06.30. 관세 88,439,830원, 부가가치세 8,843,980원, 가산세 19,456,750원 합계 116,740,560원을 경정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특성을 더 상실한 것으로서 HS 제0409호에 분류할 수 없고, HS 제2106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통관지세관장이 주장하는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에는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대해서 결정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천연꿀 99%에 녹용 추출물 1%가 첨가되었으나, 맛과 냄새가 천연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천연꿀이 분류되는 HSK 제0409.0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하여 재결청인 국세심판소(현재는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⁹⁾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 나에서는 “각호에 계기된 물질에는 당해물질과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통칙 3 나에서는 “혼합물은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천연꿀 조제품에 대한 분류규정이 없어 관세청은 천연꿀에 첨가된 물질의 함량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천연꿀 조제품으로 보아 HS 제2106호로 분류 결정(관세청 품목분류과 47281-306, 2003.04.09.외)하였고, 첨가물의 함량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천연꿀로 보아 HS 제0409호로 분류결정(중앙분석소 47260-7200, 2001.11.16.외)하고 있어 천연꿀 관련물품은 첨가물질의 함량 2%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세율표 제4부의 조제식료품(Prepared Foodstuffs)에 분류되는 물품에는 농·축·수산물에 같은 표 제1부(동물성 생산품) 및 제2부(식물성의 생산품)에서 규정하는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또는 일시저장처리 등의 가공정도를 초과하여 가공한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 것인 바, 쟁점물품은 천연꿀에 녹용추출물분말 1%를 단순히 혼합한 것으로서 위에서 열거한 가공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천연꿀의 조제품(Preparation)이 아닌 혼합물(Mixtures)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천연꿀의 혼합물로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 나호 및 같은 통칙 3 나호의 규정에 따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천연꿀로 보아 HSK 0409.0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취지에서 쟁점물품을 같은 호에 품목분류한 통관지세관장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쟁점과 유사한 최근의 관세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꿀(99.01%) 주성분에 홍삼농축액(0.99%)을 첨가하여 조제한 황색계 점조 액상을 수지제 팩에 포장한 상품(내용량 12.0g)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10857, 2017.

9) 국심2004관0185, 2006.02.23.



10.26.], ② 천연꿀 주성분(99%)에 소량의 계피파우더(1%)를 혼합 조제된 황색계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상품(내용량 340g)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6538, 2017.05.25.], ③ 꿀 주성분에 로열젤리(5% 미만)가 첨가된 황색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상품(내용량 340g)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5918, 2013.08.09.], ④ 천연꿀에 체리(8%)를 단순 혼합된 것을 사각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체리가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윗부분에 부유되어 있는 상품(내용량 220g)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4380, 2013.06.21.], ⑤ 천연꿀에 산딸기(5.9%)를 단순 혼합된 것을 사각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산딸기가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윗부분에 부유되어 있는 상품(내용량 220g)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4379, 2013.06.21.], ⑥ 천연꿀 주성분(99.49%)에 소량의 생강엑스(0.51%)를 첨가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상품(내용량 340g)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4309, 2013.06.19.], ⑦ 천연꿀 주성분(99.4%)에 소량의 강황엑스(0.55%), 생강엑스(0.05%)을 첨가한 담황색 점조 페이스트상을 유리병 소매포장한 상품(내용량 340g)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4259, 2013.06.18.] 등의 품목분류에서 관세당국은 해당 정점물품들 모두가 천연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등을 이유로 관세율표상 HSK 제0409.00-0000호로 판정하고 있다.

FTA TRADE REPORT



활용하기 쉬운 FTA-PASS

FTA-PASS 현장지원 안내편

구본현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과장



구본현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과장

FTA-PASS 현장지원 안내편

FTA-PASS 사용 “끝까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 가입자가 10,371개사였던 FTA-PASS는
2019년 기준으로 22,090개사로 급증한 활용도 높은 시스템이다.

FTA-PASS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FTA 환경을 잘 반영하는 시스템이기에
더 많은 기업이 FTA-PASS시스템과 현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원산지 활용 및 검증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현장지원의 개요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장지원이란 FTA-PASS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FTA-PASS 활용상의 애로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기업 현장에 방문하거나 원격지원으로 1:1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격요건은 FTA-PASS 가입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신청기업도 횡수 제한 없이 원활하게 사용할 때까지 현장지원 신청이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현장지원 내용은 기초적인 시스템 사용방법, 기초자료 작성, 원산지판정 해석, 원산지확인서 송수신, 기관발급 신청방법, 사후검증 대비 등 FTA-PASS 사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지원한다.

2. 현장지원의 형태

FTA-PASS 현장지원은 기업에게 무료로 서비스 하고 있으며 지원 형태는 원격지원, 현장방문, 협력사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원격지원** : FTA-PASS 사용상 애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 PC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문제해결 지원

② **현장방문** : 전화 상담이나 원격지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과 사용자의 애로 사항을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1:1 해결

③ **협력사교육** : FTA-PASS 사용기업의 협력사 대상으로 원산지 관리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FTA-PASS 사용방법 등 집체교육 지원

3. 현장지원 신청절차

FTA-PASS 현장지원의 신청절차는 FTA-PASS 접속→메뉴이동→신청하기로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하단에서는 개별 단계에서의 신청방법을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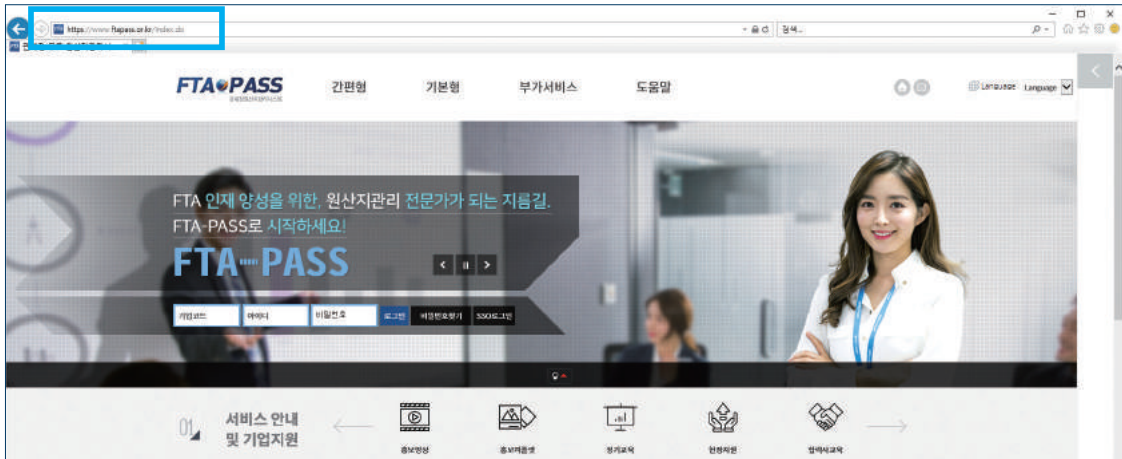
신청절차

FTA-PASS 접속 ⇒ 메뉴이동(기업지원 > 현장지원) ⇒ 신청하기

1) FTA-PASS 접속

첫번째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s://www.ftapass.or.kr'을 입력하여 시스템에 접속한다.

【FTA-PASS 접속화면】



2) 현장지원 메뉴이동

두번째는 시스템 로그인('기업코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메뉴 '기업지원'현장지원'을 클릭한다.

【메뉴 이동 화면】



3) 현장지원 신청

신청서 작성화면에서 기업은 현장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저장하면 관련 신청정보가 FTA-PASS 전문가에게 배부되고, FTA-PASS 시스템 전문가는 신청서의 현장지원 요청사항의 해결방안을 모색 후 기업이 요청한 방문일에 맞추어 현장지원을 실시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신청하는 기업은 방문요청일에 대해 최소 2~3주이상 기간을 가지고 방문요청일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의하면 해당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요령】

구분	주요내용
신청구분	현장방문 또는 협력사 교육 체크 - 현장방문 : FTA-PASS 사용방법 지원 - 협력사교육 : 자사 협력사 대상 FTA-PASS 및 FTA 교육 지원
방문요청일	최소 2~3주 이상 여유기간을 가지고 방문요청일 기재
담당자정보	이름, 직위, 부서, 연락처 등을 기재
방문장소	기업현장을 방문할 주소를 기재
현장지원 요청사항	엑셀양식 자료작성 방법, 원산지 판정, 서류발급, 검증대비 등 기타 시스템 사용을 위한 문의사항을 기재



【신청서 작성 화면(예시)】

원장발문교육 신청서 ※최소 2-3주 이상 여유기간을 가지고 발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원장발문 <input type="radio"/> 원격교육	발문요청일	2020-04-23
기업명	(주)테스트기업1	기업코드(사업자번호)	custom01 (211-82-16919)
대표사업	일대표1	업종 / 업태	기타업종 / 방송 및 정보서비스업
태슬력	50 억원	직원수	50 명
대표전화	+82-00-100-0001	FAX	+82-00-100-000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205연길 8, 성남세관 (여왕동)	연결수출자여부	<input type="radio"/> 입력면 <input checked="" type="radio"/> 품목면 <input type="radio"/> 비대상
재용설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결산 <input type="checkbox"/> 한-FTA <input type="checkbox"/> 한-EU <input type="checkbox"/> 한-뉴질랜드 <input type="checkbox"/> 한-미국 <input type="checkbox"/> 한-베트남 <input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type="checkbox"/> 한-영국(시물리아산) <input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type="checkbox"/> 한-중국 <input type="checkbox"/> 한-중대 <input type="checkbox"/> 한-중미(원산지비도르) <input type="checkbox"/> 한-한대 <input type="checkbox"/> 한-캐나다 <input type="checkbox"/> 한-콜롬비아 <input type="checkbox"/> 한-타이 <input type="checkbox"/> 한-베루 <input type="checkbox"/> 한-호주	대표품목(품명/HIS)	품명 : 000000 HS(6단위) : 000000
주요고객사 (원산지증명서류 발급대상)	관세청 (※다수일 경우 원(,)로 구분하여 기재)	FTA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기업수	50 개 기업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대상 기업수	100 개 기업	업무시스템(ERP)사용여부	<input type="radio"/> 없음 (ERP재용명 :) <input checked="" type="radio"/> 미활용
사용중인 시스템	FTA-PASS(<input type="radio"/> PC설치형 <input checked="" type="radio"/> WEB서비스형)	담당자(신청자) 성명	김경
담당자(신청자) 성명	구본현	담당자(신청자) 직번	
담당자(신청자) 부서	관세청과팀	담당자(신청자) 전화번호	031-600-0771
담당자(신청자) HP	1544.0645	담당자(신청자) E-Mail	bhgoo@origin.or.kr
발문장소	경기 >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205연길 8, 성남세관 (여왕동) (※원산지 확인이치로 입력하여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문장소	
원산지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용방법 (제품 사용자, FTA-PASS 이용자, 세관원자 및 경영관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검관대비 (종명서유관료, 연동수출자신청, 수출기업 원산지관리조사, 직/간접 관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부작성 (기준정보, 거래정보 메뉴에 입력지로 작성방법)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원칙 (공산지 작성방법 및 관장결과 해석) <input type="checkbox"/> 원산지명 (원산지증명서 및 C/O 작성 방법, 원산지확인서 관리명세 준수사항)	중요요청 (발문 전 확인사항이오니 필수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FTA-PASS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4. FTA-PASS 활용 성공사례

A사는 매출 3,900억원의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 업체이다. A사는 자동차 차체용 부품을 생산하며, 주요 원재료는 코일, 너트, 볼트, 패드, 파이프 등 50종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A기업의 FTA-PASS 활용 전 상황은 생산하는 완성된 제품에 대해 FTA 협정별로 다양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FTA 활용 수출을 추진해야 했으나, 협력사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FTA 협정별 원산지 기준】

구분	한-미국	한-베트남	한-중국
원산지 결정기준 (HS code : 8708.29)	1. CTSH 2. 집적법(BU), 순원기법(NC) 35% 이상 또는 공제법(BD) 55% 이상	CTH 또는 역내부가가치 (RVC) 40% 이상	역내부가가치(RVC) 50% 이상

A사의 원산지 관리 담당자는 협력업체가 영세하고 FTA 지식이 미흡하여 원산지확인서 수취가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였고, FTA-PASS 담당자는 현장 지원을 통해 협력사교육을 지원하였다. FTA-PASS 현장지원팀은 FTA 기초부터 FTA-PASS 실습교육 까지 무료로 지원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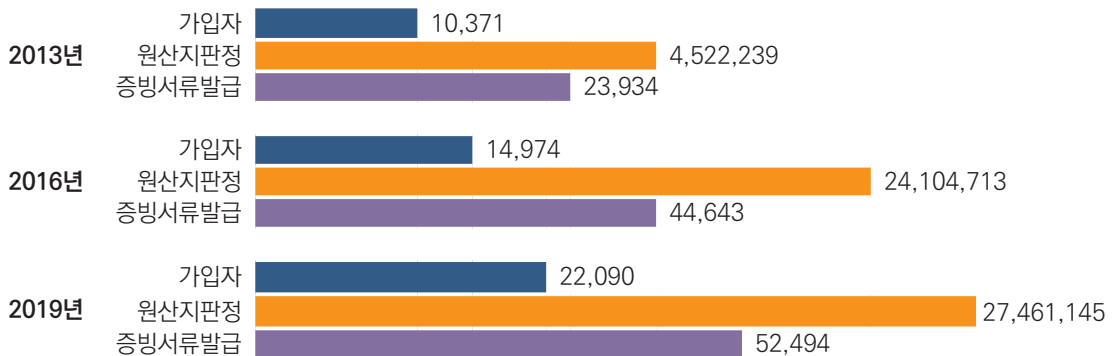
FTA-PASS를 활용함으로써 A사와 협력사간 FTA-PASS 사용으로 원산지확인서 전자적 교환이 성공하였고 이로 인해 A사와 협력사 모두 원산지 관리시스템 도입비용과 연간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였다. 또한, 결과적으로 A사는 FTA-PASS를 통해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적기에 제공하였고, 상대국 바이어는 FTA 특혜관세 절감을 받았다. 이후 상대국 바이어는 A사에게 더 많은 수출 물량을 요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5. 마치며

FTA-PASS 시스템은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다. 2013년 가입자가 10,371개사였던 FTA-PASS 가입자는 2019년 기준으로 22,090개사로 급증하였고 대부분의 사용자는 중소기업(96.5%)이다. 또한, 시스템을 활용한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빙 서류 발급 활용건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증빙서류발급기업이 23,934개

였다면, 2019년은 52,494개로 약 2.2배가 증가하였다.

FTA-PASS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인만큼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FTA 환경을 잘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FTA-PASS시스템과 현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원산지 활용 및 검증을 함께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FTA TRADE REPORT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단계별 FTA 활용 전략 : 새로운 FTA에 대비하라

김세희 | 이정 관세법인 관세사

단계별 FTA 활용 전략 : 새로운 FTA에 대비하라



김세희

이정 관세법인 관세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pandemic) 수준의 세계적 재난으로 인해 사람의 이동 제한뿐 아니라 물품의 수출입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와 기업이 필사적으로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서 특히 기존의 문제점을 치료하는 FTA 활용 전략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는 FTA라는 거대 수출 플랫폼을 갖춘 상태다. 어느덧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협정상대

국은 55개국(2020.1월, 발효기준)에 이르며, 협정 수는 16건으로 늘어났다. 그 외 협상 중이거나 발효가 예정된 협정도 줄줄이 대기중이며, 기 발효된 협정도 언제든지 개정협상을 통해 원산지 규정이 복잡해지거나 까다롭게 변경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백신과 같은 새로운 FTA 활용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컨설팅 사례가 참고가 되시길 바란다.



I. 서론

한-인도 CEPA가 적용되는 인도는 오는 4월부터 수입통관 시 원산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특혜관세를 배제가능 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결합기준을 규정한 품목이 많은 한-인도 CEPA의 특성상 사후 원산지 검증보다 강화된 조치로, 사전 통관단계부터 원재료 단가 등 민감한 소명 자료가 요구될 수 있다. 이렇듯, 변화하는 FTA에 즉각적인 대응은 지금까지의 특혜관세 적용과 원산지 검증에 따른 대응에 중점을 두었던 FTA 업무에서 나아가 보다 앞선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새로운 FTA 활용 전략으로 사전 조치에 해당하는 계약조건 설정과 사전 원산지 세팅, 그리고 원산지 테더링(Tethering)을 들 수 있고, 이후 조치로는 FTA 사후관리와 원산지 모의 검증을 제시할 수 있다. 그동안의 기고글이 사후관리나 원산지 검증에 대해 다루었던 바, 필자는 언급한 사전 조치에 해당하는 활용 전략에 대해 실무 사례와 함께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II. 본론

1. 1단계 : 계약조건으로 대비하는 전략

작년 하반기에 FTA 원산지 검증으로 귀책이 없는 사안임에도 관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있다. 해당 기업은 해외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과거 5년간의 실적에 대해 FTA 적용으로 줄였던 관세를 고스란히 반납하는 것에 더하여 가산세와 이자까지 추징당하게 된 것이다.

물론, 수입자에게도 원산지 확인의 의무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원재료의 단가나 구매처 정보가 노출되는 민감한 정보를 해외 수출자가 공개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 수입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다행히 귀책이 없음을 소명해 일부 추징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받았고 해외 수출자와 구상권 청구 협상도 원만히 타결되었지만, 여전히 수출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보상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해당 사건에 대해 처분청을 상대로 불복 청구도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도, 수출기업인 당사자로서는 수입 원재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부담으로 종전의 원가절감 의도가 퇴색되었다.

이와 유사한 FTA 추징 건에서 안타까운 점은 구매팀이나 영업팀에서 계약 체결 시, 관세나 FTA와 관련한 계약조건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로펌에서 근무할 때도 느꼈지만, 기업이 법무팀이나 로펌에 계약서 검토를 의뢰할 때 대개 세관에 추징당한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나 신경을 쓰는 편이다. 거래 상대방에게 협정이나 국내법으로 규정된 의무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계약 조항으로 두어야 향후 상대방과 불편해지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특히,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는 DDP 조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해당 추징사례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 제3자인 관세사에게라도 제공할 의무 조항을 계약에 명시하여 사전 확인단계에서 검토되었더라면, 기업 담당자에게 이렇게 골치 아픈 상황이 닥치진 않았을 것이다. 그 밖의 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하여야 할 내용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할 만한 FTA 관련 내용 (예시)】

연번	구분	내용
1	원산지증명 및 확인	수출자의 허락없이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임의발행 금지(적용협정 예: 한미FTA)
2	원산지증명 및 확인	협력사의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판정자료 제공 의무
3	원산지증명 및 확인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판정자료 제공 의무
4	원산지증명 및 확인	원산지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원산지판정자료 제공 의무
5	원산지증명 및 확인	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 확인서상의 원산지 변경 시 통지 의무
6	원산지 검증	원산지조사 통지의 고지 의무 및 통지 기한(협정상 기한 및 당사자 국내법상 절차 고려)
7	원산지 검증	관세당국과의 원산지조사 진행상황 및 내용 보고 의무
8	원산지 검증	특혜관세 배제 시 유형별 추정관세 부담 주체
9	구상권	원산지 검증으로 특혜관세 배제 시 구상권 청구 여부
10	구상권	구상금액, 구상금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 청구절차

2. 2단계 : 사전 원산지 세팅 전략

기업에서 빈번하게 존재하는 FTA 위험요소는 FTA 전담 부서나 담당자 지정없이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FTA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거나 원산지 검증으로 입증자료가 요청된 경우에 한해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기업은 인건비 측면에서 담당자에게 FTA 업무 외에 다른 업무까지 맡기는 경우가 있는 반면, 기업 담당자 사이에서 FTA는 지원 업무이면서 책임이 무겁다는 인식 때문에 전담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FTA 전담부서나 담당자가 없는 기업은 FTA 플랫폼 시대에 매우 뒤떨어진 경영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고객사 중 세계적 수준의 기업의 경우, 별도의 부서에서 CPTPP나 아직 발효 전인 USMCA 등 타국의 협정까지 염두해 둔 원산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새로운 FTA의 출현으로 주요 시장에서는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원산지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원재료 소싱국이 우리나라에서 경쟁국으로 이동하는 무역전환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FTA를 포함한 원산지는 중요한 경영전략 요소로 간주되어야 하며, 사전 조치로서 필히 전담 부서를 통해 원산지 분석 및 원산지 업무가 세팅되어 평시에는 일상불란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때마다 업무 담당자를 찾아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혹여나 전담 인력의 지정이 어렵다면 관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한 관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3단계 : 원산지 테더링(Origin Tethering) 전략

필자는 평시에 이루어지는 FTA 업무에도 제조자, 수출자 및 수입자간 일종의 “원산지 테더링”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테더링을 통해 IT 기기를 서로 연결하여 사용하듯, 거래당사자들은 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서로 연결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 정보의 연결은 비단 FTA뿐 아니라, 비특혜 원산지나 원산지표시 이슈와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

사실, 원산지 테더링의 문제는 FTA 적용 물품이 원칙적으로 건별 원산지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에서 발생한다. 건별 증명의 문제를 풀고자 함에 있어, 표준 BOM 또는 실적 BOM을 선택 적용하는 것에 실무자마다 이견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월 마감과 같은 기한별 FTA BOM 관리나 원재료 수불부, 구매원장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안은 결국 FTA 시스템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FTA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담당자가 별도의 엑셀 파일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개 ERP 데이터가 원산지 판정용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ERP와 FTA 시스템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의 연동되지 않는 경우로,

현재의 FTA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신규 시스템 구축으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된다.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 요구되는 경우를 예로 들자면,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확인서를 포괄발급 하는 경우다. 이런 서류의 발행 시점은 12개월 기간 내의 어느 한 시점에 불과하여, 이후 갑작스럽게 특정 출하 건이 역내산을 미충족할 때 FTA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 원산지 변경 시 FTA관세법에 의거 30일 이내에 거래상대방에게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을 통보하여야 하지만, 효율성 때문에 포괄발급을 하는 만큼 건별 모니터링할 비합리적인 기업 담당자는 드물다.

또다른 예로는 제조 공정상 여러 협력사와 서로 외주를 주고받는 업체인 경우, 원산지확인서 전달 과정에서 순서가 뒤섞여버리면 기업 담당자가 일부 원재료의 원산지확인서 수취없이 습관적으로 역내산 판정을 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따라서 Optional BOM과 같은 대체 BOM을 도입하거나, BOM 이력관리를 넘어 Routing 관리, 실시간 원산지판정 모니터링 기능 등의 구현이 필요하다.

1) “원산지 테더링”은 필자 자신의 표현이다. 원산지 정보의 연결을 담아 “원산지 테더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물품의 FTA 원산지는 일정 시점의 원산지 증빙(stock 개념)이 아니라 물품의 실제 생산에 투입된 각각의 원재료의 수량, 가격, 원산지 등 유동적인 정보(flow 개념)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마감에 의해 단가 설정이나 실적 BOM을 전개를 하는 경우 해당 월에 속하지 만 마감시점 이후나 마감기간 사이에 있는 정보가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간혹, FTA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경우에 비용을 절감하려다 주 목적인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을 놓칠 수도 있다. 외부 시스템 업체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추가적인 인/월(Man Month)이 소요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시스템 업체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개발자 투입으로 인해 기존에

구상된 범위를 초과하는 프로젝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전에 시스템상으로 구현할 기능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FTA 규정과 상충되는 사항 등의 관세 자문을 거쳐서 되도록 기업 특성에 맞게 짜인 FTA 시스템을 도입하시길 권고드린다.



Ⅲ. 결론

설령 FTA가 반복적인 업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어하는 조치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신규 FTA 협정이 발효되거나 기존 협정의 개정은 계속될 것이며, 이와 함께 각국의 관세당국에 의한 원산지 검증도 다양한 기법으로 시도될 수 있다.

FTA 원산지 검증의 핵심도 과거 5년간의 실적에 대해 관세혜택을 받은 물품의 생산에서부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일련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원산지 정보를 서로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역내산임을 증명해내는 것인 만큼 언급한 FTA 활용전략 외에도 당사자간의 협조를 통한 새로운 전략으로 빠른 시일내에 수출 활력의 불씨가 되살아나길 기대해 본다. 덧붙여,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싶다.

FTA 활용 UP!!

국내유일의 원산지 전문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시대의 핵심과제인 “국내외 원산지 정보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내유일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입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FTA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FTA 무역리포트

March 2020 Vol. 01(통합29권)

(비매품)

발행일 2020년 03월

발행처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1304호

TEL : 042)481-3282 / FAX : 042)481-7753

<http://www.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 031)6000-701~3 / FAX :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집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국제원산지정보원

디자인·인쇄 다인디앤피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FTA 무역리포트」에 게재된 글은 저자의 견해로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TRADE REPORT



보내는 사람

주소

이름

연락처

E-mail

우 표

받는 사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5층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무역리포트 담당자 앞

1 3 5 0 3

독자의 소리

〈FTA 무역리포트〉 독자의 소리를 2020년 6월 20일까지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FTA 무역리포트〉를 보신 소감을 적어 주세요.



〈FTA 무역리포트〉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FTA 무역리포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FTA TRADE REPORT





yesfta.customs.go.kr
ftapass.or.kr

관세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Tel. 042-481-3282 Fax. 042-481-7753

국제원산지정보원

135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야탑동 성남세관 5층)
Tel. 031-600-0701~3 Fax. 031-600-0704